

월간
재정포럼 6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2년 6월호 제192호

- 현안분석**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부담과 시사점/ 김현아
 - 재정패널을 이용한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이해원
 - 비만세 도입에 대한 소고/ 이은경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정책흐름** •
-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No Pain, No Gain? · 박원암
현안분석	0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부담과 시사점 · 김현아 25 재정패널을 이용한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 이혜원 41 비만세 도입에 대한 소고 · 이은경
<hr/>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54 EU 외
정책흐름	75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77 2012년 IMD 세계경쟁력 평가 순위 22위 84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국회 제출 91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98 한-EU FTA 발효 이후, 한-EU간 해외투자 동향 및 시사점 104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재정통계	106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_성질별, 단체별 외
이슈 & 포커스	120 이번 위기, 중장기적 대응 필요하다 외

No Pain, No Gain?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약을 아예 먹지 말고 참고 견뎌야 낫는다. 과연 그럴까? 입에 단 약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며, 중병일수록 약을 먹어야 낫는다. 병과 치료법에 대한 화두를 새삼스럽게 던지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유럽의 위기가 진정되기는커녕 다시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위기가 발생하자 주요 선진국들은 정책 공조를 강조하였다. 위기발생 직후인 2008년 11월 미국은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정상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하고, 위기의 원인별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앞두고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을 제안하였으며, 각국의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위기 이후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를 만들었다. 각국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 다시 빠져든다면, 이는 정책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고전학과 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의 시각차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처럼, 경제위기 대처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케인스경제학이 탄생하면서 경제학은 고전학과 경제학과 케인스경제학으로 양분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양측의 견해차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고전학파적 전통을 이어받은 경제학자들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재정확대 및 통화증발이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기부양에 반대한다.

위기가 과다부채와 과잉유동성 때문에 발생했는데, 재정을 확대해서 정부부채를 늘리고 유동성을 늘리면 경제가 더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두 자리 실업률이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했으므로 경기를 부양하기에 앞서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된다고 한다. 또한 일하고, 생산하며, 투자할 만한 개인별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케인스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들은 현재 두 자릿수의 높은 실업률이 구조적이라기보다는 경기침체에 따라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므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조조정이나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수요 확대가 급선무라는 것이다. 수요 확대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누구 말이 맞는가? 양쪽 견해가 모두 이론 및 실증적 증거 면에서 설득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 입장만을 두둔할 수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쪽 견해를 모두 경청하면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초기에 충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각국은 경기부양 정책을 채택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점차로 더 이상의 경기부양을 자제하게 되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실정리와 구조조정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하려는 노력들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서 각국이 성장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으나 1930년대 대공황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1920년대 과열되었던 주식시장이 파국을 맞으면서 대공황이 시작되자 자유시장주의자인 하이에크는 주식시장 과열을 빚었던 통화확대 정책을 비난하는 한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부양정책에 반대하였다. 시장주의자들은 수요부족으로 물가와 임금이 하락하면 다시 생산을 하게 되고, 불황을 통해 부실기업이 정리되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보았다. 기업의 ‘창조적 파괴’를 역설했던 슈페터도 공황이 경제에 미치는 조정기능과 자생적 회복을 강조하였다. 물론 케인스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시장주의자들은 장기적으로 대공황이 경제에 약이 될 것이라고 보는 데 반해 케인스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일갈하면서 “비바람이 사납게 부는 시절에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바다가 다시 조용해질 것이라고만 경제학자들이 말한다

.....

최근에는 유럽의 위기가

진정되기는커녕

다시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세계경제
 여건에 맞추어
 경제구조를 재조정하는
 한편, 구조개혁에 따른
 고통과 부담으로
 경제 활력을 잃지 않도록
 단기적 확대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

면 그들은 너무나 쉽고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미국은 1936년이 돼서야 1929년 주가폭락 이전의 생산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

우리는 케인스식 접근법이 지나치게 단순하며, 동태적 최적 선택의 시장균형이론이 보다 완전한 이론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론이 훌륭하더라도 경제회복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그만큼 유용하지 않은 경제학이 되고 만다. 반면 이론이 단순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면 경기 침체 종식에 보다 유용한 경제학이 될 것이다. 논란이 있지만 대공황 후 미국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전비지출로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후에는 1970년 초까지 케인스경제학이 풍미했었다.

케인스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재정긴축을 강조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만은 없겠지만 지금처럼 경제회복이 지연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단순한 주장을 경청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대공황에서처럼 케인스적 처방이 효험을 발휘하고, 케인스경제학이 다시 시대를 풍미하게 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나, 나름대로 우리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세계경제 여건에 맞추어 경제구조를 재조정하는 한편, 구조개혁에 따른 고통과 부담으로 경제 활력을 잃지 않도록 단기적 확대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재정 사정이 양호한 편이므로 경기 침체 시 케인스적 대처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부담과 시사점
김현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재정패널을 이용한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이혜원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비만세 도입에 대한 소고
이은경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부담과 시사점

I. 문제제기

최근 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외경제 불안정 등 세입환경은 불투명한 가운데 복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성장 수준 이상의 복지지출 증가는 남부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으로도 논의되고 있으며, 급속하게 증가하는 연금지출 또한 향후 국가 재정지출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고민 또한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세입 부문의 순증가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회복지 관련 세출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여건은 순조롭지 못하다. 2005년 분권교부세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복지 관련 지방비 부담 증가와 의무비 지출 위주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여기에, 지방재정의 특징상 재정력 격차에 따른 복지혜택의 격차 완화 또한 자치단체와 재정당국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와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분권교부세율 인상, 차등보조율 확대, 사회복지교부금 도입 등이 꾸준히 논의되었다(서정섭(2011), 최성은(2010), 국회예산정책처(이채정(2011), 박인화(2010) 심혜정(2009) 등). 이들 대안은 단기적으로는 지방비부담을 완화시켜줄 수는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은 '복지' 관련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정부간 재정'의 근본적인 이슈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수준, 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복지재정 규모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당국이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지출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중앙 혹은 지방 어느 한쪽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것에 머물지 않는다. 선진국 사회로의 진입과 유지는 정부의 사회안전망이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hyuna@kipf.re.kr)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고,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부담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복지 관련 재정지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부담 수준을 분권 수준 등과 비교하여 살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정부간 재정부담 대안 검토는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나 자체재원 재정여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현안이슈를 정리하고, 복지재정제도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쟁점사항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정부통계 및 국제통계 기준 복지재정지출 규모

1. 중앙정부 복지재정지출 규모

2012년 중앙정부 예산안 기준 복지재원(보건+복지+노동)은 약 92조원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 전체 예산 326조원의 약 28.2%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분야별 예산지출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2005년 당시 중앙정부 기준 복지재정 비중은 23.7%대였는데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1년 대비 증가율은 6.4%로 총지출 증가율 5.5%를 상회하고 있다.

**2012년 중앙정부 예산안 기준
복지재원(보건+복지+노동)은
약 92조원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
전체 예산 326조원의 약 28.2%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분야별 예산지출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표 1〉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

(단위: 조원, %)

분 야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2010 → 2011	2011 → 2012	
경제	R&D	13.7	14.9	16.0	8.7	7.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5.2	15.2	0.3	0.6
	SOC	25.1	24.4	22.6	-2.7	-7.3
사회	농림·수산·식품	17.3	17.6	18.1	2.2	2.7
	보건·복지·노동	81.2	86.4	92.0	6.3	6.4
	교육	38.3	41.2	45.1	7.8	9.3
	문화·체육·관광	3.9	4.2	4.4	7.8	5.7
	환경	5.4	5.8	6.1	6.2	6.3
행정	국방	29.6	31.4	33.2	6.2	5.6
	외교·통일	3.3	3.7	3.9	9.0	8.1
	공공질서·안전	12.9	13.7	14.5	5.6	6.5
	일반공공행정	48.7	52.4	56.6	7.5	8.2
총지출	292.8	309.1	326.1	5.5	5.5	

주: 굵은 글씨는 총지출 증가율보다 증가율이 높은 분야를 표시
자료: 「2012년 정부예산(안)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예산안분석작업팀 발표자료 중 인용(p.16)

〈표 2〉 최근 5년간의 중앙정부 복지지출 변화추이

(단위: 조원, %)

복지재정지출 규모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정부총지출(A)	262.8	284.5	301.8	292.8	309.1	325.4	1,491.9	6.6
복지재정(B)	68.8	74.6	80.4	81.2	86.4	92.6	409.4	8.7
총지출 대비 비중(B/A)	26.2	26.2	26.6	27.7	28.0	28.2	27.4	
[분야별]								
사회복지	62.9	67.7	73.4	73.9	78.9	84.8	373.9	8.7
보건	5.9	6.9	7.0	7.3	7.5	7.9	35.6	8.5

주: 1. 2005~2008년간은 추경을 반영한 최종예산 기준(2007년은 추경 없음)
 2. 합계 및 연평균 증가율 산출 시, 2009년은 추경 기준(단, 회계별 통계는 2008년과 2009년에 본예산 기준)
 3. 2008년 회계별 통계(예산/기금)는 본예산 기준(복지재정 67.6조원)

자료: 각 연도 나라살림 기준 및 dBrain, 박인화, 2010, p. 39 (표3)을 토대로 재작성

2. 지방정부 복지재정지출 규모

기능별 정부지출 기준에 따른 지방정부의 복지분야로는 역시 사회복지와 보건을 포함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2012년 자치단체 예산개요 기준 151조원

중 33조원으로(사회복지+보건) 약 21.7% 규모에 해당하여 예산항목 기준 역시 가장 큰 비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나타난 복지재정 규모에는 중앙정부의 국고부담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앙(국비=16.4조원)과 지방(시·도비+시·군·구비=16.4조원)의 비중은

〈표 3〉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국비 지방비의 구성(2012)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국비(A)	시·도비(B)	시군구비(C)	비중		
					A	B	C
사회복지	30,915,723	15,917,442	8,931,453	6,066,828	51.5	28.9	19.6
기초생활보장	9,299,837	7,117,298	1,625,092	557,447	76.5	17.5	6.0
취약계층지원	4,378,644	1,622,820	1,871,073	884,751	37.1	42.7	20.2
보육·가족및여성	7,749,047	3,111,350	2,532,647	2,105,049	40.2	32.7	27.2
노인·청소년	7,083,632	3,632,747	1,542,721	1,908,164	51.3	21.8	26.9
노동	625,508	173,327	225,052	227,129	27.7	36.0	36.3
보훈	209,570	18,392	52,081	139,098	8.8	24.9	66.4
주택	1,221,377	137,851	1,003,926	79,601	11.3	82.2	6.5
사회복지일반	348,107	103,658	78,860	165,589	29.8	22.7	47.6
보건	2,082,544	574,428	591,865	916,250	27.6	28.4	44.0
보건의료	2,032,921	565,709	578,125	889,087	27.8	28.4	43.7
식품의약품안전	49,623	8,720	13,740	27,164	17.6	27.7	54.7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2.

50:50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내 복지재정부담 비중에 해당한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복지서비스 총량이 증가했느냐가 중요하지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냐는 기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복지재원 부담의 중앙과 지방부담에 대한 내용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총량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2008년 이후 정부 전체의 복지서비스 총량규모를 대상으로 중앙 대 지방 복지재정지출 규모를 산출하였다. 중앙정부 부분이 이중 계산된 국비부분을 순계처리하여 계산한 중앙 대 지방 비중은 약 70:30이며 이 비율은 2008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지방비부담 약화와 관련된 현황과 배치되는 결과인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비보조율이 높은 '기초생보'와 같은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인식하는 반면, '보육·가족맞여성'과 같은 보조율이 낮은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70:30이라는 중앙 대 지방의 재정부담 수치는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치단체간 즉, 광역과 기초 간, 기초 중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부에 따라 '차등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재정부담 수준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 복지 분야 전체는 2008년 21.6조원에서 2012년 30.1조원으로 약 1.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야별 증가폭 중 가장 큰 부분은 '보육·가족맞여성' 분야로 약 1.8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복지재정부담과 관련하여 이상의 지방복지 재정 현황에서는 몇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비부담 비중이 증가하고 있긴 하나 지난 5년간의 중앙 대 지방의 재정부담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육이나 분권교부세 사업보다는

**지방비부담 비중이 증가하고 있긴 하나
지난 5년간의 중앙 대 지방의 재정부담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육이나 분권교부세 사업보다는
재정규모가 큰 국고보조사업(기초생보 등) 분야의
지방정부부담이 더 가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규모가 큰 국고보조사업(기초생보 등) 분야의 지방정부부담이 더 가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비부담률이 낮은 '보육 및 취약계층 지원' 분야의 증가는 지방비부담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후술하겠으나 이상의 내용은 자치단체 전체 평균에 해당하며, 개별 자치단체, 즉 광역시 자치구, 시와 군 등은 매우 다른 재정부담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정부간 복지재정부담 관련 현황 파악이 사안에 따라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중앙 대 지방 복지재정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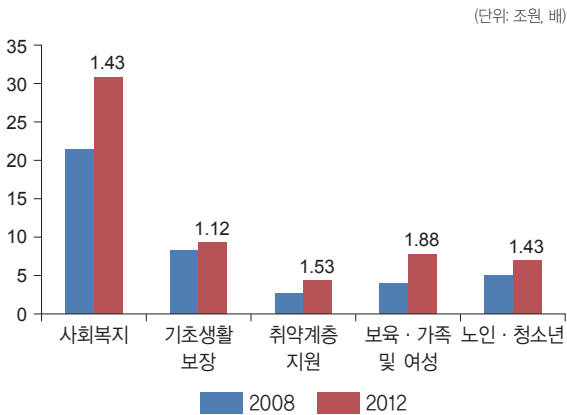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중앙	금액	57.4	67.1	66.6	70.9	76.6
	비중	70.9	72.0	69.8	69.9	70.2
지방	금액	23.55	26.07	28.76	30.47	32.53
	비중	29.1	28.0	30.2	30.1	29.8
합계		81.0	93.2	95.4	101.4	1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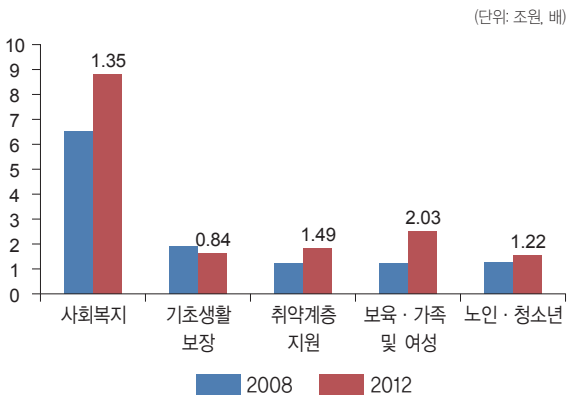
주: 중앙정부는 정부예산 구분의 「사회복지」와 「보건」 부분에 해당하며, 지방정부 복지재정지출범위는 「사회복지」와 「보건」 부분의 「시·도비」와 「시·군·구비」를 대상으로 하였음(각 연도 「나라살림」, 「자치단체예산개요」 기준).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부분은 중앙정부 부분에서 삭감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전체는 2008년 21.6조원에서 2012년 30.1조원으로 약 1.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야별 증가폭 중 가장 큰 부분은 '보육·가족및여성' 분야로 약 1.8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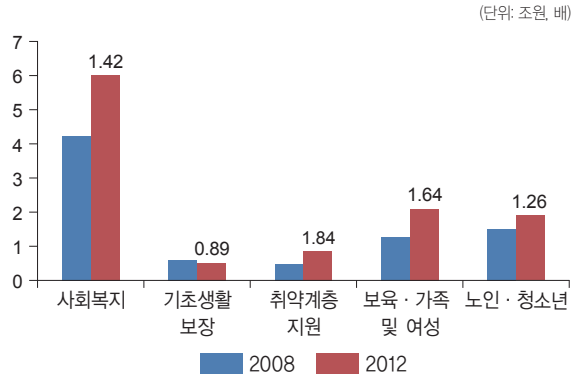
[그림 1] 2008년 대비 2012년 사회복지 전체 주요 분야별 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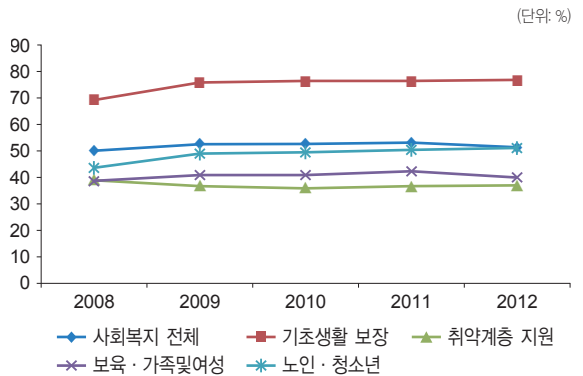
[그림 2] 2008년 대비 2012년 '시도비' 주요 분야별 지출 규모



[그림 3] 2008년 대비 2012년 '시군구비' 주요 분야별 지출 규모



[그림 4] 2008년~2012년 사회복지 항목별 국비 (국고보조금) 부담률



3. 국제기준에 따른 복지지출 규모 비교

가. COFOG 기준과 SOCX 기준에 따른 복지지출 규모

국제비교에 따른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관적인 기준에 따른 국제 복지재정통계 현황을 살펴봐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UN의 정부기능분류(COFOG)와 OECD의 SOCX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COFOG는 정부 기능을 10가지로 구분하여 일반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기능

별 지출을 집계하고 있다. IMF의 GFS 통계와 OECD의 National Account가 이에 따른 정부지출을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d-Brain 시스템도 매년 이 기준에 따라 정부지출을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다. OECD SOCX는 국가별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DB에 해당하며 사회지출 재분배 목적으로 구성된 복지사업을 공공부문(중앙정부+지방정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연금'과 '보건' 분야의 지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OECD SOCX의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복지지출 통계는 김현아(2009; GDP 대비 9.1%(지방 포함)), 박형수·전병목(2009; 8.62%(지방 포함)), 고경환(2009; 10.49%), 원종욱(2011; 8~9% 내외)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결과에서도 연구자의 기준(기본 변수의 추정기준; 인구, GDP 등 추계)에 따른 수치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OECD SOCX는 국가별 사회지출 DB에 해당하며 사회지출 재분배 목적으로 구성된 복지사업을 공공부문(중앙정부+지방정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연금'과 '보건' 분야의 지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COFOG 기준에 따른 기관별 복지지출 규모

본 분석에서는 COFOG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 보건에 해당하는 KIPF- I (=중앙정부+지방정부)을 우리나라 정부부문 복지규모 지출기준으로 보고 있다. KIPF- II (=KIPF- I +교육복지)는 여기에 교육복지 부문을 포함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공공부문지출 내 지방정부 부문을 포함시킨 복지규모 파악은 정부간 재정지출 부담을 논의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2010년

〈표 5〉 COFOG 기준에 따른 복지재정 규모

(단위: 조원, %)

	2009년		2010년					
	IMF (GFS)	OECD (NA)	정부 통계	NABO (2010)	보사연 (2010)	KIPF I	KIPF II	
GDP 대비 복지지출	6.7%	8.4%	6.9%	9.8%	12.8%	8.1%	12.1%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21.5%	25.5%	27.7%	35.2%	51.2%	35.4%	48.4%	
COFOG 기준	복지재정지출(b)	71.32	89.73	81.25	114.71	150.02	95.43	141.85
	- 사회복지(c)	66.52	43.68	73.92	70.03	94.96	86.52	86.52
	- 보건(d)	4.80	46.07	7.33	44.68	9.54	8.91	8.91
	- 교육(e)	(47.17)	(55.64)	(38.30)		45.52		46.42
OECD평균(=100) 대비 복지지출(% of GDP)	23.6	29.7	24.4	34.4	45.0	28.7	42.6	
OECD평균(=100) 대비 복지지출(% of 정부지출)	43.8	51.9	56.5	71.6	104.4	66.4	98.7	

주: 이 표는 박인화 외(2010)를 인용하여 제작성한 것임. 괄호 안의 숫자는 참고를 위한 수치일 뿐 계산에는 이용되지 않았음. IMF와 OECD 지출 규모는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OECD Country statistical profiles, 2010.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0.

OECD Revenue Statistics 2011.

IMF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2010.

NABO 수치는 박인화 외(2010)를 사용하였고, 보사연 수치는 고경환 외(2011)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별도로 추계한 것을 정리하여 제작성한 것임. KIPF- I 은 정부통계에 '지방정부' 부문을 포함한 수치에 해당하고, KIPF- II 는 여기에 교육복지 부문을 포함시킨 수치임.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정부지출 비중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의 평균을 100으로 놓았을 때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가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4%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기준으로 본 분석과 기존 통계의 차이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부분'을 모두 포함시킨 것에 해당한다. NABO의 경우 지방복지 부분을 제외 하였고, 건강보험 급여분을 정부지출로 모두 포함시 킨 점이 특징이며, 보사연의 경우 지방부문을 포함시 켜으나 국비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추계하여 이중 계 산하였으며 교육복지 부분은 포함시켰다.

'GDP 대비 비중'으로 보여주고 있는 OECD 평균 대 비 복지지출 비중은 OECD 국가들의 평균(2010년 기 준 28.2%)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 기관별 수치가 추 계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다. 예 를 들어 KIPF-1의 경우, 복지지출 규모가 8.1%로 OECD 국가평균의 약 28.7% 수준임을 의미한다. 우 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의 국제비교 시 '정부지출 대비 비중'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위 표의 마지막 줄은 선진국들의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에 해당한 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가 선 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정부지출 비중 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의 평균 을 100으로 놓았을 때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가 정 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4%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참고적으로, 2009년 기준 복지지출과 관련된 주 요지표들을 OECD 국가들 평균(=100)과 비교해 본다면, 1인당 GDP는 81.2%, 국민부담률은 75.5%, 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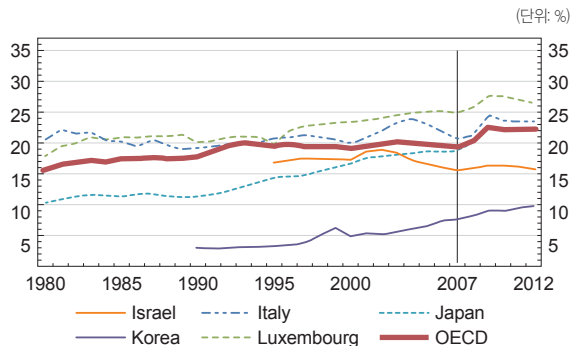
부담률은 80%, 노인인구비중은 71.7%, 연금지출 비 중은 25.3% 수준이다.

위 표의 기관별 분석결과에서 시사하는 바를 요약 하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이 GDP 대비 혹은 정부지출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과 둘째, 복지지출에 대한 추계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복지지출 규모가 낮은 원인으로는 선 진국에 비해 소득수준과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뿐만 아 니라,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지출과 노인인 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4. 주요국의 복지재정지출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관련 국제비교에 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선진국 에 비해 낮은 편(2009년 기준 GDP 대비 10% 미만)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추세를 살펴보면, 박형수· 전병목(2009)의 전망에서는 급격한 인구고령화 및 연 금제도의 성숙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관련지출 이 EU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OECD SOCX 기준에 따른 2050년 GDP 대비 전망치에서는 2009년 대비 12.2%p나 증가한 20.8%로 나타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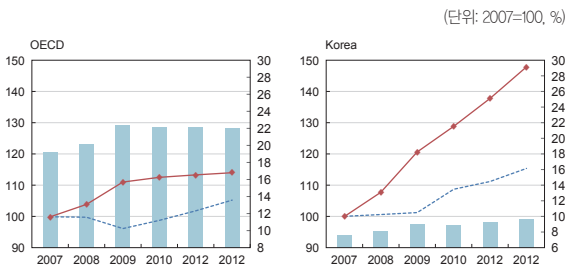
[그림 5] 1980년대 이후 GDP 대비 복지재정지출 변화



자료: Adema, W., P. Fron and M. Laidique, 2011, p. 11 인용

[그림 6]에서의 막대그래프는 GDP 대비 복지재정 지출 수준(우측기준)이다. 점선과 실선은 좌측지표 기준으로 2007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사회복지지출(실선)과 GDP 성장률(점선)을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복지재정지출 규모는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7년 대비 2012년 복지재정지출 증가폭은 약 1.4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GDP 증가율 1.15배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로 OECD 국가들의 경우, 2007년 이후 복지재정 규모는 GDP 대비 20%를 넘고 있으며, 경제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GDP 성장률과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7년 대비 2012년 복지재정규모는 약 1.15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GDP는 경제위기 당시 감소하였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의 복지재정지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 규모는 낮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 시 급속한 증가세에 있다는 점과 경제위기 시에도 절대적인 규모의 복지지출은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는 점이다.

[그림 6] OECD 대비 우리나라의 복지재정규모 증가율 추이



자료: Adema, W., P. Fron and M. Laidique, 2011, p. 11 인용

주요국의 복지재정지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 규모는 낮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 시 급속한 증가세에 있다는 점과 경제위기 시에도 절대적인 규모의 복지지출은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는 점이다.

III. 국제비교로 본 정부간 복지재정부담 수준

OECD 국가들의 정부간 복지재정부담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이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지출 규모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¹⁾. 국내 자료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복지재정지출 규모 비교를 위한 국제비교는 여러 기관에서 시행한 바 있으나, 정부간 복지재정지출 부담에 대한 비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²⁾.

본 분석에서는 정부간 복지재정부담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COFOG 기준에 따른 OECD National Account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이들 수치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OECD 분과별 DB와 비교하여 보았다³⁾. 예를 들어, 보건분야의 경우, OECD 내 '보건분과'에서 관련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교육분야의 경우도 별도의 DB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 분과 DB에서는 정부간 재정부담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교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정부간 재정부담 숫자가 유사할 경우, 국제비교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 "...Economic crises bring about significant deviations between social spending as related to trend and actual GDP...Nevertheless, levels remain higher than recorded prior to the economic crisis: on average across the OECD public social spending as a percent of GDP was 3 percentage higher in 2010 than in 2007(22.2% compared with 19.2% in 2007)..."(Adema(2011), p. 10, 15)

2) 정부간 복지재정지출 부담 비교가 쉽지 않은 이유는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성격 때문이다. 사회보장 부분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경성예산이 아닌 연금 및 건강보험재정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것을 중앙정부의 예산 혹은 일반정부의 예산으로 볼 것인가,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3) 국제비교를 위한 복지지출 통계로 OECD의 SOCX도 있으나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정부간 복지지출 분석이 불가능하다. 보건분과 DB는 'OECD Health Expenditure and Financing' 자료이다.

주요국들의 정부간 복지재정 조정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전재원 개편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OECD 자료별 보건복지재정 부담 현황(2009년)

(단위: %)

국가 형태	자료원천	OECD Health Committee			OECD National Account			
		국가명	중앙	지방	사회보장	중앙	지방	사회보장
연방형	벨기에		3.2	12.0	84.9	14.4	15.1	70.5
	스위스		0.6	31.0	68.4	17.3	30.8	51.9
	미국		2.3	9.6	88.1	73.2	26.8	0.0
단일형	덴마크		1.0	99.0	0.0	31.7	61.2	7.1
	프랑스		2.8	4.4	92.8	14.8	6.3	78.9
	한국		14.8	6.0	79.2	30.5	22.8	46.7
	스페인		1.2	92.6	6.3	7.3	35.3	57.5
	스웨덴		2.8	97.2	0.0	40.8	39.4	19.8

요약하면, OECD 내 보건복지 관련 정부간 재정부담 자료는 자료원천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방형 국가들의 경우 중앙:지방:사회보장 비율은 벨기에, 스위스, 미국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단일형 국가이지만, 연방형 국가의 구분상 독일과 캐나다가 주 관심 대상인데 이들 나라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⁴⁾. 단일형 국가들의 경우에도 덴마크가 비교적 유사한 자료로 확인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부 대비 사회보장부담 비율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National Account 통계

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총계 기준으로서 지방정부 부분에는 국비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통계이므로 이전재원 규모가 큰 나라의 경우 지방부분이 과다계측되는 면이 있다. 또한, 2000년 대비 2009년 자료에서의 변화도 일관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부담에 대한 DB 분석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된 DB를 바탕으로 한 정부간 복지재정부담과 관련 국제비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각 나라별 정부간 재정지출 구조와 복지제도 구분이 동시에 가능할 때 의미 있는 시사점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강혜규 외(2006)에서는 미국·영국·일본의 경제성장 정도·복지제도의 성숙과정·집권당의 복지철학 등에 따라 주요국들의 정부간 복지사무 및 재정 개편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향후 우리나라 복지재정부담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⁵⁾. 미국은 주요한 복지분야(의료분야, TANF 등) 재정효율화를 위하여 연방보조금에서 주정부로의 포괄보조금화 방식을 채택하였고,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를 증가시키면서 재정부담 또한 늘린 경우이다. 반면, 노르웨이는 국고보조금에서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한 후 다시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료'분야를 지방에서 중앙으로 전환시킨 바 있다(Overbye et.al., 2006). 국가별 사례연구 분석을 정리해 보면, 주요국들의 정부간 복지재정 조정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전재원 개편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연방국가는 Cooperative Federation 국가(독일·캐나다 등)와 Competitive Federation 국가(미국·스위스 등)로 구분하기도 하며, 정부간 재정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나라는 독일과 캐나다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Baskaran(2012)).

5) 정부간 복지재정 부담 조정 원칙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본 보고서(김현아, 2012년 발간예정)를 참고

IV.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현황

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200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전 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연평균 증가율(10.7%)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증가율(4.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국비부담 부분인 국고보조금의 증가율은 연평균 8.9%이고, 대응 지방비부담 증가율은 13.8%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전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율은 2008년 35%에서 2012년 39%로 매년 1%p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2008년 11.7조원에서 2012년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약 절반(48.3%)인 15.5조원 규모이다. 200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17.3%이며, 이에 대한 지방대응비의 규모는 약 7.4조원으로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24.4%이다. 동 기간 지방예산이나 국고보조금 전체 증가율보다 지방대응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규모 면에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관련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규모는 7.4조원으로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은 5% 미만에 해당한다(〈표 3〉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국비와 지방비의 구성 참고). 이 외에 복지재정 전 분야의 순수 지방재정부담(=시·도비+시·군·구비; 2012년 예산 기준 16.4조원) 비중 또한 전체 지방재정 예산의 10.8%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분야별 재정규모는 기초생활보장(2012년 예산 기준 9.3조원), 취약계층지원(4.4조원), 보육가족여성(7.7조원), 노인청소년(7.0조원), 주택(1.2조원), 사회복지일반(0.3조원) 등에 해당한다. 국비 대 지방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국고보조율이 높은 '기초생활보장(2012년 기준; 평균 76.5%; 서울 50%, 지방 80%)', '노인청소년분야보다 '보육가

국비 대 지방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국고보조율이 높은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분야보다 '보육가족여성' 부분의 증가폭이 클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정부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족여성(예: 보육료지원사업 약 40.2%, 서울 20%, 지방 50%)' 부분의 증가폭이 클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정부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7〉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 (당초예산 기준)

(단위: 조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증가율
지방 예산(A)	125.0	137.5	139.9	141.0	151.1	4.9
전체 국고보조사업(B) (비중: B/A)	35.0 (28.0)	41.8 (30.4)	46.7 (33.4)	48.6 (34.5)	52.6 (34.8)	10.7
• 국고보조금 (구성비)	22.8 (65)	26.5 (64)	29.2 (63)	30.1 (62)	32.1 (61)	8.9
• 대응 지방비 (구성비)	12.2 (35)	15.2 (36)	17.5 (37)	18.5 (38)	20.6 (39)	13.8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비중)	11.7 (69.6)	13.9 (69.5)	13.7 (68.8)	14.4 (68.2)	15.5 (67.7)	17.3
• 대응 지방비 (구성비)	5.1 (30.4)	6.1 (30.5)	6.2 (31.2)	6.7 (31.8)	7.4 (32.3)	24.4

자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 분권교부세

2005년에 도입된 분권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고보조사업을 이양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일종의 '포괄보조금' 방식이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지방이양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지방비부담의 의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이었던 당시의 지방비가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보조금 제도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 자율적 재정운영 제약, 사업추진의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 차원에서 도입되었다⁶⁾.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이양사업 부문에 있어서의 지방비부담 증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을 잠식하여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분권교부세 사업의 재원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사업의 총수요는 연평균 14.4%씩 증가하였으나, 국비(분권교부세) 증가율은 연평균 8.2%에 불과한 반면, 이를 대응하기 위한 지방비 자체부담은 연평균 18.6%씩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분권교부세 법정률과 재원규모

(단위: 법정률 %, 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법정률	내국세의 0.83%	내국세의 0.94%						
재원규모	8,454	10,065	11,387	13,784	12,305	13,187	14,575	15,618

주: 2011년까지는 최종교부액(추경 및 정산분 포함), 2012년 당초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2.

분권교부세는 당초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이었으나 201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이전재원이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

분권교부세 사업은 지방이양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지방비부담의 의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이었던 당시의 지방비가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보조금 제도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복지사업은 재원흐름의 유연성이 매우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단, 사업이 수행되고 나면 복지재원 수급규모나 대상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포괄보조금 대상 사업은 보조금 대상 사업 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표 9〉 분권교부세 사업 중 사회복지사업(67개)

(단위: 억원, %)

구 분	이양 전 (국고보조)	이양 후(분권교부세)							연평균 증가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¹⁾	
복지사업비(A)	12,951	16,820	19,201	22,268	26,200	28,134	30,019	33,453	14.4
분권교부세(B)	6,107	5,531	6,955	7,955	9,518	8,507	9,509	10,582	8.2
비중(B/A)	47.2	32.9	36.2	35.7	36.3	30.2	31.7	31.9	
지방비(C)	6,844	11,289	12,246	14,313	16,682	19,627	20,510	22,872	18.6
비중(C/A)	52.8	67.1	63.8	64.3	63.7	69.8	68.3	68.1	-

주: 1) 2011년은 구조조정으로 67개 사업에서 52개 사업으로 축소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6)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7. 6)

7) 조기현(2007)에서는 사회복지비의 소득탄력성이 높아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되면 비사회복지사업보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세출 삭감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사업 간 통폐합이나 기획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복지사업의 경우 재원을 부담하는 자치단체가 재정효율화 관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사업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수혜자는 기존에 진행 중인 복지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는 법적 의무가 없는 '지방비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분권교부세 내 복지사업의 경우 포괄보조금제도로 변환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금'적으로 운영되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분권교부세 사업 내 비복지사업 분야의 비중은 도입 당시의 30% 정도(2005년 2,900억원, 2011년 4,500억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권교부세 사업 중 복지사업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반면 비복지사업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복지사업의 특성상 재정효율화가 쉽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비복지사업 분야 운영의 재정효율화 시도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분권교부세 내 복지사업의 경우 포괄보조금제도로 변환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금'적으로 운영되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분권교부세 사업 내 비복지사업 분야의 비중은 도입 당시의 30% 정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기타 자체사업

분권교부세 도입 당시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축소(Underprovision of public goods)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재정압박의 영향이 자체사업부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자체사업부분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난 7년여간 분권교부세 사업규모에서는 우려와 달리 복지관련 사업의 예산탄력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⁷⁾. 기능별 자체사업 비중

〈표 10〉 기능별 자체사업 비중

(단위: 조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지출(총계기준)	161.2	178.1	183.2	185.5	198.9	
경제개발 자체사업	금액	21.8	23.6	20.0	17.9	18.7
	비중	13.52	13.25	10.93	9.63	9.41
사회복지 자체사업	금액	5.3	5.7	6.0	5.8	6.1
	비중	3.3	3.2	3.3	3.1	3.0
문화및관광+교육자체사업	금액	10.0	11.6	12.0	12.1	13.1
	비중	6.23	6.52	6.56	6.55	6.59
기타 자체사업 (예비비 포함)	금액	31.3	33.0	31.9	31.5	34.3
	비중	19.40	18.53	17.43	16.97	17.26

주: 자치단체 예산개요 '경제개발=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사회복지=사회복지+보건, 기타=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및안전+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과학기술+예비비 기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복지재정수요 증가가 결국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전체 자치단체 평균을 전제로 한 가용재원 파악보다는, 시·군·구별, 광역자치단체별로 체계 있는 가용재원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의 자체사업 비중은 거의 감소하지 않은 반면, 기타 자체사업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효율화를 위한 복지 외 사업을 축소시켜 왔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우선순위를 가능케 한다.

I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 지출 관련 쟁점사항

1. 자치단체 가용재원 규모 파악

이상에서의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규모의 '증가율'에 대한 것이었고,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2005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기저효과'로 인하여 절대규모가 작은 부분에서의 증가율로는 정확한 정책적 함의를 갖기 어렵다. 이를 보다 더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구조적인 취약성과 연계하여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방재정 압박 현황은 복지수

요로 촉발되었지만, 정부간 재정구조가 보다 더 큰 원인이자면 복지부문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교육 분야 등 기타 분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자치단체의 가용재원 파악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자치단체별 자료로 살펴보면, 자치단체 '체급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67% 정도가 복지예산 비중이 30% 내외임을 알 수 있다⁸⁾. 물론, 매년 30% 내의 복지예산 비중인 자치단체의 수는 줄고 있는 추세이다. 체급별 자치단체 가용재원 파악의 의미는 기타 재정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별 자체수입에 해당하며, 재정자주도는 실질적인 자율재량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에 해당한다.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중인 재정자립도의 경우, 시·군·구별 격차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교부세 배분 이후의 재정자주도는 80% 내외의 재정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 2007년 이후 재정자주도 비중이 10%p 이상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치구의 사무가 대부분 복지사무인 점, 교부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에서 이미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 증가는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복지재정수요 증가가 결국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전체 자치단체 평균을 전제로 한 가용재원 파악보다는, 시·군·구별, 광역자치단체별로 체계 있는 가용재원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8) 개별 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김현아, 2009)에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체사업 예산 비율에서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자체사업 대비 복지자체사업 비중이 20%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자체사업 비중은 2007년 당시 2%, 2008년 이후로는 3% 내외로 나타난 바 있다.

〈표 11〉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의 분포

(단위: 개, %)

구 분	합계	구성비	시·도	시	군	자치구
합계	244	100	16	74	85	69
10% 미만	1	0	-	-	1	-
10~20% 미만	86	35	1	12	73	-
20~30% 미만	78	32	13	49	11	5
30~40% 미만	30	12	2	13	-	15
40~60% 미만	21	9	-	-	-	21
60% 이상	28	12	-	-	-	28

현재 지방세입 구조는 지방세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교부세를 배분하여 일정수준을 맞추고 난 후에 보조금으로 복지지출 수준을 조정하고 있다. 교부세가 지원되고 난 후에도 보조금 또한 차등보조율이 반영되어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에 재원이 집중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12〉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당초예산)

(단위: %)

연도별	전국평균 (순계규모)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2008년	79.5	82.0	50.7	72.0	64.8	63.1
2009년	78.9	81.2	49.5	71.5	64.6	61.8
2010년	75.7	76.3	46.0	69.1	62.2	57.9
2011년	76.7	78.5	47.5	68.7	62.7	56.2
2012년	77.2	79.2	49.2	68.4	62.9	55.6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표 13〉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당초예산)

(단위: %)

연도별	전국평균 (순계규모)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특별자치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2008	53.9	71.8	34.8	40.7	17.2	37.1
2009	53.6	72.7	33.3	40.7	17.8	37.3
2010	52.2	68.3	31.6	40.0	18.0	35.4
2011	51.9	68.6	33.0	38.0	17.0	36.6
2012	52.3	69.1	34.8	37.1	16.4	36.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 지역 간 불평등도 완화를 위한 차등보조율 도입

지방 관련 중요한 이슈인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등 현상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서는 2004년 이후 사회복지지출의 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보여주었다(최성은, 2010).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차등보조율'의 전면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이전재원 전체 즉, '지방교부세'의 배분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별 인구 1인당 사회복지예산에서 자치구는 33.7만원에 비하여 군 지역은 83.8만원이며, 인구 1인당 지방세 대비 복지지출액 비율은 군 지역이 자치구에 비하여 2.4배인 1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대상 1인당 지출액의 경우, 2006년 당시 평균값이 161만원 정도였는데, 2010년 기준 자치구는 174만원, 군 지역은 231만원이다. 현재 지방세입 구조는 지방세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교부세를 배분하여 일정수준을 맞추고 난 후에 보조금으로 복지지출 수준을 조정하고 있다. 교부세가 지원되고 난 후에도 보조금 또한 차등보조율이 반영되어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는 인구밀도가 낮은 군 지역에 교부세와 보조금의 상당부분이 지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서비스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차등보조율 도입 논의에 앞서 근본적으로는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전면적인 개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진국들과 비교 시 우리나라의 교부세(일반보조금) 규모는 GDP 대비 비중과 정부지출 대비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표 14〉 자치단체별 복지예산 재정부담구조(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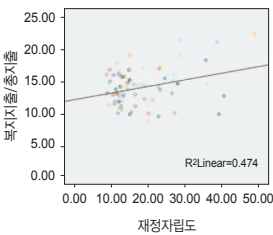
(단위: 만원 %)

	인구 1인당 사회복지예산	1인당 지방세부담액 대비 1인당 복지지출액 비율	사회복지대상 1인당 지출액
자치구	33.7	58.1	174.4
시	51.5	70.7	214.8
군	83.8	140.4	2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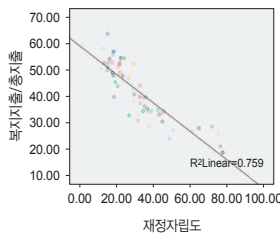
주: 사회복지대상은 보훈(국가보훈처), 0~4세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인구(주민등록인구), 등록 장애인(보건복지부)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참고: 고경환 외(2011)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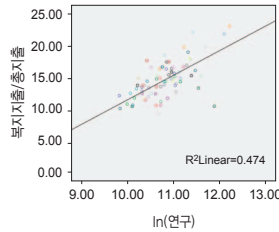
〔그림 7〕 군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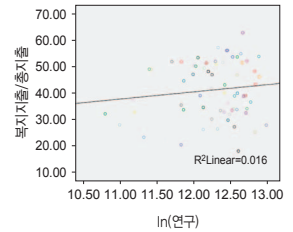
〔그림 8〕 특·광역시 자치구



〔그림 9〕 군 지역



〔그림 10〕 특·광역시 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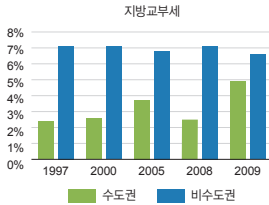


최근 보조금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중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역시 수도권화하는 경향도 주목할 대목이다. 교부세의 경우, 기준재정수요 중 사회개발비 분야 비중이 40% 가까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즉 복지 성격상 인구집중지역으로 배분이 우선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부세의 국고보조금화’ 현상이며, 원칙상 수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재원보전은 국고보조금에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⁹⁾. 따라서, 복지서비스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차등보조율 도입 논의에 앞서 근본적으로는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전면적인 개편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¹⁰⁾. 참고적으로, 선진국들과 비교 시 우리나라의 교부세(일반보조금) 규모는 GDP 대비 비중과 정부지출 대비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2007년 기준, 단일국가 중 정부지출 비중은 가장 높은 9.7%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핀란드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OECD (2009)).

9) 네덜란드에서도 ‘지방교부세의 국고보조금화’와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화’ 현상이 주요 특징으로 지적된 바 있다(Huigslot, 2009). 그러나 이 경우, 즉 지방교부세의 국고보조금화 현상은 수도권 지역민이 요구하는 재정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재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조금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OECD,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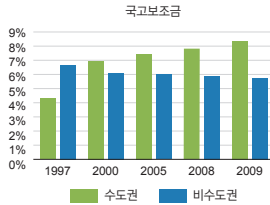
10) “Grant allocation is based on regression analysis and reflects local economic and demographic conditions which influence the probability that inhabitants will become welfare dependent. Thus, every local government in theory receives enough to finance welfare benefits to those who truly need them”(Allers, 2011).

[그림 11] 지방교부세



자료: Kim(2010)

[그림 12] 국고보조금



복지재정부담 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과 어떤 방법으로 속도를 조절할 것인가는 향후 국가의 중요한 정책 어젠다이다. 분야별 복지지출 증가속도를 감안하여 정부간 복지재원 부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5> 보통교부세 수요 비중 변화

(단위: 조원 %)

연도	기준재정수요액	사회문화복지비(비중)
2006년	45.3	13.9(30.8)
2007년	49.7	18.0(36.2)
2010년	54.9	21.7(39.4)
2011년	57.8	22.0(38.2)
2012년	59.2	22.2(37.4)

자료: 2006년~2007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을 참고하였고, 2010년부터 201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계산하여 정리한 것임(행정안전부)

IV. 결론

국제적으로 경제위기가 진행중인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산당국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별 재정효율화 방안이 필수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 복지재정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및 효율화 방안이 핵심사항이다. 이론에 따르면, 재정충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집권보다는 분권의 경우에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요 사례로 미국은 연방보조금을 포괄보조금화하여 재정효율화를 시도하였으며, 일본은 경제위기 및 복지재정 수요증대에 따른 국가재정 압박에 따라 국고부담률 제고와 서비스 통폐합을 통한 중앙정부 부담을 완화한 반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켰다. 지난 경제위기 과정에서의 주요 국가들

의 변화에서는 오히려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복지지출 부담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는 추세를 보였다.

복지재정부담 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과 어떤 방법으로 속도를 조절할 것인가는 향후 국가의 중요한 정책 어젠다이다. 분야별 복지지출 증가속도를 감안하여 정부간 복지재원 부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재정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부담 현황과 지방비부담 증가속도 분석을 위한 국제 DB 자료에서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국가별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은 정부간 복지재정부담 조정은 이전재원 제도 개편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주요국들의 경우와 현재 우리나라 복지사업 증가 내용을 볼 때, 의료건강이나 연금과 같은 전국 공통적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은 중앙정부가 설계하지만, 보육·취약계층 등의 분야는 지방정부별로 차등화된 프로그램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 재정부담을 중앙정부와 분담하는 방식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과거 분권교부세 사업의 축소를 우려했지만 재정부담이 줄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자치단체는 재정수요만큼 복지지출 재원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복지프로그램이 적정수준을 찾아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의 총정부지출 중 25% 이상을
이전재원으로 배분하는 점이
재정당국의 분야별 자원배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점은 주지할 만한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속도 조절 방식은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은 지방자치단체 지출분야별·단체별·재원별 재정지출 규모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시·군·구별 재정력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치구와 시·군의 인구구조나 재정력 격차가 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재정력 파악에 따른 '시·군·구별 차등보조율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수급자 기준 완화 등 의무비 지출 확대 시 지방재정 부분 추계가 불명확하게 이루어진 점(예: 법안심사 시 지방비부담 비용 의무화(국회예산정책처, 2011)) 등 지방비부담 부분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복지문제로 나타난 재정부담 문제는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자치단체별 가용자원 파악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은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국한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교부세도 포함하는 전면적인 이전재원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총정부지출 중 25% 이상을 이전재원으로 배분하는 점이 재정당국의 분야별 자원배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점은 주지할 만한 사항이다. **KIPF**

<참고문헌>

고경환 외,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고경환,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현황과 정책과제』,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7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김현아, 『보조금 정책에 대한 논의: 지방교부세 VS 국고보조금』,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10.1.

김현아, 『OECD 기준 공공사회지출 통계정비』,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9.

박인화,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현안분석, 제35호, 국회예산정책처, 2010.9.

박형수·송호신, 『장기재정전망』,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1.3.

박형수·전병목,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9.10.

서정섭, 『정부간 복지재정책임의 재조정과 분권교부세제도의 개편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40호, 2011.

서정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영향분석과 구조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

원종욱 외,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이재정,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현안분석, 제32호, 국회예산정책처, 2011.9.

최성은,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 _____,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각 연도
- _____, 『보통교부 산정내역』, 2012.
- Adema, W.P. Fron and M. Ladaique,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Indicators on Social Spending, 1980–2012; and a Manual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OECD Publishing, 2011, <<http://dx.doi.org/10.1787/5kg2d2d4pbf0-en>>
- Allers, Maarten A., “Decentralization with national standards. The case of the Netherlands,” the 2011 Copenhagen Workshop, Normative frameworks of decentralization and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Efficient instruments for desired balance decentralization and merit, the Danish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Welfar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Baskaran, Thushyanthan, “Soft budget constraints and strategic interactions borrowing: Evidence from German States, 1975~2005,” *Journal of Urban Economics*, no. 71, 2012, pp. 114~127
- Blochliker, Hansjorg and Oliver Petzold, “Taxes or grants: what revenue source for sub-central governments?,”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06, ECO/WKP(2009)47, 2009.7.
- Einar Overbye, Signy Vado and Knut Wedde, “Rescaling Social Welfare Policies in Norway,” Oslo University College; European Center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research, 2006.2.12.
- Fishback,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and Nordic countries 1900~2003,”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15982, 2010, <<http://www.nber.org/papers/w15982>>
- Kim, Hyun-A, “Contemporary needs regarding general and earmarked grants in Korea: An assessment,” pp. 263~284, Chapter 10 in “General grants versus earmarked grants: Theory and practice,” The Copenhagen Workshop 2009, KIPF and the Danish Ministry of Interior and Health, 2010.

〈부록〉

〈부표 1〉 UN의 『10대 정부기능분류:(COFOG)』 체계

01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services)	07 보건 (Health)
02 국방 (Defence)	07.1 의료제품, 기기및장비 (Medical products, appliances and equipment) 07.2 외래환자서비스 (Outpatient services) 07.3 병원서비스 (Hospital services) 07.4 공중보건서비스 (Public health services) 07.5 R&D 지원 (R&D health) 07.6 보건 정책 (Health n.e.c.)
03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04 경제업무 (Economic affairs)	
05 환경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08 여가, 문화 및 종교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06 주택및지역사회개발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 주택공급 (Housing development) - 지역사회개발 (Community development) - 상수도 (Water supply) - 도로조명 · 유지보수 (Street lighting) - R&D지원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 주택및지역사회시설 정책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n.e.c.)	09 교육 (Education)
	10 사회복지 (Social protection)
	10.1 질병 · 상해와 장애 (Sickness and disability) 10.2 노년층지 원 (Old age) 10.3 보훈 (Survivors) 10.4 육아및자녀부양 (Family and children) 10.5 실업대책 (Unemployment) 10.6 저소득층 주거안정 (Housing) ¹⁾ 10.7 사회적약자 · 취약층 (Social exclusion n.e.c.) 10.8 R&D지원 (R&D social protection) 10.9 사회복지정책 (Social protection n.e.c.)

주: 1) 사회복지에 속하는 Housing(주거안정)은 자산조사에 근거를 둔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주택및지역사회개발의 Housing(주택건설)과는 다른 것이다.
 자료: UN, 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홈페이지 참조

〈부표 2〉 OECD의 공공사회지출 통계(SOCX)분류

분 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부문	
1. 노령 (old age)	-4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2. 유족 (survivors)	-4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3. 근로 무능력 (incapacity)	-산재보험 (요양급여제외)	-보훈(보상)
4. 보건 (health)	-건강보험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요양급여)
5. 가족 (family)	-보육 -보훈(복지, 기타)	-가족 및 여성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	-고용보험(기타)	-기타 노동
7. 실업 (unemployment)	-고용보험(실업급여)	
8. 주거 (housing)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9. 기타 (other social policy areas)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장애연금, 장애수당, 기타)	-기타 노인/청소년 -사회복지 일반

자료: 1. OECD,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 Interpretive Guide SOCX 1980~2003, 2007.
 2. 박형수 외, 한국조세연구원, 2009.

재정패널을 이용한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I. 들어가며



이혜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hwlee@kipf.re.kr)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규정된 법적, 행정적 개념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미만이면서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18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6년 조사 시 170만명에서 약 13만~14만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은 극빈층인 수급자보다는 생활여건이 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잠재적 빈곤위험이 높은 집단이며, 각종 공공부조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탓에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집단이다(이현주 외, 2008).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이 정부 각 부처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수급권자가 누리는 혜택에 비하면 규모도 현저히 작고 실효성이 떨어져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누리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공공부조의 혜택이 수급권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는 불가피하게 수급권자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경제여건 악화로 빈곤위험이 보다 넓은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¹⁾.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는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을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으며(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130%에서 185%로 인상),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크게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정성에 대한 논의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에 대한 논의로 나누어진다.

**만약 차상위에서 일반가구로의
탈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빈곤위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움직임은 기존의 제도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증가를 수용하지 못한 채 광범위한 사각지대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기초생활보장지원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빈곤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복지 사각지대 개선과 관련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에서 차상위계층에 한정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일반적인 빈곤층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³⁾.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차상위계층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복잡한 산출방식을 통해 차상위를 추정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적인 빈곤층에 관한 연구는 그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므로 광의의 차상위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은 전자에서 빈곤층의 설정이 공공부조제도의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기준소득선 아래에 있는 집단(절대적 빈곤) 또는 중위소득의 40~60% 이하에 있는 집

단(상대적 빈곤)으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공공부조제도상의 정책적 구분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복지 사각지대 논의에서 중요한 논점 중 하나가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빈곤층과 수급자 간 정부지원 차별의 당위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정책적 구분이 유의미한 구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차상위계층의 실태 파악과 이동성 분석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차상위의 이동성에 관한 분석은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간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만약 일반가구에서 차상위로의 진입이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가구의 소득 하락에 의해 이루어지고, 차상위로 전락한 대부분의 가구들이 별도의 정부지원 없이도 단기간에 빈곤의 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수급자 위주의 현 정책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차상위에서 일반가구로의 탈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빈곤위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차상위계층의 법적 개념을 제시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의 현황을 정리한다. 제Ⅲ장에서는 분석자료와 방법을 설명하고, 제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실증분석은 차상위계층의 실태파악과 이동성 분석으로 나누어진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조세연구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환산율은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에 활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 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출한다. 현재, 주택, 토지 등 일반재산에 대해 적용하는 환산율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9%, 자동차(2000만원 이상)는 월 100%이다. 환산율이 높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의해 수급 자격을 얻기가 어려워진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환산율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되었다는 지적에 의해 복지부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4%로 낮추는 대신 금융재산의 환산율을 월 9%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 현존 연구 중 차상위계층에 관한 가장 종합적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이현주 외(2008)의 연구이다. 이현주 외(2008)는 차상위계층의 육구영역별(근로, 의료, 주거, 교육, 문화, 금융소외), 집단별(노인, 장애인, 아동)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의 재정패널 1~4차 자료(2007~2010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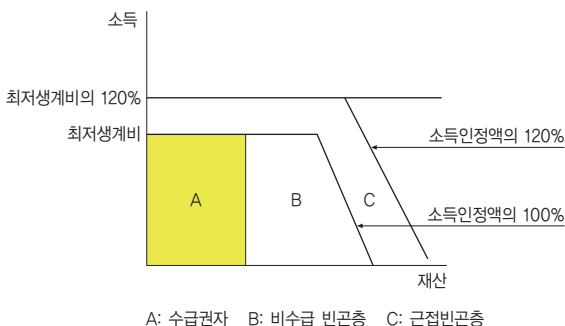
II. 차상위계층의 개념과 지원정책 현황

1. 법적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규정된다. 즉,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낮지만 절대빈곤의 위험이 여전히 높은 ‘잠재적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친 개념이다.

[그림 1]은 현행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여기서 A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하며, B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나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을 의미한다. 그림의 C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근접빈곤층을 나타낸다. 따라서 현행법상 차상위계층은 B와 C를 합친 규모라 할 수 있다.

[그림 1] 차상위계층의 개념과 범주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낮지만 절대빈곤의 위험이 여전히 높은 ‘잠재적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친 개념이다.

2. 차상위계층 지원정책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정부 각 부처에서 마련한 지원 지침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표 1 참조). 보육, 장애인, 급식, 교육, 유학, 주택,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차상위 지원 정책이 존재하나 실질적인 지원은 4대 차상위제도인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경감),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지원, 차상위 자활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중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는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기준 부양능력 없음)과 질병의 중증도(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18세 미만)를 따지는 등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법정 차상위 중 약 6분의 1 정도만 혜택을 받는 실정이다.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수당 월 12만원, 경증장애수당 월 3만원, 중증장애아동 부양수당 월 15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 부양수당 월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한부모가정 기본수당은 아동 1인당 양육비 월 5만원이다.

4대 차상위 지원제도 중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자활 지원제도뿐이나 시급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수준으로 실질적인 소득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다. 또한, 근로유

〈표 1〉 정부부처별 차상위계층 지원 법령 현황

소관부처	법령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차상위계층 정의 · 급여기준, 절차 · 자활촉진 관련 · 차상위계층 조사
	「영유아보육법」	· 차상위계층 자녀 보육시설 우선이용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활동지원급여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장애인복지법」	· 장애수당 지급대상에 차상위계층 포함
교육과학기술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 정부양곡 50% 할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차상위계층 자녀 공제료 부담
	「학교급식법」	·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고등교육법 시행령」	· 대학, 편입학 별도 정원 운영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자금대출금 이자지원
	「초·중등교육법」	· 자사고 입학정원 20%이상 선발
국토해양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국비유학생 선발시 별도 시험 실시 가능
		· 고교생 수업비, 입학금 지원
		· 인터넷 통신비 50% 지원
고용노동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관련 업무 우선 고용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획재정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배점)
환경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 다기능기술자 과정 정원외 특별전형
지식경제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 소액신용대출사업 요건에 포함
방송통신위원회	「수도법」	· 수도요금 할인 대상
법무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 주거용 전기설비 응급조치 대상 · 전기, 가스요금 할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전화요금 감면 대상자 포함
국방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 사무규칙」	· 벌과금 일부 납부 또는 연기 신청대상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 사무규칙」	· 벌과금 분할 납부 또는 기간유예

출처: 이만우 외(2011)

지형, 사회적일자리, 시장진입형, 인턴형의 자활근로 중 근로유지형은 기초수급자에게만 해당되며, 기초수급자가 자활참여 조건으로 자활임금 외에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는 데 반해 차상위계층은 자활임금 외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 4대 차상위지원제도의 대상자는 약 70만명이며, 중복을 뺀 순수 혜택자는 약 63만명으로 금액이나 보장성 측면에

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지원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Ⅲ.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재정패널 1차~4차년도 자료이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시점은 2007~2010년이다. 재정패널은 한국조세연구원이 조세·재정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구축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패널조사이다⁴⁾. 재정패널의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약 5,000여개의 가구와 원가구에서 분가한 신규 분가가구이다⁵⁾. 재정패널은 가구조사와 가구원조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구원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100만원 이상), 연금/보험소득, 기타소득, 정부 현금보조금 등의 소득이 있는 가구원을 조사한다⁶⁾. 저소득층 표본 확보와 관련하여 재정패널은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을 선정하여 이 지역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를 과대표집(over sampling)하는 방식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를 추가표집하여 설계되었으므로 본 연구와 같은 빈곤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빈곤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노동패널이나 복지패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타 패널과 비교하여 재정패널이 몇 가지 장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첫째, 2011년에 실시한 조사자료가 가용하여 시의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 노동패널의 가용한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08년 11차년도 자료이며, 복지패널은 2009년에 실시한 5차년도 자료이다. 각 조사에서 전년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재정패널 1차~4차년도 자료이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시점은 2007~2010년이다. 재정패널은 한국조세연구원이 조세·재정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구축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패널조사이다.

소득을 조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는 재정패널이 유일하다(재정패널의 소득조사 시점은 2007, 2008, 2009, 2010년이다). 둘째, 재정패널은 타 패널에 비해 비교적 높은 표본유지율을 보이며, 셋째, 타 패널에서 발견되는 소득정보의 시점과 가구 및 취업정보의 시점 불일치(가구 및 취업정보는 조사시점의 정보를, 소득은 조사시점에서 지난 한 해의 것을 파악)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진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균형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로 관찰시점이 4개 모두 존재하는 3,906개 가구를 사용하였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의 선정이 가구단위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로 설정하였다.

2. 차상위계층의 구분기준

본 연구에서 차상위계층을 구분하기 위해 활용한 가구의 기준소득은 소득인정액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

4) 재정패널 1~2차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으며(<http://panel.kjpf.re.kr/>), 3~4차 자료는 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5) 재정패널 조사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모집단 자료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이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한 조사구를 1차 추출단위로 하고, 이 중 일정 수의 가구를 2차적으로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이 적용되었다. 1차조사의 가구 표본의 목표치인 5,010개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 표본 조사는 1,002개이다. 1차조사의 원표본가구는 5,014가구이나, 2차년도에 대체표본 가구 620개 가구가 추가되었다.

6) 사적 이전소득이 유일한 소득인 가구원은 제외됨. 또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유일한 소득원이고, 그 액수가 100만원 미만인 가구원은 제외됨.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이면서 비수급자인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이면서 비수급자인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경로연금,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과 근

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한 값이다. 여기서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시장소득과 사회보험 총소득이며, 근로소득공제는 자활근로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30%를 공제한다. 재정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나 자활근로소득 공제 등을 산출하여 정확한 소득평가액을 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장소득과 사회보험을 합한 금액을 소득평가액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값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승용차(2000만원 이상)로 구성되며, 각각의 소득환산율은 4.17%, 6.26%, 100%이다. 일반재산은 주

〈표 2〉 본 연구의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소득평가액	시장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자및배당소득+기타소득+민간보험 총소득+사적이전소득
	사회보험	사회보험 총소득
	소득평가액	시장소득+사회보험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주택가격+소유부동산+점유부동산+농기계, 가축(100만원이상)+기타자산(보유회원권, 기타)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총부채-지역별 공제) * 4.17%
	금융재산	금융기관 예적금+펀드가입금액+채권보유금액+주식보유금액+빌려준돈+기타금융자산
	소득환산액	(금융재산-300만원-추가부채액-추가공제액)*6.26%
		* 추가부채액 1) 총부채>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액: (총부채-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액) 2) 총부채<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액: 0
		* 추가공제액 1) 지역별 기초공제액 ¹⁾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액: (지역별 기초공제액-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액) 2) 지역별 기초공제액<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액: 0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일반 가구	소득평가액/12+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²⁾	소득평가액/12

주: 1) 지역별 기초공제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대도시: 5,400만원(2009년 이전 3,8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2009년 이전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2)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임신부,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 2,000만원 이상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택, 소유 및 점유 부동산, 100만원 이상 농기계 및 농축산물, 기타재산(골프, 콘도 회원권 등)의 총합에서 총부채액과 지역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금융재산은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유가증권, 예금, 적금 등을 포함하며, 생활준비금공제로 가구당 300만원을 공제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득인정액 산출방법과 연도별 최저생계비 수준은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8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2009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2010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IV. 분석결과

1. 차상위계층의 규모

앞서 설명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산정한 2007~2010년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표 4>와 같다. 2007년 차상위계층은 전체의 9.5%를 차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과 2009년 차상위의 비중이 증가하여 2009년 전체 표본의 약 13%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2009년을 정점으로 꺾여 2010년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전체의 약 11.5%에 해당한다. 경제여건 변화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차상위계층과 달리 수급자의 비율은 약 5% 내외로 경제 상황에 비교적 비탄력적으로 반응함을 볼 수 있다.

경제여건 변화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차상위계층과 달리 수급자의 비율은 약 5% 내외로 경제 상황에 비교적 비탄력적으로 반응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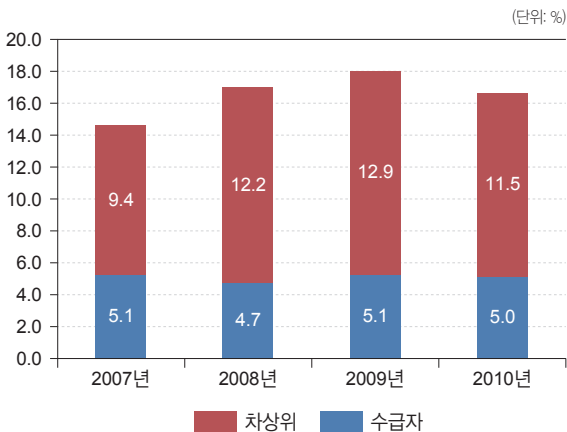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넓은 의미의 빈곤층이라 볼 수 있는데, [그림 2]는 2007~2010년 빈곤층의 구성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2007년에는 수급자와 차상위를 합한 빈곤층의 규모가 전체 표본의 약 14.5%를 차지하며, 2009년까지 약 18.0%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다시 약 16.5%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추세는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경제 불황이 빈곤층 중 차상위계층을 더욱 두텁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수급자 규모가 경제 상황에 비교적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경제불황으로 인한 소득기회의 감소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이 미흡하거나 수급자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경제여건의 악화로 급격한 소득감소를 경험한 계층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규모가 수급자에 비해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나 절대빈곤층의 수급률이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수급자는 아니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이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지만 실질적인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기초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취약성 측면에서 수급자와 일반 가구의 중간적 특성을 지니며, 수급자가 가지는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다소 완화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4〉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규모 변화

연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
2007년	N=199 (5.1%)	N=369 (9.5%)	N=3,338 (85.5%)
2008년	N=183 (4.7%)	N=477 (12.2%)	N=3,246 (83.1%)
2009년	N=201 (5.2%)	N=504 (12.9%)	N=3,200 (81.9%)
2010년	N=197 (5.0%)	N=448 (11.5%)	N=3,261 (83.5%)

[그림 2] 빈곤층의 구성 비중 변화



2. 차상위계층의 특성 분석

차상위계층의 특성을 가구의 인구학적, 경제적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전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취약성 측면에서 수급자와 일반 가구의 중간적 특성을 지니며, 수급자가 가지는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다소 완화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일반 가구에 비해 총가구원 수나 취업 가구원 수가 적으며, 여성 가구주와 한부모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노인가구의 비중은 차상위계층에서 약 60%로 일반가구(20% 내외)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지만, 수급자의 노인가구주 비중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차상위 가구의 교육수준은 일반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일반가구의 대졸 이상이 약 40%, 차상위계층의 대졸 이상은 10~15%), 수급자와 비교하여서는 대졸 비중이 약간 높다는 차이를 보인다. 가구의 근로형태에 있어서 일반가구에서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이 근로형태의 약 80%를 차지하며 무직이 약 15% 내외인 데 반해, 차상위계층에서는 전자의 비중이 약 40%, 무직이 40~50%를 차지하며, 수급자 가구 중 약 70%가 무직으로 나타난다.

〈표 5〉 차상위계층의 특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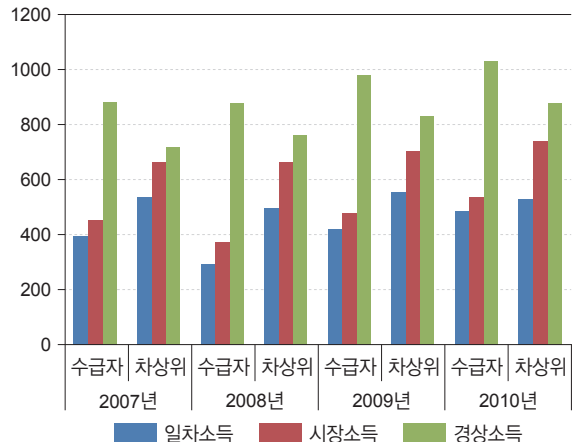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수급	차상	일반	수급	차상	일반	수급	차상	일반	수급	차상	일반
합계	199	369	3,338	183	477	3,246	201	504	3,200	197	448	3,261
총가구원(명)	2.2	2.4	3.1	2.1	2.4	3.2	2.2	2.4	3.2	2.2	2.3	3.2
취업 가구원(명)	0.3	0.7	1.2	0.3	0.7	1.2	0.5	0.8	1.3	0.4	0.7	1.3
여성 가구주	53.8	39.0	14.1	52.5	38.6	13.7	49.8	35.7	13.7	48.7	37.7	13.9
노인 가구주	58.3	60.4	22.2	63.9	55.1	23.6	62.7	59.5	25.6	53.8	59.4	17.0
한부모가구	11.1	3.2	1.7	8.7	3.3	1.6	10.4	4.0	1.4	9.9	3.9	1.4
교육수준:												
대졸	4.5	10.3	38.5	4.9	9.6	39.9	6.0	13.5	41.2	10.7	15.0	42.1
고졸	25.6	22.2	35.7	27.3	27.9	37.1	27.4	27.0	35.6	26.4	22.8	35.2
중졸	13.1	13.8	10.7	15.8	13.8	10.4	18.4	12.5	11.1	29.3	12.9	10.5
초졸이하	56.8	53.7	15.1	51.9	48.6	12.6	48.3	47.0	12.2	43.7	49.3	12.1
근로형태:												
임금 근로자	9.5	12.2	46.7	7.1	11.5	47.9	10.4	15.1	47.5	8.6	11.6	46.4
일용 근로자	14.1	14.9	7.4	15.3	15.1	6.6	11.9	12.5	6.3	15.2	9.6	6.1
자영업	6.0	29.8	30.6	6.6	28.9	30.7	9.5	27.8	30.6	6.1	27.0	30.1
무직	70.4	43.1	15.3	71.0	44.0	14.5	67.7	43.7	15.4	70.1	51.8	17.4

차상위계층과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3]~[그림 6]에 나타난다. 먼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비교한 [그림 3]을 보면, 차상위계층의 일차소득과 시장소득은 수급자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을 더한 경상소득에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득역전 현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이전소득의 규모 차이에 기인한다. [그림 4]에 의하면, 사적이전소득 규모는 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에서 크게 나타나는 반면, 공적이전소득의 규모는 수급자 가구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수급자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인데 연평균 수급액이 약 400만원에 이르러 두 집단 간에 큰 공적이전소득의 차이

를 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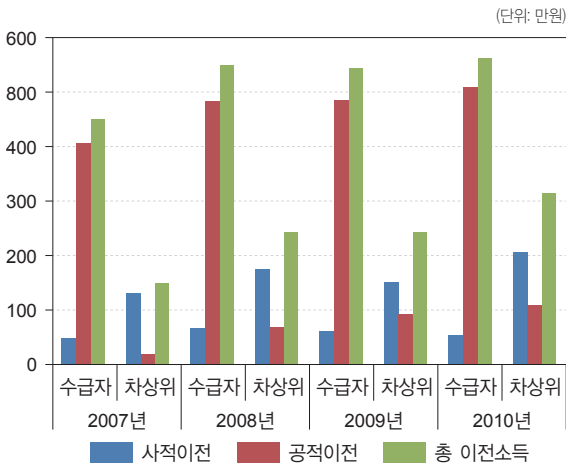
[그림 3] 차상위계층과 수급자가구의 소득 비교

(단위: 만원)



**차상위계층의 사적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인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소득보장기제로서 불안정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가구의 이전소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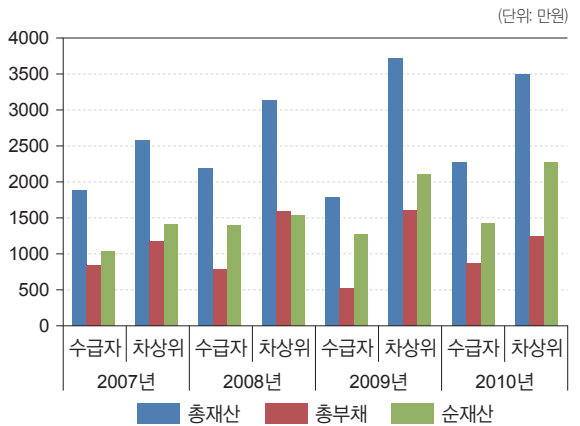


수급자의 선정요건 중 하나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수급자에 비해 현저히 크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의 사적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인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소득보장기제로서 불안정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사적이전소득은 제공하는 사람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가변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욱 가중될 여지가 존재한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차상위계층 사적이전소득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의해 부양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나빠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수급자의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을 유지함을 볼 수 있다.

[그림 5]는 차상위와 수급자 가구의 총재산, 총부채, 순재산(총재산-총부채)을 나타낸 그림이다. 차상위 가구는 수급자 가구에 비해 총재산이 많을 뿐 아니라 부채수준도 높게 나타나며, 차상위와 수급자의 순재산 차이는 2008년 약 143만원 정도에서 2009년 이후 8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차상위 가구의 총재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특이할 만한 점이다. 경제여건 악화로 인하여 이 시기에 일반 가구에서 차상위 가구로의 진입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원래 차상위계층에 속하였던 가구의 재산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진입한 차상위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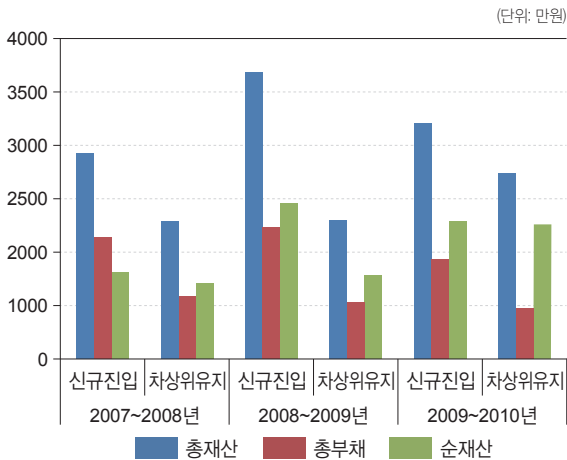
[그림 5]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가구의 재산, 부채 비교



각 연도의 차상위 가구를 전년도에 이어 차상위를 유지한 가구와 일반가구에서 차상위로 새롭게 유입된 가구로 나누어 재산과 부채를 나타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이에 따르면, 차상위로 신규 진입한 가구의 총재산이 차상위를 유지한 가구에 비해 항상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가장 가시

적으로 나타난 2008과 2009년 사이 차상위로 신규 진입한 가구의 평균 재산수준이 차상위를 유지한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에 일반가구에서 차상위로의 진입이 가장 활발하였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인데,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계층까지 빈곤 위험이 넓게 확대되었음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한다. 2008년과 2009년 사이 차상위를 유지한 가구의 재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을 볼 때, 2009년 전체 차상위가구의 현저한 재산 증가는 새롭게 유입된 차상위 가구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6] 차상위 구분에 따른 재산, 부채 비교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볼 때, 개념적으로는 차상위계층이 수급자에 비해 형편이 나은 집단이지만, 실제로는 저학력, 여성가구주, 노인가구주,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며, 순재산 규모와 일차소득, 시장소득 수준은 수급자보다 약간 높으나 경상소득 기준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전이 발생함을 볼 수 있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이전 소득의 규모가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취약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위주로 이루어진 공공부조제도에서 배제되어 이중적 취약성을 가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와 차상위계층의 일차소득이나 시장소득 격차를 보충해 주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수급권자와 비수급 빈곤층 간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즉,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취약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위주로 이루어진 공공부조제도에서 배제되어 이중적 취약성을 가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3. 차상위계층의 이동성

이상의 분석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가 극빈층인 수급권자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비수급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차상위계층의 빈곤 위험이 얼마나 고착화되어 있느냐의 여부이다. 만약 차상위로의 진입이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소득하락에 의해 이루어지고, 차상위로 전락한 대부분의 가구들이 별도의 정부지원 없이도 단기간에 빈곤의 덩어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수급자 위주의 현 정책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차상위에서 일반가구의 탈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빈곤위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이동성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속된 두 개 연도의 차상위 지위 이행을 살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상위를 유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일반가구로 탈출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차상위계층의 상향이동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나, 절반 이상에서는 여전히 빈곤위험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고, 이어 총 4개 연도에 걸친 차상위의 이동성을 유형화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은 해당연도의 월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면 비수급자인 가구를 지칭한다. 차상위의 이동성과 관련하여, 차상위 중 다음 연도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이면 차상위를 탈출한 것으로, 120% 미만이며 비수급자이면 차상위를 유지한 것으로 분류하였다⁷⁾.

〈표 6〉은 t년도 차상위가구의 t+1년도 지위 변화를 추적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2007년 369개 차상위가구 중 약 3분의 2가량은 차상위를 유지한 반면, 약 30%의 가구는 일반가구로 상향이동하였다. 2007년 차상위 중 그 다음해에 수급자로 전환된 가구는 약 5%로 극히 일부이다. 2008년과 2009년 사이, 2009년과 2010년 사이에도 기준연도 차상위의 절반 이상은 그다음해에도 차상위를 유지하였으며, 30~40% 정도는 차상위를 탈출하였으며, 극히 소수만이 수급자로 하향이동하였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상위를 유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일반가구로 탈출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차상위계층의 상향이동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나, 절반 이상에서는 여전히 빈곤위험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차상위계층의 이동성: t년도 차상위의 t+1년도 지위

t년도 차상위의 t+1년도 지위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07~2010
차상위	243 (65.6%)	285 (59.7%)	273 (54.2%)	182 (49.3%)
수급자	18 (4.9%)	23 (4.8%)	19 (3.8%)	25 (6.8%)
일반	108 (29.3%)	169 (35.4%)	212 (42.1%)	162 (43.9%)
합계	369	477	504	369

앞서 살펴본 바가 t년도 기준으로 t+1년도의 차상위 지위를 나타낸다면, t년도에 차상위로 분류된 가구 중 t-1년도에 일반가구였다가 새롭게 유입된 가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표 7〉에 따르면, 일반가구에서 차상위로 진입하는 가구의 비율은 2008년과 2009년에 40%를 상회하나, 2010년 들어 35%로 소폭 감소하여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반가구에서 차상위로의 진입이 활발해져 차상위계층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경제위기의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난 후에는 차상위계층에서 일반 가구로의 탈출이 활발해졌으며 동시에 일반 가구에서 차상위로 진입하는 비율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는 기준선 주변에서 가구에게 거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미미한 소득변화가 일어난 경우에도 차상위의 이동성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30% 이상으로 변화한 경우에만 차상위를 탈출한 것으로 분류하는 추가분석도 실시하였다. 기준선의 상향조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상위의 이동성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조정 전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7〉 차상위계층의 이동성: t년도 차상위의
t-1년도 지위

t년도 차상위의 t-1지위	2008년 차상위	2009년 차상위	2010년 차상위	2007~2010
차상위	243 (50.9%)	285 (56.5%)	273 (60.9%)	182 (40.6%)
수급자	27 (5.7%)	7 (2.4%)	18 (4.0%)	29 (6.5%)
일반가구	207 (43.4%)	212 (42.1%)	157 (35.0%)	237 (52.9%)
합계	477	504	448	448

이상의 분석은 연속된 두 개 연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차상위계층의 이동성을 측정하였으나, 재정패널의 가용한 4개 시계열을 모두 이용하면 좀 더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표 8〉 참조). 4개 연도의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3,906가구 중 약 77.1%에 해당하는 3,014가구는 4년 동안 한 번도 차상위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이는 반대로 전체의 약 5분의 1 정도의 가구가 4년 동안 차상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차상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892가구 중 차상위 경험 횟수가 1회인 ‘일시 차상위’는 392가구로 전체의 43.9%를 차지한다. 이는 경제상황이나 가구여건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차상위로 전락하는 가구의 비중이 상당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빈곤의 대다수가 일시적인 빈곤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구인회, 2002; 2005; 석상훈, 2010; 홍경준, 2004; 황덕순, 2001). 반면, 총 4개 연도 중 차상위 경험횟수가 3회인 ‘만성 차상위’는 전체의 20.4%를 차지하며, 모든 연도에 차상위로 분류된 ‘항상 차상위’ 가구도 전체의 1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차상위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가구의 약 3분의 1은 4개 연도 중 3회 이상 차상위로 분류되어 차상위로 고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차상위계층의 이동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

이는 경제상황이나 가구여건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차상위로 전락하는 가구의 비중이 상당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빈곤의 대다수가 일시적인 빈곤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점 중 하나는 차상위 탈출가구의 이동성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의 여부이다. 자립기반이 굳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선 주변의 미약한 소득변화에 의한 차상위 탈출은 단기간에 차상위 재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차상위 이동성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자료가 요구된다. 그러나 주어진 자료를 통해 기초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것은 한 시점에서 차상위를 탈출하였으나 분석기간 중 재진입한 ‘반복 차상위’ 가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이다. ‘반복 차상위’의 비중이 높을수록 차상위를 탈출하는 가구의 이동이 일시적이거나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차상위를 탈출하였다가 재진입한 ‘반복 차상위’ 가구는 105가구로 차상위를 한 번 이상 경험한 가구의 약 11.8%이며, 이는 차상위를 탈출한 가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4개 연도 내에 탈출과 재진입이 동시에 관찰되는 가구만을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보다 장기간에 걸친 ‘반복 차상위’의 빈도는 이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차상위의 약 30~40%는 다음 해에 일반가구로 상향이동하였으며, 매년 차상위의 약 30~40%는 전년도 일반가구에서 차상위로 새롭게 유입된 계층이다.

〈표 8〉 차상위의 유형화

		t=1	t=2	t=3	t=4
일시 차상위	N = 112	0	0	0	1
일시 차상위	N = 117	0	0	1	0
	N = 60	0	0	1	1
일시 차상위	N = 94	0	1	0	0
반복 차상위	N = 21	0	1	0	1
	N = 46	0	1	1	0
만성 차상위	N = 73	0	1	1	1
일시 차상위	N = 69	1	0	0	0
반복 차상위	N = 15	1	0	0	1
반복 차상위	N = 14	1	0	1	0
반복/만성 차상위	N = 28	1	0	1	1
	N = 50	1	1	0	0
반복/만성 차상위	N = 27	1	1	0	1
만성 차상위	N = 54	1	1	1	0
항상 차상위	N = 112	1	1	1	1
일반	N = 3,014	0	0	0	0

	차상위계층 한 번 이상 경험 (N = 892)
일시 차상위	392 (43.9%)
반복 차상위	105 (11.8%)
만성 차상위	182 (20.4%)
항상 차상위	112 (12.6%)

VI. 맺음말

본 연구는 재정패널 1차~4차 자료를 이용하여 차상위계층의 정태적 측면과 동태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빈곤층이면서도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의해 공공부조 수혜대상에서 배제된 차상위계층에 관한 연구는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초보장 사각지대 논의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2010년 우리나라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전체 가구의 약 10% 내외로 경기변동에 비교적 탄력적으로 반응하였다.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차상위 가구가 전체의 13%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들어 2008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의 특성(노인가구주, 여성가구주, 저학력,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 등)을 가지고 있으나 수급자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일차소득, 시장소득, 재산은 수급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경상소득에서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간 소득역전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실제 생활여건은 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열악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차상위계층은 공공부조제도에서 배제되어 취약성이 기중되는 집단이지만, 전체 차상위의 약 30~40%는 매년 일반 가구로 상향이동한 반면, 이보다 약간 많은 절반가량은 다음 해에도 차상위를 유지하였다. 또한, 매년 차상위계층의 약 30~40% 정도는 일반가구에서 차상위로 새롭게 진입한 계층이었다. 한편, 차상위를 탈출한 가구 중 약 4분의 1은 분석기간 내 차상위로 재진입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차상

위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도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상 4개 시계열에 한정하여 차상위의 이동성을 살펴보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물론 차상위의 장기적인 이동성을 살펴보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이러한 제약하에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2008년 말의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외생적 충격이나 가구여건의 변화로 차상위계층의 규모가 변화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의 이동성도 상당 부분 관찰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은 분석에서는 거시경제의 영향뿐 아니라 가구의 학력, 취업상태, 근로소득 변화액, 취업가구원 수 등 가구의 특성이 차상위의 이동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수급권자에 비하여 차상위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상위에서 상향이동이 관찰되는 것은 차상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에 있어서 단순히 기초생활 수급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관련된 최근 논의의 흐름은 크게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하자는 논리(보장성 강화)와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자는 논리(자립 촉진)로 요약된다(노대명, 2011). 이 중 전자는 수급자 중심의 공공부조제도가 가져오는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간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부적절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나 실제의 부양행태를 무시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계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 제도의 합리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이며, 제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약 3분의 1만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급 빈곤층인 차상위계층까지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현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적으로나마 차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적으로나마 차상위계층의 상향이동이 근로능력자의 취업기회 확대나 취업의 질 향상 등과 같은 가구 차원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위계층의 상향이동이 근로능력자의 취업기회 확대나 취업의 질 향상 등과 같은 가구 차원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은 빈곤위험에서 벗어나기 힘든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에 대해서는 욕구별 급여체계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능력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KIPF**

〈참고문헌〉

- 구인회,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48집, 2002, pp. 82~112
- 구인회,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 복지학』, 제57집, 제2호, 2005, pp. 351~374
- 노대명,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제도구성체계의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18집, 제1호, 2011, pp. 83~117
- 이만우 외, 「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과제」, 『이슈와 논점』, 제28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
- 김교성,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특성 및 지위 변화」,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2집, 2009, pp. 83~109
- 석상훈, 「저소득계층의 빈곤이행과 소득변화」, 『사회보장연구』, 제26집, 제3호, 2010, pp. 25~47
- 이병희 외,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10.
- 홍경준,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4집, 2004, pp. 187~210
- 이현주 외,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비만세 도입에 대한 소고

I. 서론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eklee@kipf.re.kr)

지금까지 비만은 미국 등 선진국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비만을 21세기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국제적 전염병이라 하여 ‘globesity’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한국 역시 1970년대 이후 서구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식생활 습관 변화,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인해 과체중 및 비만 인구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비만인구는 15억명이며 이들은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질환, 암 등에 걸릴 위험이 높다.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 발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이 20년 나이를 먹는 것과 같다고 하니(Fletcher et al., 2010) 비만이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만성질환 유발 및 사망률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지출을 늘려 재정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만이 가장 심각한 미국의 경우, 총의료비 지출의 10%를 비만 관련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Finkelstein et al., 2009). 우리나라 역시 성인 비만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병의원 이용비용,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 장애 및 조기 사망률 증가 등)을 연간 3조 4천억원으로 추정(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팀)하였는데 이는 건강보험 지출액의 1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많은 국가에서 비만을 예방·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Arthur Cecil Pigou)는 가격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재화와 용역(담배, 술, 도박, 환경오염물질 등)에 대한 특별세 부과를 주장하였는데, 건강유해식품(고칼로리 저영양 식품)도 같은 맥락에서 가격인상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다. WHO(2003)는 지방, 설탕, 소금 함량이 많은 식품에 과세하여 건강식품 소비 감소를 기대하였고, 2011년 9월 UN의 만성질환 대응을 위한 정상회담(High Level Summit on Non-Communicable Diseases)에서는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체지방지수이다. 대한비만학회에서는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BMI가 23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구분한다.

건강유해식품 소비 억제를 위한 재정정책이 논의되었다. OECD(2010) 역시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가격 인상이 동 식품의 소비를 줄이고 과일, 야채 등 건강식품 섭취를 늘리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만 문제가 심각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탄산음료에 과세하고 있고, 유럽 선진국(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등)에서도 건강유해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 부과를 심각하게 고민(영국, 아일랜드 등)하고 있는 이 때, 한국에도 비만세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만에 대한 재정정책의 기대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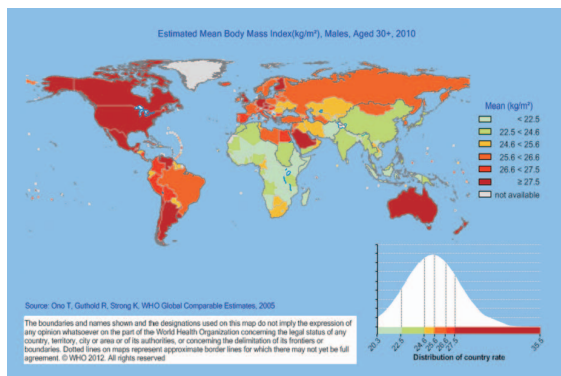
II. 비만 통계

일각에서는 한국은 아직 비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비만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 부정적이다. 따라서 먼저 한국의 비만 정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체지방지수(Body Mass Index, BMI)이다. BMI는 체중(kg)을 키의 제곱(m²)으로 나눈 값인데 BMI가 25 이상이면 과체중(overweight), 30 이상이면 비만(obese)로 분류한다. 그러나 대한비만학회에서는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BMI가 23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구분한다.

아래 지도는 각 국가의 평균 BMI를 바탕으로 6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으로 붉은 색이 짙어질수록 체지방지수가 증가한다.

[그림 1] 30세 이상 어른 남성 평균 BMI(2010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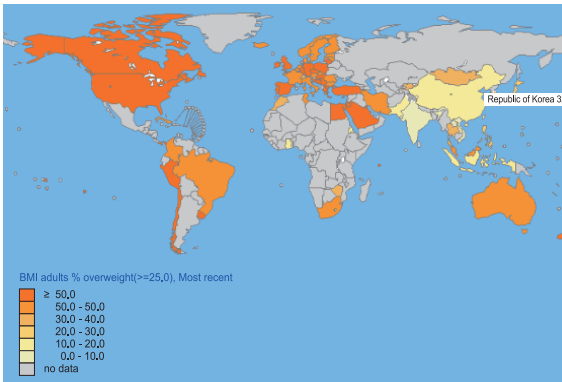


출처: WHO, Global Database on Body Mass Index

한국(남성)의 평균 BMI는 25.6으로 이미 과체중 국가군에 속한다(192개 국가 중 95위로 비만도가 높음). 북남미나 호주,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국인의 비만 정도가 낮지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도 유의해 볼 점이다.

또한 BMI가 25를 넘는, 즉 과체중(비만 포함) 성인 인구 비율은 32.1%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 즉, 한국은 BMI가 30 이상 비만인구 비율은 낮을지 모르지만 BMI가 25 이상인 과체중 인구를 포함하면 비만의 위험이 낮지 않음을 보여준다(그림 2 참조).

[그림 2] 과체중(BMI≥25) 성인 인구 비율(최근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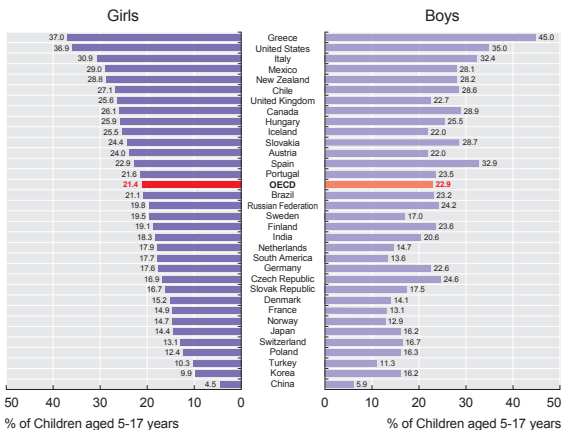
출처: WHO, Global Database on Body Mass Index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소아비만 역시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크게 낮지 않다. OECD 평균 소아비만율이 20%를 조금 넘는데, 한국은 여아의 비만율이 10%에 불과하지만 남아의 경우 비만율이 16.2%에 이른다. 소아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쉽게 발전함을 감안할 때, 현재 높은 소아비만율은 향후 성인비만율을 높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림 3] 유아·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율

(단위: %)

2.4.1 Children aged 5-17 years who are overweight (including obese), latest available estim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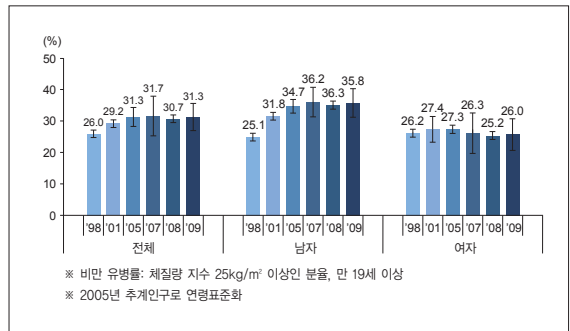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At a Glance(2011)

과체중(비만 포함) 성인인구 비율은 32.1%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 즉, 한국은 BMI가 30 이상 비만인구 비율은 낮을지 모르지만 BMI가 25 이상인 과체중인구를 포함하면 비만의 위험이 낮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내 통계인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체중 및 비만유병률은 2009년 31.3%이고 특히 남성의 비만율(35.8%)이 여성(26.0%)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과 비만율은 완전 반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비만율이 낮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림 4] 비만유병률 추이(BMI≥25)



출처: 질병관리본부, 2009 국민건강통계

국내외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의 비만율(과체중 포함)은 영미 국가들만큼은 아니지만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소득분위별 성인 비만유병률 추이

(단위: %)

소득수준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하	24.8	31.8	31.6	31.2	32.5	33.2
중하	26.7	29.1	30.5	31.1	31.4	34.5
중상	25.6	30.0	32.5	34.2	30.1	28.7
상	26.6	27.1	30.6	31.3	29.4	29.4

출처: 2009 국민건강통계

국내외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의 비만율(과체중 포함)은 영미 국가들만큼은 아니지만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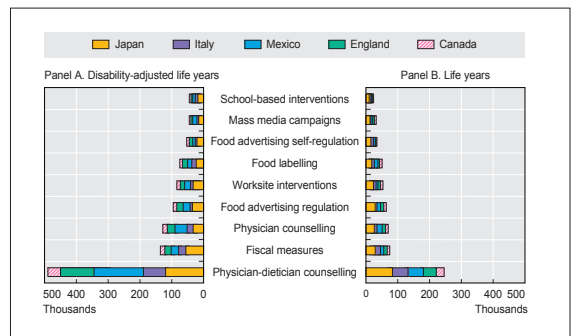
III. 비만에 대한 재정정책의 효과

비만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이 상호작용하여 체내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현상이다. 이 중 유전 및 환경적 요인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식습관과 운동 부족은 개인의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교정이 가능하다. 개인의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의사와의 상담, 학교 교육, 건강 유해식품(정크푸드) 광고

제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OECD와 WHO는 어떤 형태의 정책적 개입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지 입증하기 위해 만성질환 예방 모델(chronic disease prevention model)을 개발하였다. 동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각 정책들을 시행하였을 때 비만율을 낮추는 효과는 4~5%에 불과하지만 평균수명 및 장애조정 생존수명(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연장 효과는 상당히 높다.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영국, 캐나다 등 5개 국가를 대상으로 9가지 정책적 옵션¹⁾을 분석한 결과, 비만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의사 및 영양사와의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조정 생존수명 50만년, 평균수명 25만년 연장).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 개입은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지만 정책을 시행하는 비용도 수반한다. 만약 정책 시행 비용이 의료비 절감 효과보다 크다면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 고 볼 수 있다. 〈표 2〉에서 보면 재정정책은 인구 전체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높고 정책 수행 비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 1인당 비용이 0.03~0.13USD PPPs).

[그림 5] 예방정책들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연평균)



Source: CDP model-based analysis relying on input data from multiple sources, listed in Table A. 2 in Annex A.

출처: OECD(2010)

1) 학교교육, 대중매체를 통한 캠페인, 식품광고의 자체 규제, 식품 영양소 표시, 직장에서의 교육, 식품광고 규제, 의사와의 상담, 재정정책, 의사 및 영양사와의 상담

〈표 2〉 예방정책의 커버리지 및 비용

(단위: % USD PPPs)

		School-based interventions	Worksite interventions	Mass media campaigns	Fiscal measures	Physician counselling	Physician-dietician counselling	Food advertising regulation	Food advertising self-regulation	Food labelling	Multiple-intervention strategy
Canada	Target as % of population	2.4	15.6	78.3	100.0	12.7	12.7	21.0	21.0	100.0	100.0
	Cost/capita (USD PPPs)	1.78	5.59	1.36	0.13	9.26	19.74	0.55	0.04	1.10	24.03
England	Target as % of population	2.3	15.7	78.5	100.0	14.7	14.7	20.4	20.4	100.0	100.0
	Cost/capita (USD PPPs)	1.02	3.49	1.85	0.09	6.52	13.80	0.24	0.02	0.84	17.52
Italy	Target as % of population	1.9	8.2	82.9	100.0	10.2	10.2	16.2	16.2	100.0	100.0
	Cost/capita (USD PPPs)	1.36	2.73	1.56	0.09	6.82	14.42	0.42	0.02	0.93	18.29
Japan	Target as % of population	1.9	12.7	83.6	100.0	5.8	5.8	15.6	15.6	100.0	100.0
	Cost/capita (USD PPPs)	1.41	4.28	0.84	0.09	4.32	8.82	0.46	0.02	0.99	12.07
Mexico	Target as % of population	4.2	12.6	63.5	100.0	14.1	14.1	34.7	34.7	100.0	100.0
	Cost/capita (USD PPPs)	1.78	2.48	0.65	0.03	6.42	13.61	0.14	0.01	0.33	16.38

Note: Figure should be interpreted as follows: the intervention generates a gain of one DALY/LY for every N individuals over their lifetime. The multiple-intervention strategy is a sum of the following: food labelling; food advertising self-regulation; school-based intervention; mass media campaign; and physician-dietician counselling in primary care.

출처: OECD(2010)

[그림 6]에서는 5개 조사대상국가에서 9개 정책 시행 비용과 의료비 감소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건강개선의 효과가 가장 높았던 의사 및 영양사와의 면담 정책의 경우, 의료비 절감 효과가 가장 크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 비용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정책의 경우, 의료비 절감 효과는 둘째로 높지만 정책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비만 억제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정책은 분배적 효과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 수혜자를 소득수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재정정책을 통한 건강증진 효과가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OECD,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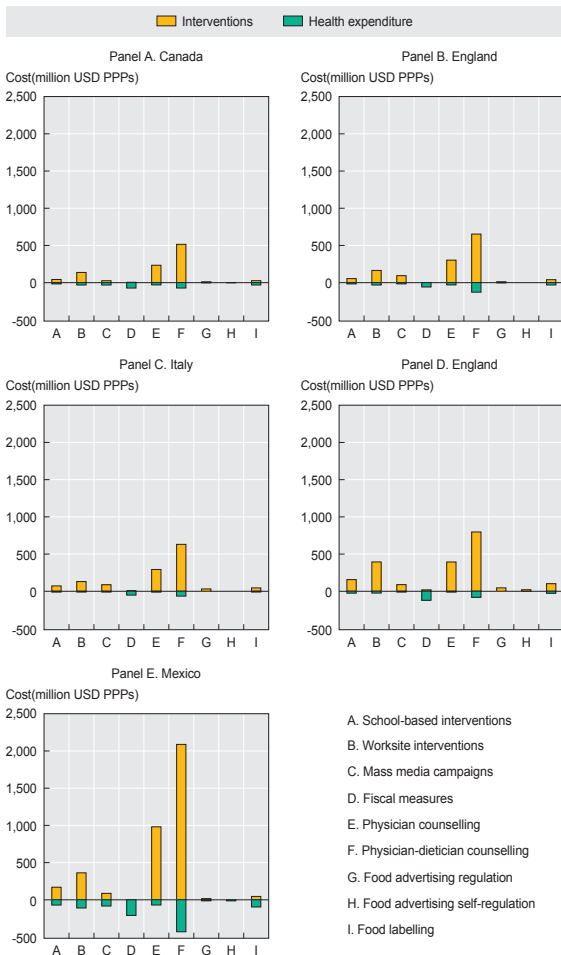
그렇다면 비만 예방·억제를 위해서 분배효과가 높고 비용효과적인 재정정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비만을 예방·억제하기 위한 재정정책으로는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과세, 그리고 웰빙음식에 대한 가격 인하(보조금 지급) 정책이 있다. 웰빙식

건강개선의 효과가 가장 높았던 의사 및 영양사와의 면담 정책의 경우, 의료비 절감 효과가 가장 크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 비용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품에 대한 가격 인하보다는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과세 정책이 보다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술·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그 식품의 소비를 줄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건강유해식품 섭취를 위해 개인이 지불하는 한계비용이 그 식품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에서 최적 수준보다 과잉 소비될 여지를 막기 위함에 있다(부정적인 외부효과의 내생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식품군의 이름을 따서 비만세(fat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 가격을 10% 인상하면 소비는 2% 감소하고, 과일과 야채 섭취로 대체하여 지방 섭취량이 0.58~0.76% 감소하는 등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그림 6] 정책비용과 의료비지출 억제 효과 비교(연평균)



Source: CDP model-based analysis relying on input data from multiple sources, listed in Table A. 2 in Annex A.
출처: OECD(2010)

tax), 탄산음료세(soft drink tax, soda tax), 감자튀김세(chip tax), 스낵세(snack tax), 설탕세(sugar tax) 등으로 명명된다.

비만세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재정정책이 건강유해 식품 소비를 실제로 감소시켰는가, 둘째는 재정정책이 체중(비만) 감소에 기여했는가, 그리고 셋째로는 재정정책이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시켰는가(만성질환 및 사망률 감소 효과)이다(Thow et al., 2010).

먼저 재정정책이 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건강유해식품의 가격을 소비자의 최고지불가격(willingness-to-pay) 이상으로 인상하였을 때 소비가 감소하였는가, 얼마나 감소하였는가 는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에 달려 있다.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가격인상은 소비를 감소시킨다(가격탄력성)0. 그러나 조사 대상국, 시기, 지역, 자료 등에 따라 가격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 감소 효과의 크기는 다르다. OECD(2010)에 따르면 영국의 Expenditure and Food Survey(2007) 데이터를 사용하였을 때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 가격을 10% 인상하면 소비는 2% 감소하고, 과일과 야채 섭취로 대체하여 지방 섭취량이 0.58~0.76% 감소하는 등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탄산음료의 경우, 가격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 기존문헌을 이용하여 Fletcher et al.(2010)은 탄산음료의 가격탄력성을 0.15~0.20으로 추정하였고, Andreyeva et al.(2010)은 비알코올성 음료의 가격탄력성이 0.27에서 0.81 사이에 있음을 보였다. OECD(2010)는 탄산음료는 다른 건강유해 식품에 비해 가격탄력성이 높아 10% 가격 인상 시 소비가 8~1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Bergtold et al.(2004)은 미국의 scanner data를 이용하여 49개 가공식품(조리식품의 재료, 냉동식품, 캔음식, 파

스타 등)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는데, 탄산음료의 가격탄력성은 기존문헌에서 발표한 수준보다도 더 높은 1.03~1.06로 나타났다. Gustavsen(2005)은 노르웨이의 가구 데이터(1989~1999)를 이용하여 탄산음료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는데 탄산음료 애호가들이 음료 가격에 더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는 탄산음료 리터당 1.55노르웨이크로네(1달러=6.27노르웨이크로네, NOK)의 세금이 생산자에게 부과되고 별도로 12%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한다. 만약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2배씩 인상하여 가격을 27.3% 인상하면, 탄산음료 소비가 많았던 소비자는 44%, 탄산음료의 소비가 비교적 적었던 소비자는 17%가 소비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일랜드의 경우 탄산음료세를 20% 인하하는 경우 탄산음료 소비가 6.8%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Bahl et al., 2003).

건강유해식품의 가격탄력성이 최소한 0보다는 크기 때문에 가격 인상(비만세)으로 소비 감소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건강유해식품 소비 감소가 실제로 비만(체지방) 감소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Powel et al.(2009)은 1997~2006년 미국의 주별 탄산음료세가 청소년의 BM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높은 탄산음료세가 BMI를 낮춘다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비만 위험이 높은 그룹에 있어서는 탄산음료세를 1%p 인상하였을 때 BMI를 미미한 수준(0.006)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음을 보였다. Fletcher et al.(2010a)은 1990~2006년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탄산음료세 부가가 개인의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탄산음료세 인상이 체중 감소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매우 작았다(1%p 세율 인상이 BMI 0.003 감소, 비만을 0.01%p 감소, 과체중 확률 0.02%p 감소). 그러나 저소득층일수록 탄산음료 세율 인상의 비만 억제 효과는 큰 것으

건강유해식품의 가격탄력성이 최소한 0보다는 크기 때문에 가격 인상(비만세)으로 소비 감소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건강유해식품 소비 감소가 실제로 비만(체지방) 감소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로 나타났다(1%p 세율 인상이 BMI 0.01 감소, 비만을 0.08%p 감소, 과체중 확률 0.10%p 감소).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1999~2006년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으로 탄산음료세 부가가 소아·청소년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가격 인상이 탄산음료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우유로 대체하기 때문에 총칼로리 섭취량에는 변화가 없고, 따라서 체중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letcher et al., 2010b). Powell et al.(2009) 역시 주별 탄산음료세의 차이가 청소년의 BMI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고, Oaks(2005)는 탄산음료에 과세하는 메인(Main)주와 과세하지 않는 인접 뉴햄프셔(New Hampshire)주의 비만율에 차이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정책이 건강(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Marshall(2000)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포화지방의 주 제공 식품(우유, 버터, 치즈 등)에 부가가치세를 현행 17.5%로 유지하고 무콜레스테롤 식품에 대해 면세하였을 때 가격이 낮은 식품으로 대체효과가 발생하여, 심장질환 발병률이 1.8~2.6% 감소(1,800~2,500명의 사망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남을 보였다. Mytton et al.(2006) 역시 영국의 포화지방 함유 식품에 대한 과세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1.2~1.7%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Cash et al.(2005)는 미국의

비만에 대한 재정정책은 건강유해식품 소비는 감소시키지만 비만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타기팅한 식품 소비 감소가 건강식품 소비로 대체되지 않거나, 건강유해식품 섭취 감소를 통한 비만감소 효과가 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일 수 있겠다.

과일과 야채 소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1% 가격 인하)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6,703명,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3,022명 예방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비만에 대한 재정정책은 건강유해식품 소비는 감소시키지만 비만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타기팅한 식품 소비 감소가 건강식품 소비로 대체되지 않거나, 건강유해식품 섭취 감소를 통한 비만감소 효과가 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일 수 있겠다. 또한 술·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유해식품(정크푸드)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것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만 억제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만세는 건강유해식품을 이미 섭취하고 있는, 즉 비만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만 억제 효과보다는 비만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유해식품 소비를 억제하여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만 있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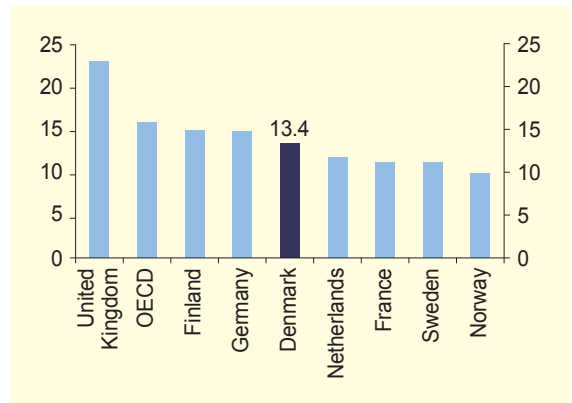
IV. 비만에 대한 재정정책 사례

비만세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만세를 실제로 도입한 국가들의 세금 부과 전후를 비교하여, 정책 도입 후 비만율이 감소하였는지 관

찰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덴마크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덴마크는 2011년 10월,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광범위한 식품군에 비만세(fat tax)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덴마크의 비만율은 OECD 평균인 15%보다 낮으며 유럽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로 OECD 평균보다도 낮은 13.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세를 도입한 이유 및 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림 7] 유럽 주요국의 비만인구 비율

(단위: 총인구 대비 %)



출처: OECD SBO Health 회의 자료(2011)

덴마크는 1922년 초콜릿과 사탕에 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하였고, 1940년대에 아이스크림과 탄산음료에까지 이를 확대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2010년 덴마크 조세 개혁에서 포화지방 2.3% 이상 함유 식품(국산 및 수입품) 전체에 대해 비만세를 도입하였다(EPHA, 2011). 덴마크의 비만세 도입은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9년 재무부에서 재정건전화 및 재정개혁을 위해 제안한 Spring Package 2.0²⁾의 일환이었다. 비만세는 국민의 건강증진(비만 예방) 및 세수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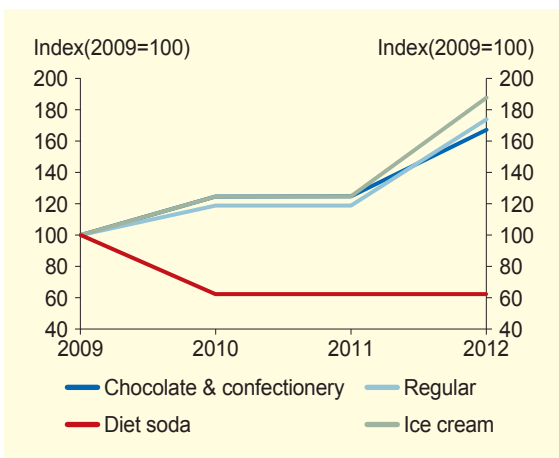
2) 동 패키지는 환경, 기후,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대를 목적으로 포화지방을 2.3% 이상 함유한 식품(고기, 낙농제품, 식용유 등)을 대상으로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한다.

예상대로 비만세 도입은 식품업계, 소비자협회, 미디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들의 주된 논거는 비만세가 실제로 소비자의 행동 변화 및 지방 섭취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따라서 재무부는 과세 수준을 40덴마크크로네/kg에서 16덴마크크로네/kg(약 2.93달러)로 대폭 인하하고 2011년 10월에야 비로소 비만세를 도입하게 되었다. 동 정책으로 인한 덴마크 식품 생산자 및 수입자의 연간 비용은 10억덴마크크로네(1억 8천만달러)로 추정된다.

덴마크는 2011년 비만세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과세하던 탄산음료 및 과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였다. 초콜릿 및 과자에 대한 세율은 kg당 4.36달러, 아이스크림은 리터당 1.17달러, 탄산음료에 대한 세율은 리터당 0.29달러이지만, 탄산음료 중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세율은 0.10달러로 낮다.

[그림 8] 덴마크 비만세 추이



출처: OECD SBO Health 회의자료(2011)

비만세 도입으로 인한 가격인상 효과는 0~35%까

덴마크는 1922년 초콜릿과 사탕에 소비세를 부과하였고, 1940년대에 아이스크림과 탄산음료에까지 확대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2010년 덴마크 조세 개혁에서 포화지방 2.3% 이상 함유 식품 전체에 대해 비만세를 도입하였다.

지 다양하다. 고기·치즈 등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군의 경우 가격 인상률이 0.7~5% 정도로 낮은 편이고, 휘핑크림과 버터·마가린 등의 가격 인상률은 1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표 3> 덴마크 비만세 부과로 인한 가격인상 효과

(단위: 덴마크크로네, %)

식품	포화지방 /100g	세전가격	세후가격	가격 인상률
쇠고기, 500g	10.0	33.30	34.14	2.5
돼지고기, 500g	12.0	19.95	20.96	5.1
닭가슴살, 500g	3.4	41.65	41.94	0.7
닭고기 1마리, 1600g	3.4	59.95	60.87	1.5
휘핑크림, 250ml	24.8	8.50	9.55	12.3
버터, 250g	51.8	15.50	17.69	14.1
마가린, 400g	18.0	6.00	7.53	25.4
올리브 오일, 1l	13.0	38.95	41.71	7.1
감자튀김, 250g	13.8	7.50	8.08	7.8

출처: The Danish Ministry of Taxation

비만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입 증대효과는 2011년 2억 5천만덴마크크로네(DKK),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억덴마크크로네이다. 그리고 이후 연간 4억 3천만덴마크크로네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탄산음료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인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억덴마크크로네의 세수증대를 전망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비만세 도입의 찬성론자들은 세수입 증대, 건강증진 효과, 그로 인한 의료비 감소 효과 등을 논거로 하였고, 반대론자들은 가격 왜곡현상(0~35%의 가격인상)·행정비용 발생·EU 내의 공정경쟁 문제·세계의 역진성 등을 논거로 하였다.

〈표 4〉 덴마크 비만세 도입의 세수증대 효과

(단위: 백만덴마크크로네)

	2010	2011	2012	2013	2010~13 합계	지속 효과
담뱃세 인상	100	200	200	200	700	200
포화지방 2.3% 이상 함유 식품에 비만세 부과	-	250	500	500	1,250	430
탄산음료 세율 인상	50	100	100	100	350	100

출처: The Danish Ministry of Taxation

덴마크의 비만세 도입이 경제 및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포화지방 함유량이 높은 음식에 대한 가격 인상은 동 식품에 대한 소비 감소로 이어져 포화지방 섭취가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덴마크 정부는 연간 2억유로의 세수입 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 및 기업의 행정비용을 감안하면 사회적 총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덴마크 비만세 도입 이후 경제·재정에 미치는 효과

	효 과
재정 효과	연간 2억유로 세수입 증가
정부의 행정비용	1회성 경비 6만 7천유로, 2011년 제도 시행 비용 6만 7천유로, 운영비용 연간 80만유로
건강 효과	포화지방 섭취가 4% 감소할 것으로 전망
기업의 행정비용	전환비용 2,150만유로, 운영비용 연간 460만유로

출처: 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35445 (USDA에서 재인용)

덴마크에서는 비만세 도입 시에도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었다. 비만세 도입의 찬성론자들은 세수입 증대, 건강증진 효과, 그로 인한 의료비 감소 효과 등을 논거로 하였고, 반대론자들은 가격 왜곡현상(0~35%의 가격인상)·행정비용 발생·EU 내의 공정경쟁 문제·세계의 역진성 등을 논거로 하였다. 그러나 덴마크는 비만세 도입 후 6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 향후 덴마크의 비만세가 실제로 비만 예방 및 세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지, 가격인상 및 세계의 역진성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V. 정책적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낮지만 비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과체중 인구 비율이 30%를 넘었고 소아비만율도 높다. 따라서 지금부터 비만을 예방·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OECD(2010)는 비만 예방 혹은 억제를 위해서는 비만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차 의료서비스(의사 상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나 개개인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므로 재정정책이 비용을 가장 적게 수반하는 차선책(second best option)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식품에 대한 비만세 부과는 담배 혹은 술과는 달리 논란의 여지가 크다. 첫째, 담배나 술은 과세 대상이 명확한 데 비해 비만세는 어떤 음식 혹은 성분에 과세할 것인지 과세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한국음식 중 어떤 음식 혹은 성분이 비만을 유발하는지 규명해야 하는데 서양과는 달리 한국은 지방보다는 염분으로 인한 비만 위험이 높은 점이 있다. 그렇다면 염분을 과도하게 함유한 식품을 규제해야 할 터인데 한국음식은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과세 기준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더불어 과세의 형태(개별소비세로 할 것인지, 종량세 혹은 증가세) 및 세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비만세 도입 시 세제의 역진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저소득층은 식품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높고, 특히 값싼 건강 유해식품의 소비가 높기 때문에 비만 억제를 목적으로 식품 가격을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식품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크다면 세금 부과 시 건강유해식품 소비 저해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소득층이 건강유해식품 감소를 통해 미래 의료비를 감소할 수 있다면, 그리고 비만세 수입을 건강음식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교육을 위해 쓴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의 역진성은 많이 낮아질 것이다(Allemano & Carreno, 2011).

셋째, 비만세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이다. 비만의 원인은 음식에 한정되지 않고 생활양식, 운동 여부, 유전,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앞서 문헌조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비만 확률을 높인다고 알려진 식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도 대체식품의 영양 등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격 인상이 비만을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강력하게 입증되지 않은 바이다. 또한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높지 않다면 식품가격 상승 시 정크푸드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건강식품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비만세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우리나라에도 비만세를 도입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앞서 한국인의 비만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만약 비만세를 부과한다면,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비 지출을 줄이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OECD, 2010).

전 세계적으로 비만세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우리나라에도 비만세를 도입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앞서 한국인의 비만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고 운동 부족이 그 원인이라면 식품에 대한 비만세 부과는 비만 감소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한국인 비만의 원인이 건강유해식품 섭취에 있다면, 그 식품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영양성분 표지제, 공익광고나 학교 및 가정에서의 교육 등)의 효과성과 비용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만약 비만세를 부과한다면,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유해식품 세수입을 비만 예방 및 억제를 위해 사용(비가격 정책과 병행)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배가될 것이다. 

〈참고문헌〉

- Alemanno, Alberto and Itnacio Carreno, "Fat Taxes in the EU between Fiscal Austerity and the Fight Against Obesity,"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2011.
- Andreyeva T, Long MW, Brownell KD, "The Impact of Food Prices on Consumption:

- 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on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Food,”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100, no. 2, 2010, pp. 216~222
- Bahl et al., “The Uneasy Case Against Discriminatory Excise Taxation: Soft Drink Taxes in Ireland,” *Public Finance Review*, vol. 31, no. 5, 2003, pp. 510~533
- Bergtold et al., “The FAST Method: Estimating Unconditional Demand Elasticities for Processed Foods in the Presence of Fixed Effect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vol. 29, no. 2, 2004, pp. 276~295
- Cash, Sean B., David L. Sunding, and David Zliberman, “Fat Taxes and Thin Subsidies: Prices, Diet, and Health Outcomes,” *Food Economics*, vol. 2, 2005, pp. 164~174
- EPHA(European Public Health Alliance), “Fiscal Measures applied to Food Policy,” EPHA Brief Paper, 2011.
- Finkelstein, Eric A., Justin G. Trogdon, Joel W. Cohen, William Dietz, “Annual Medical Spending Attributable to Obesity: Payer- and Service-Specific Estimates,” *Health Affairs*, vol. 28, no. 5, Sep/Oct 2009, w822~831.
- Fletcher Jason, David Frisvold, and Nathan Tefft, “Can Soft Drink Taxes Reduce Population Weight?,”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vol. 28, no. 1, 2010a.
- _____, “The Effects of Soft Drink Taxes on Child and Adolescent Consumption and Weight Outcom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94, no. 11~12, 2010b
- Gusta, Geir, “Public Policies and the Demand for Carbonated Soft Drinks: A Censored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Presentation at EAAE (Europe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Economists), Copenhagen, 2005.
- Marshall, Tom, “Exploring a Fiscal Food Policy: the case of diet and ischaemic heart disease, *BMJ*, vol. 320, no. 7230, 2000, pp. 301~305
- Mytton O, Gray A, Rayner M, Rutter H, “Could Targeted Food Taxes Improve Health?”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 61, 2007.
- OECD, *Obesity and the Economics of Prevention: Fit Not Fat*, 2010.
- Oaks, Brion, “An Evaluation of the Snack Tax on the Obesity rate of Maine,” Master Thesis, Texas State University, 2005.
- Powel et al., “Association Between State-Level Soda Taxes and Adolescent Body Mass Index,”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09.
- Schroeter, Christiane, Jayson Lusk, and Wallace Tyner. “Determining the Impact of Food Price and Income Changes on Body Weight” *Journal of Health Economics*, vol. 27, 2008, pp. 45~68
- Thow et al., “The Effect of Fiscal Policy on Diet, Obesity, and Chronic Disease: a Systematic Review,” *Bulleti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vol. 88, 2010, pp. 609~614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EU
- OECD
- 호주
- IMF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이탈리아
- 아일랜드
- 일본
- 포르투갈
- 스페인
- 영국
- 캐나다

* 이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과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EU

- 5월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담 개최
 -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위한 역내 재정위기 해결방안 모색에 동의
 -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상호 이해관계만 재확인하는 데 그침
 - 재정 긴축은 경제성장을 저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장과 동반해나가야 함
 - (경제성장 촉진) EU 재정정책 확대와 함께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춤
 - (재정위기 탈출) 유로채권 도입에 따른 유동성 문제 해결 및 성장과 긴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주장에 주요국들의 의견차를 보임

- 스페인 구제금융 결정(2012. 6. 9.)¹⁾
 - 유로그룹은 성명을 통해 스페인의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구제금융을 발표함
 - (규모) 예상 자본요구액에 추가 마진을 더해 최대 1천억유로를 지원할 예정
 - (지원 조건) 추가적인 긴축 없이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원함
 - (자금 조달)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스페인 은행구조조정기금(FROB; Fund for Orderly Bank Restructuring)을 통해 지원함

- 구조개혁, 재정건전화를 지속하여 스페인이 점차 투자자와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밝힘

〈표 1〉 유로존의 구제금융 요약

(단위: 억유로)

	시 기	금 액	주요 배경
스페인	2012. 6.	최대 1,000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신용위기, 경기침체 등이 대규모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이어져 주요 은행의 부실 초래
그리스	2010. 5./ 2012. 3.	1,100/ 1,300	과다한 공공부문 지출을 위한 대출, 탈세 등 만성적 문제와 동반된 금융위기로 채무 증가
포르투갈	2011. 5.	780	방만한 정부 지출 및 취약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채무 증가
아일랜드	2010. 11.	850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로 인한 은행 부실과 경기 침체

출처: BBC 보도, 2012. 6. 9. (<http://www.bbc.co.uk/news/business-18382659>)

OECD

- OECD는 2012년 OECD 각료이사회(MCM)를 개최하여 「사무총장 전략문서」, 「각료성명서」,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2012. 5. 23~24)
 - OECD 「사무총장 전략문서」²⁾ 발표
 - 사무총장은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NEAC) 방향' 인 수평적 프로젝트를 제안³⁾

1) "Eurogroup statement on Spain," Council of the EU, 2012. 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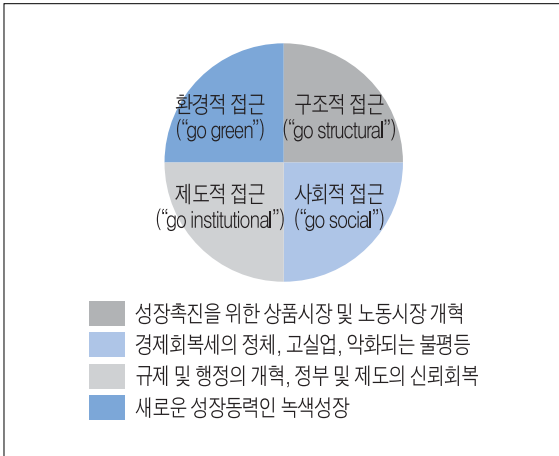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ofin/130778.pdf)

"Statement by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José Manuel Barroso and Vice-President Olli Rehn on Spain," European Commission, 2012.6.9.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MEMO/12/436&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2) 사무총장은 매년 각료이사회에 OECD의 한해 정책방향을 담은 '전략 오리엔테이션(strategic orientation)' 제출

3) OECD는 새로운 접근에서 성장, 불평등, 환경 등이 상호 영향을 어떻게 미치며, 상호간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정책적 접근 방향 제시

[그림 1] 상호 연계된 4가지 정책의 균형 접근



- 「2012년 OECD 각료성명서」⁴⁾ 주요내용
 - (포용적 성장⁵⁾· 고용창출) 효율적인 구조개혁, 지속가능한 재정·사회정책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 고용창출이 관건
 -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세계발전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트너국가와 협력 유지
 - (개발전략) OECD 개발전략에 따라 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지식공유 확대, 정책 일관성 확립
 - (효율성·투명성·효과성) OECD의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 증진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데이터 개방 및 모범운영사례 구현 노력을 장려

- 『세계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⁶⁾ 주요 내용
 - (세계경제) 여전히 침체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나, 유로지역의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하방리스크가 다소 완화
 - (주요국 경제) 미국, 일본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유로지역은 완만한 경기침체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일본은 최근 몇 달간 견고한 고용 증가, 소비지출 호전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 회복
 - 유로지역은 국가채무 위기로 인한 신뢰 약화, 금융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
 - 신흥국들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

4) 각료이사회* 폐회식 때 각료들이 채택하는 문서로서 2012년 각료이사회 전반적인 논의 내용을 포함

* OECD 각료이사회는 34개 회원국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OECD 내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로, 「세계경제전망(Economic outlook)」과 「사무총장 전략문서, 「각료성명서」 등을 발표

5)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 사회 불균형 해소를 통한 조화로운 사회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뜻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6) 『세계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은 매년 2회(5월, 11월) 발표되고 있음. 추후 구체적인 요약보고서를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에 게시 예정



〈표 2〉 실업률(Unemployment rate)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5년평균
한국	3.6	3.7	3.4	3.5	3.5	3.5
일본	5.1	5.1	4.6	4.5	4.4	4.7
호주	5.6	5.2	5.1	5.4	5.7	5.4
독일	7.4	6.8	5.7	5.4	5.2	6.1
캐나다	8.3	8.0	7.5	6.9	6.6	7.5
영국	7.6	7.9	8.1	8.6	9.0	8.2
미국	9.3	9.6	8.9	8.1	7.6	8.7
이탈리아	7.8	8.4	8.4	9.4	9.9	8.8
프랑스	9.1	9.4	9.3	9.8	10.0	9.5
포르투갈	9.5	10.8	12.8	15.4	16.2	12.9
아일랜드	11.8	13.6	14.5	14.5	14.4	13.8
그리스	9.5	12.5	17.6	21.2	21.6	16.5
스페인	18.0	20.1	21.6	24.5	25.3	21.9

〈표 4〉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5년평균
한국	-1.1	1.3	1.8	2.3	2.8	1.4
독일	-3.2	-4.3	-1.0	-0.9	-0.6	-2.0
호주	-4.5	-4.7	-3.9	-2.2	0.4	-3.0
이탈리아	-5.4	-4.5	-3.8	-1.7	-0.6	-3.2
캐나다	-4.9	-5.6	-4.5	-3.5	-2.4	-4.2
프랑스	-7.6	-7.1	-5.2	-4.5	-3.0	-6.1
포르투갈	-10.2	-9.8	-4.2	-4.6	-3.5	-6.5
스페인	-11.2	-9.3	-8.5	-5.4	-3.3	-7.5
영국	-11.0	-10.3	-8.4	-7.7	-6.6	-8.8
일본	-8.8	-8.4	-9.5	-9.9	-10.1	-9.3
미국	-11.6	-10.7	-9.7	-8.3	-6.5	-9.4
그리스	-15.6	-10.5	-9.2	-7.4	-4.9	-9.5
아일랜드	-14.0	-31.2	-13.0	-8.4	-7.6	-14.8

〈표 3〉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상승률 평균
그리스	1.3	4.7	3.1	0.8	-0.5	-2.3
한국	2.8	2.9	4	3	3	4.1
영국	2.2	3.3	4.5	2.6	1.9	4.3
호주	1.8	2.9	3.4	1.8	2.8	21.7
일본	-1.4	-0.7	-0.3	-0.2	-0.2	35.1
이탈리아	0.8	1.6	2.9	3.3	2.3	41.2
아일랜드	-1.7	-1.6	1.2	2	1.2	51.9
포르투갈	-0.9	1.4	3.6	3.1	0.7	80.3
캐나다	0.3	1.8	2.9	2.3	2.2	134.0
독일	0.2	1.2	2.5	2.3	2	146.8
미국	-0.3	1.6	3.1	2.3	1.9	171.0
스페인	-0.2	2	3.1	1.6	2.1	284.5
프랑스	0.1	1.7	2.3	2.4	1.8	403.7

〈표 5〉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5년평균
호주	19.4	23.5	26.6	28.7	27.8	25.2
한국	33.5	34.6	34.7	34.5	33.9	34.2
스페인	62.9	67.1	75.3	87.9	90.9	76.8
캐나다	82.4	84.0	83.8	84.5	81.4	83.2
독일	77.4	86.8	87.2	88.5	87.8	85.5
영국	72.4	81.9	97.9	104.2	108.2	92.9
프랑스	91.2	95.8	100.1	105.5	107.3	100.0
미국	89.7	98.3	102.7	108.6	111.2	102.1
아일랜드	71.1	98.4	114.1	121.6	126.9	106.4
포르투갈	92.9	103.2	117.6	124.3	130.1	113.6
이탈리아	127.7	126.5	119.7	122.7	122.1	123.7
그리스	134.0	149.6	170.0	168.0	173.1	158.9
일본	188.8	192.7	205.5	214.1	222.6	204.7

■ OECD 경기선행지수(Composite Leading Indicators) 발표(2012. 6. 11)

- OECD 회원국 개별 국가별로 전월의 평가와 비교하여 보면, 일본 · 미국이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하게 나타내는 반면 유로지역의 회복세는 점진적이고 기복이 심할 것임을 시사
-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경기선행지수는 장기추세선을 하회하는 둔화세를 지속하는 반면 독일 및 영국 등 여타 유로국가들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음

〈표 6〉 경기선행종합지수 추이

(장기추세치=100^{*)})

Month	2011.12	2012.1	2	3	4	전월비 (p)	전년동월비 (p)	경기전망
OECD 전체	100.2	100.3	100.4	100.4	100.5	0.1	-0.4	경기회복세
G7개국 ²⁾	100.3	100.4	100.5	100.6	100.6	0.0	-0.4	
유로지역	99.7	99.7	99.7	99.7	99.6	-0.1	-1.7	잠재적 터닝 포인트
아시아5개국 ³⁾	99.7	99.6	99.6	99.5	99.3	-0.2	-1.2	
미국	100.6	100.9	101.1	101.2	101.2	0.0	0.4	경기회복세
일본	100.6	100.7	100.9	101	101	0.0	0.4	
스페인	100.8	100.7	100.7	100.7	100.6	-0.1	0.3	
아일랜드	100.6	101	101.3	101.5	101.8	0.3	1.4	
호주	99.7	99.6	99.6	-	-	-	-	잠재적 터닝 포인트
캐나다	99.7	99.7	99.8	99.8	99.9	0.1	-0.8	
영국	99.4	99.4	99.6	99.7	99.8	0.1	-1.6	
독일	99.3	99.3	99.4	99.4	99.4	0.0	-2.7	
한국	99.3	99.4	99.7	99.9	100.1	0.2	-0.1	경기부진 및 경기침체
프랑스	99.9	99.7	99.7	99.6	99.6	0.0	-1.3	
그리스	98.5	98.5	98.5	98.5	98.5	0.0	-0.7	
이탈리아	99.8	99.6	99.4	99.2	99.1	-0.1	-2.5	
포르투갈	98.3	98	97.8	97.6	97.4	-0.2	-4.4	

주: 1) OECD는 CLIs의 움직임에 따라 경기순환국면을 4단계로 구분하는데, ① CLIs가 100을 상회하고 상승하는 경우 확장(expansion), ② CLIs가 100을 상회하고 하락하는 경우 후퇴 · 하강(downturn), ③ CLIs가 100을 하회하고 하락하는 경우 수축 · 침체(slowdown), ④ CLIs가 100을 하회하고 상승하는 경우 회복(recovery) 등으로 평가

2)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3)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및 한국 포함

출처: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EI_CLJ>

- 지난 5월 발표된 『OECD Economic Outlook』 국가별 전망을 토대로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의 경제 · 재정 전망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음

〈표 7〉 OECD (비)국가의 경제전망

경기 호조 및 견고한 성장세 국가	경기호전 중, 경기회복 모멘텀 회복 국가	경기둔화 국가	경기침체국면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세아니아: 호주 • 남아메리카: 칠레 • 아시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 유럽: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폴란드,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 아시아: 일본, 한국 • 중동: 이스라엘 • 남아메리카: 브라질 •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 유럽: 독일, 영국, 아일랜드, 체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 터키 • 남아메리카: 멕시코 • 유럽: 프랑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핀란드, 슬로베니아, 덴마크,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출처: 『세계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 2012. 5.

〈표 8〉 OECD (비)국가의 재정전망

균형재정 달성 국가	2013년에 GDP 대비 3% 이내 달성 국가	2014년에 GDP 대비 3% 이내 달성 국가	2015년 이후 GDP 대비 3% 이내 달성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메리카: 칠레 • 아시아: 한국, 중국 • 유럽: 에스토니아, 멕시코,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러시아, 핀란드(2013), 아이슬란드(2014), 룩셈부르크(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아메리카: 캐나다 • 오세아니아: 호주 (2012)¹⁾, 뉴질랜드 • 아시아: 인도네시아 (2009)²⁾ • 남아메리카: 브라질 • 유럽: 오스트리아 (2011), 독일(2011), 이탈리아(2012), 벨기에(2012), 체코(2012), 헝가리(2012), 폴란드(2012), 터키(2012), 프랑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포르투갈,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아메리카: 미국 • 아시아: 일본, 인도 • 중동: 이스라엘 • 유럽: 아일랜드, 그리스, 영국 •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 1)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전망

2) 최근 5년간 GDP 대비 재정수지가 2% 이상으로 올라간 적 없음

출처: 『세계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 2012. 5.



- ‘2012년 IMF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정책 자문결과」 발표(“Statement at the Conclusion of the 2012 Article IV Consultation Mission to Korea,” 2012. 6. 12)
 - (대외) 2012년도 후반기에 한국은 수출 및 EU와 US의 FTA 체결의 영향으로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유럽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방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리 높은 편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변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봄
 - (대내) 시설투자 등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인상 등을 통한 소비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재정정책) 한국의 「2013 균형재정계획」(사회보장성 기금 제외)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
 - 한국의 저소득층 복지 개선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지출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 사회적 지출은 여전히 증가 수요가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통화정책) 현재의 기준금리(3.25%)는 세계경제 악화를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
 - 경기가 상향조정될 시, 2013년도 전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언급



호주

- 노인요양제도(Aged care) 개혁안 발표(2012. 4. 20)
 - 길라드 총리는 2014년 7월 1일부터 노인복지 수혜 신규 진입자에 대해 자산조사(means testing)를 적용할 것이라 밝힘
 - 정부는 스스로 노인 복지를 추구할 여력이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개혁안을 마련하였으며, 복지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⁷⁾
- 최저임금 주당 606.40호주달러로 인상(2012. 6. 1)⁸⁾
 - 호주공정근로(Fair Work Australia)⁹⁾가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해 올 7월 1일부터 저임금 근로자들은 주당 최소 17.10달러의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예정
 - 이는 2011년 인상 이후 2.9%의 상승이며, 이번 임금 결정으로 136만명의 규정임금(award wages)을 받는 호주인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됨

〈표 9〉 2012년 임금 변화

(단위: 호주달러)

	2011	2012
주급 기준	589.30	606.40
시급 기준	15.51	15.96

출처: <<http://www.fairwork.gov.au>>

7) 호주의 노인요양은 자택요양(home care)과 거주요양(residential care)으로 나뉘며
 - 자택요양의 경우 연소득 4만 3천호주달러 이하의 개인은 연간 최대 5천호주달러, 연소득 4만 3천호주달러 이상의 개인은 연최대 1만호주달러의 혜택이 주어짐

8) 호주 재무부, 2012. 6.

9) Fair Work Australia는 전국 노사관계 재판소로서 최저임금보장, 기업매매, 노동쟁의, 분쟁해결, 고용종결, 기타 노사관계 시안을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 독립된 조직임

프랑스

- 2012년 1분기 예산집행결과 발표
 - 프랑스 재무부가 발표한 2012년 1분기 예산집행결과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294억유로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재정수지인 -336억유로보다도 개선된 수치
 - 정부가 민간에 4G 관련 무선주파수를 할당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며, 지출 속도는 2012년 예산안의 예상수치와 비슷함

〈표 10〉 2012년 1/4분기 프랑스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2010	2011	1/4분기 집행결과		
			2010	2011	2012
총수입	274,888	275,226	61,560	65,212	68,155
총지출	425,691	365,328	86,161	82,309	87,196
재정수지 (일반회계)	-150,803	-90,092	-24,601	-17,097	-19,041
재정수지 (특별회계)	2,000	-626	-4,276	-16,498	-10,370
총재정수지	-148,803	-90,718	-28,877	-33,595	-29,411

자료: 프랑스 재무부(Minist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 각료들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30% 삭감
 - 올랑드(Hollande)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각료회의(Conseils des Ministres)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 각료들의 임금을 30% 삭감하기로 의결. 각료들의 임금 삭감은 올랑드(Hollande)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음

- 다음번에 발표될 2012년 수정예산안에 위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며, 임금삭감은 2012년 5월 15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

독일

- 독일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 개최(2012. 5. 24)¹⁰⁾
 - 독일은 연방재무장관(Schäuble) 주재로 베를린에서 다섯 번째 안정화위원회를 개최
 - 동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의 신규 부채가 명확히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안정화 프로그램 과정을 유지해야 함을 재차 확인
 - 4개 주정부(the states of Berlin, Bremen, Saarland and Schleswig-Holstein)는 각 주정부들의 재정회복을 위한 재건 프로그램(rehabilitation programme)¹¹⁾ 이행상태를 보고하였으며, 연간 신규 부채의 감소와 예산의 균형을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둠

그리스

- 그리스 통계청(ELSTAT)은 2000~2011년도 정부 부채 추이를 발표¹²⁾ (그림 참고)
 - 2011년도 정부 부채는 약 3,556억유로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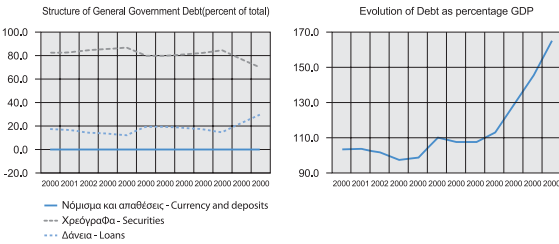
10) 자료: Pressemitteilung zur 5. Sitzung des Stabilitätsrates am 24. Mai 2012, 독일 안정화위원회 홈페이지, <www.stabilitaetsrat.de/DE/>

11) 2011년 12월 1일 개최된 제4차 안정화위원회 당시 재정 위기에 직면한 베를린 등 4개 주정부는 각 주정부 재정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채택함(2012~2016년)

12) 「The Greek Economy」, Hellenic Statistical Authority, 2012. 5. 29.



[그림 2] 그리스 정부 부채 추이 [그림 3] GDP 대비 부채 비율



<표 11> 그리스 실업률 추이(2007~2012)

(단위: 명, %)

3월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취업자	4,472,573	4,548,611	4,505,399	4,440,403	4,186,039	3,843,905
실업자	423,368	388,549	444,619	573,812	780,375	1,075,081
비경제활동인구	3,426,680	3,399,629	3,360,679	3,296,226	3,333,393	3,372,144
실업률	8.6	7.9	9.0	11.4	15.7	21.9

출처: 그리스 통계청(ELSTAT)

- 재무부는 그리스 4대은행이 헬레닉금융안정기금(HFSF: Hellenic Financial Stability Fund)으로부터 180억유로를 지원받았다고 발표¹³⁾ (5/28)
 -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공급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적절한 자본 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지원금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단기채권 형태로 제공한 자금의 일부에 해당
- 그리스 통계청은 2012년도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하였다고 발표¹⁴⁾
- 그리스 통계청은 2012년 실업률이 21.9%¹⁵⁾임을 발표(3월 기준)¹⁶⁾
 - 이는 지난해 실업률인 15.7%보다 높아진 수치
 - 2012년도 실업자 수는 107만 5천명, 취업자는 384만 3천명(<표 11> 참고)

이탈리아

- 정부지출 효율화를 위한 각 부처 장관급위원회 구성(2012. 5. 28)¹⁷⁾
 - 6월 12일까지 모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지자체의 지출을 검토하고 조정할 것임
 - 시민 및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정부지출의 비효율과 낭비에 관한 13만여 건의 지적사항들을 반영할 것이며, 42억유로 규모의 지출감소 예상
- IMF, 이탈리아 경제 연례평가를 발표(2012. 5. 16)¹⁸⁾
 - 이탈리아의 긴축정책 및 경제구조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권고
 -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하고 내년부터 흑자재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개혁, 연금개혁, 탈세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EU의 금융지원이 필요함을 지적

13) Press Release, Ministry of Finance, 2012. 5. 28

14) Quarterly National Accounts, 그리스 통계청, 2012. 6. 8.

15)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실업률(seasonally adjusted unemployment rate)

16) Labour Force Survey, 그리스 통계청, 2012. 6. 7.

17) 이탈리아 정부 홈페이지, <<http://www.palazzochigi.it/Presidente/Comunicati/dettaglio.asp?d=68205>>

18) IMF 홈페이지, <<http://www.imf.org/external/np/ms/2012/051612.htm>>

〈표 12〉 2011~2012년까지 아일랜드의 5가지 주요 재정목표

주요목표		결과 (Outcomes)	단기전략 (Short term strategies to meet our goals)	성과측정 (Performance measures)
목표 1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원활한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 • 국제경쟁력 및 고용과 생산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분야 지원 • 국내외 연구 및 정책 주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와 GNP 성장 수준 • 고용수준(Levels of employment) • EU 경쟁력, 생산성 지표 • 가계부채 수준 • 외부 기관 평가 보고서
목표 2	건전한 공공 재정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자 감소 • EU에서 요구하는 GDP 대비 정부 부채 감소 비율 일치 • 지속 가능한 효율적 세제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재무 건전성 감시 기능 구축 • 예산안 평가 기능 강화 • 지속적인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자(Deficit ratios) • 부채수준(Debt ratio levels) • 조세수입(Tax yields)
목표 3	국민 생활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조세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정책 •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재정서비스 정책 마련 • 디지털 격차 해소 • 국내외 경쟁력 증진을 위한 조세정책 • 국민의 과도한 부채 문제 상당수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수준(Per capita income) • 국제 생활수준 비교 (International surveys of standards of living) • 소득분배수준 (Distribution of income) • 고용수준
목표 4	EU/IMF 구제 금융 프로그램 목표의 조속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까지 부채 시장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긴축재정정책 • 변경 상황에 대한 EU/IMF와의 지속적인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자(Deficit ratios) • 부채수준(Debt ratio levels)
목표 5	철저한 금융규제를 통한 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감독·통제 •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 • 금융 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시장 규제 및 감독 • 효율적인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금융시장 통제 유지를 위해 중앙은행 및 전체 금융기관 규제 강화 • 개인 부채 상환능력 지원 • 은행에 대한 국가 투자 가치 극대화 • 재정 관리 정책과 법률상 구조(frameworks)를 EU 재정정책구조/framework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와 기업의 신용등급 수준 • 아일랜드 금융 서비스 분야 투자 수준 •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 지원 수준 • 금융부문 투자 회복, 국제 신용등급 회복 지수

출처: 재무부(<http://www.finance.gov.ie>) 2011~2014 재정정책 전략보고서(Department of Finance Statement of Strategy)

아일랜드

- 아일랜드 재무부, 「2011~2014 재정정책전략보고서 (Department of Finance Statement of Strategy)」¹⁹⁾ 발표(2012. 5. 10)
 - 2011~2014년까지 5가지 주요 목표(〈표 12〉 참조)

일본

- FY2010 「국가재무서류」²⁰⁾발표(2012. 5. 28.)
 - FY2010 국가자산은 625.1조엔으로 전년보다 21.9조엔 감소하였고, 국가부채는 1,042.9조엔으로 전년보다 23.3조엔 증가
 -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417.8조엔으로 전년(△372.5조엔) 대비 차액이 증가

19) 재무부는 아일랜드의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국민 생활수준 개선 등의 전략적 목표를 갖고 올바른 재정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선언문 형식의 전략보고서를 발표
 20) 「국가재무서류」는 국가 재정상황 등에 관한 설명 책임 이행 향상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적정화에 이바지하는 재무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회계 사고방식 및 방법을 활용하여 작성



〈표 13〉 국가재무서류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전회계연도 (2010.3.31)	본회계연도 (2011.3.31)		전회계연도 (2010.3.31)	본회계연도 (2011.3.31)
〈자 산〉			〈부 채〉		
현금 및 예금	18,800,017	15,747,299	미지급금	8,954,453	9,437,991
유가증권	91,728,876	89,266,186	지급준비금	418,491	461,389
재고자산	2,876,979	2,553,650	미지급비용	1,406,525	1,396,177
미수금	8,174,846	7,705,642	보관금 등	600,844	569,339
미수수익	1,103,536	944,251	전수금	150,029	131,869
미수(재)보험료	4,808,887	5,020,661	전수수익	4,737	4,336
대부금	154,981,010	147,996,553	미경과(재)보험료	85,614	82,516
운용기탁금	121,401,135	115,606,939	상여준비금	292,927	283,778
기타 채권 등	2,709,410	2,570,436	정부단기증권	96,755,303	90,669,554
유형고정자산	184,502,361	182,686,464	공채	720,552,429	758,697,718
무형고정자산	259,864	248,340	차입금	21,933,727	23,092,376
출자금	58,238,864	57,443,767	예탁금	8,783,128	6,096,790
			책임준비금	9,904,181	9,729,855
			공적연금예탁금	130,434,429	123,868,838
			퇴직급부준비금	12,138,192	11,286,563
			기타 채무 등	7,146,654	7,094,409
			부채 합계	1,019,561,672	1,042,903,507
			자산 · 부채차액	△372,538,183	△417,770,173
자산 합계	647,023,489	625,133,334	부채 및 자산 · 부채차액 합계	647,023,489	625,13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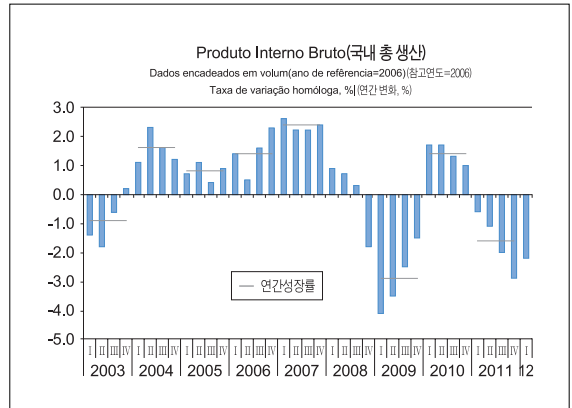
포르투갈

■ 2012년 1/4분기 포르투갈 국내총생산(GDP) 및 실업률 발표(2012. 5. 15)²¹⁾

- 포르투갈의 2012년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14.9%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21) 포르투갈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tística, INE), <http://www.ine.pt/xportal/xmain?xpid=INE&xpgid=ine_destaquas&DESTAQUESpaginumber=3>
 22) "Statement by the EC, ECB, and IMF on the Fourth Review Mission to Portugal", IMF, Press Release 2012,6,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2/pr12203.htm>>

〈그림 4〉 포르투갈 국내총생산(GDP) 연간 성장 (2003~2012)



자료: 포르투갈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tística, INE), "Produto Interno Bruto diminuiu 2,2% em volume no 1º trimestre de 2012-1 Trimestre de 2012"

〈표 14〉 포르투갈 실업자 및 비활성 인구의 주요 지표

(단위: %)

	포르투갈 분기별 실업률 (Valores trimestrais)		
	2011 1/4	2011 4/4	2012 1/4
실업률(Taxa de desemprego)	12.4	14.0	14.9
남자(Homens)	12.0	12.0	14.8
여자(Mulheres)	12.8	14.1	15.1
청소년(15세~24세)(Jovens anos)	27.8	35.4	36.2
장기 실업의 비율(Taxa de desemprego de longa duração)	6.6	7.4	7.6

자료: 포르투갈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tística, INE), "Taxa de desemprego Trimestre de 2012"

- 「트로이카(IMF, EC, ECB), 포르투갈 4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평가 결과 발표(2012. 6. 4.)²²⁾

- ‘제4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평가 결과 트로이카는 노동 및 에너지 분야의 법과 제도의 변경을 요청
 - (총평)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분기별 평가는 긍정적임
 - (노동시장) 노동법 규정이 너무 엄격하고, 과도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및 노동시장 부흥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 (에너지 분야) 납세자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부문의 시설 사용료를 낮추어야 한다고 밝힘

- 포르투갈 의회 ‘Impulso Jovem(Youth Pulse) Programme에 3.44억유로 지원 승인(2012. 6. 6.)²³⁾
 - ‘Impulso Jovem’ Programme에 총 3.44억유로를 투입하여 청년 실업자 8만 9천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지원 내용) 장기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게는 TSU(Single Social Tax)를 90%, 최대 1인당 175유로까지 18개월간 감세 혜택을 줌

스페인²⁴⁾

- 스페인 재무부는 2012년 GDP 대비 1.5%의 지방정부 재정적자 목표달성을 위해 16개 자치지역(Comunidades Autónomas)과 총 183억유로 규모의 긴축계획에 합의(2012. 5. 17)
 - 이 중 지출감축이 약 131억유로, 세입확대가 약 53억유로 규모임

- 16개 자치지역 각각의 경제 및 재정 구조조정 계획(Financial and Economic Rebalancing Plans: PEF)이 합의되었으며, 아스투리아스 지역은 합의에 실패
 - 아스투리아스 지역은 향후 15일 이내에 새로운 PEF를 개발하여야 하며, 6월 1~2주에 개최되는 회의(Finance and Fiscal Policy Council)에서 평가 받게 됨

- 2011년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의 GDP 대비 재정적자 0.4%p 상향 수정(2012. 5. 18)
 - 자치지역의 2011년 재정 재집계 결과, 재정적자가 0.4%p 증가하여 2011년 공공부문 재정적자는 GDP의 8.9%로 수정
 - 자치지역 중 마드리드, 발렌시아, 안달루시아, 까스티야 이 레온 지역의 적자 변동에 기인
 - 스페인 정부는 자치지역에 대한 공급자 지원(supplier payments mechanism) 시행과정에서 각 지역의 재정 투명성이 강화된 결과라고 Eurostat에 해명
 - 3월 잠정치에는 지방정부의 과거 회계연도에 발생된 지출 미지급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2012년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지방정부(Los ayuntamientos)와 자치지역의 채무조정을 위해 스페인 정부는 약 5.9% 이율로 300억~350억유로의 신디케이트 자금 조성 추진(2012. 5. 16)
 - 국가용자기관(Instituto de Crédito Oficial)을 비롯

23) “Impulso Jovem, Plano Estratégico de Iniciativas à Empregabilidade Jovem e de Apoio às PME,” 포르투갈 의회(Governo de Portugal), 2012. 6.

24) 스페인 재무부 보도자료

(<http://www.minhap.gob.es/en-GB/Prensa/Paginas/NotasPrensaHome.aspx>)

(<http://www.minhap.gob.es/en-GB/Prensa/Paginas/Noticiaseningles.aspx>)(영문)



하여 스페인 주요 은행 등 총 26개 기관(entidades)이 300억유로의 자금조달을 확정

- 300억유로 중 국가용자기관이 약 23.3%, 4개 은행(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Banco Santander, Bankia, Caixabank)이 각 10.2%를 조달

• 지방정부는 5월 31일부터, 자치지역은 6월 30일부터 채무상환 개시

■ 스페인 재무부, EU 통합기금(Cohesion Funds)에서 2012년 10억유로를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2012. 5. 21)

•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통합기금에서 프로젝트 지원이 연기되어 장기간의 법적 논란 발생

• 몬토로(Cristóbal Montoro) 재무장관은 EU 지역정책 집행위원(Johannes Hahn)과 협상에서 각 프로젝트의 평가방법에 합의

- 재무부는 이번 합의결과에 따라 스페인이 10억유로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

■ 내각회의(Council of Ministers), 예비비(Contingency Fund) 약 3억유로를 스페인 군사활동 비용으로 승인(2012. 5. 25)

■ EFSF/ESM을 통해 1천억유로의 은행 구제금융 확정(2012. 6. 11)²⁵⁾

• 6월 9일(토) 스페인 정부는 EU에 은행 구제금융을 요

청하고 유로국가들이 1천억유로 규모의 은행 구제금융 투입을 확정

• 스페인 정부는 기존의 건축 및 구조개혁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을 재확인



영국

■ 영국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은 2012년 3월 21일 「2012회계연도 예산안(Budget for 2012~13)」을 의회에 제출

• 예산안은 영국의 경제정책 목표인 산업과 성장의 장려 및 투자의 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세제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2012년 3월 29일에는 「2012 재정법(Finance Bill 2012)」을 의회에 제출

• 2012 재정법에는 2012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세제조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세제조치는 향후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될 예정

■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2 재정법에 포함된 주요 세제조치로는 법인세율의 인하, 은행세율 인상,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면세점(threshold) 인상 등이 있음

1. 법인세 분야

■ 현행 26%인 법인세 기본세율²⁶⁾이 2012년 4월부터 24%로 인하되고, 2013년 4월에는 23%, 2014년 4월

25) 스페인 정부 홈페이지, <<http://www.lamoncloa.gob.es/IDIOMAS/9/Gobierno/News/index.htm>>

26) 기본세율은 과세소득이 £1,500,000 이상인 경우 적용됨. 과세소득이 £300,000 이하인 경우에는 소규모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과세소득이 £300,000~£1,500,000 사이인 경우 특정 계산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증가된 세율이 적용됨

에는 22%로 추가 인하될 예정

- 과거 예산안에 따르면 영국은 2014년 4월까지 법인세율을 23%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기업의 성장과 투자촉진을 위해 세율을 1%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
- 법인세율이 예정대로 인하될 경우, 영국은 G-7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자 G-20 국가 중 법인세율이 네 번째로 낮은 국가에 해당

- 2012년 1월 1일부터 단기부채(short-term chargeable liabilities)에 적용되는 은행세가 인상될 예정
 - 영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은행의 단기부채 및 장기부채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하기 시작
 - 2012년 1월 1일부터 단기부채에 적용되는 은행세율이 0.075%에서 0.088%로 인상될 예정이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0.105%가 적용될 예정

〈참고〉 G7 및 G20 국가의 2011년 기준 법인세율

(단위: %)

구 분	국 가	세 율
G7	미국	35
	캐나다	16.5 ¹⁾
	영국	26
	독일	15.825 ²⁾
	프랑스	34.4
	이탈리아	27.5
	일본	30
G20	유럽연합	N/A
	터키	20
	남아프리카공화국	28
	사우디아라비아	20
	멕시코	30
	브라질	25
	아르헨티나	35
	호주	30
	러시아	20
	대한민국	22
	중국	25
	인도네시아	25
	인도	30

주: 1) 10~16%의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됨

2) 14~17%의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됨

출처: OECD Statistics 및 IBFD

- 지정된 기업지구(Enterprise Zone) 내 공장 또는 설비시설에 투자하는 상사기업(trading company)에 대해 첫해 연도에 한해 100%의 자산공제(capital allowance)가 허용될 예정
 -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은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나, 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그 지출비용의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할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자산공제라 함



2. 개인소득세 분야

- 2013년 4월부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5%로 인하될 예정
 - 영국은 2011년 4월부터 1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신설한 바 있음
 - 50% 최고세율 신설 이후 최고세율의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의 해외유출이 발생한다는 우려와 반발이 지속되어 왔음
 - 영국은 2011~2012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신고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4월부터 최고세율을 50%에서 45%로 인하하기로 결정
- 2013년 4월부터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42.5%에서 37.5%로 인하될 예정
 -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0%, 32.5%, 42.5%의 세율로 누진과세됨
 - 0~35,000파운드: 10%
 - 35,001~150,000파운드: 32.5%
 - 150,001파운드 이상: 42.5%
- 2012년 4월부터 40%의 높은 세율(higher rate)이 적용되는 과세소득 구간의 하한이 낮아지고, 65세 이하 납세자의 기본소득공제가 인상될 예정
 - 현재 영국은 3만 5천파운드 초과 15만파운드 미만의 과세소득 구간에 대해 40%의 높은세율(higher rate)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과세소득 구간의 하한이 2012년 4월부터 3만 4,370파운드로 인하될 예정
 - 또한 65세 이하 납세자의 기본소득공제가 현행 7,475파운드에서 8,105파운드로 인상될 예정
- 2012년 4월부터 영국 거주자 중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non-UK domiciled individual 또는 non-dom)'가 송금주의 과세제도(remittance basis taxation)를 선택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이 연 5만파운드로 인상될 예정


-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는 선택에 의해 영국 내로 송금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될 수 있으며, 이를 송금주의 과세제도(remittance basis taxation)라 함
-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로서 ① 최근 14년 중 12년 이상을 영국에서 체류한 자 또는 ② 최근 9년 중 7년 이상을 영국에서 체류한 자만이 선택에 의해 송금주의 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가 송금주의 과세제도를 선택할 경우, 연 3만파운드의 비용(remittance basis charge, RBC)을 부담해야 함
- 2012년 4월 2일부터 RBC가 연 3만파운드에서 5만파운드로 인상
- 2012년 4월부터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non-dom)가 영국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특정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영국 내로 송금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

3. 간접세 분야

- 2012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등록(registration) 및 등록취소(deregistration) 기준금액이 인상될 예정
 - 사업자등록 기준금액(registration threshold): 7만 3천파운드 → 7만 7천파운드
 - 등록취소 기준금액(deregistration threshold): 7만 1천파운드 → 7만 5천파운드

- EU 역내 국가로부터의 취득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금액: 7만 3천파운드 → 7만 7천파운드
- 2012년 3월 21일부터 2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고가주택(high-value residential properties)의 취득에 대해 토지인지세(stamp duty land tax, SDLT)가 인상 또는 신설
 - 개인이 2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던 SDLT 세율이 5%에서 7%로 인상될 예정
 - 자연인이 아닌 자(non-natural persons)가 2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15%의 SDLT가 새롭게 부과될 예정
-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연간 5만 8,200파운드 이상의 소득자 2,400여 명이 오프-페이롤(off payroll) 방식으로 고용되고 있다고 밝힘
 - 부처에서 고용중개기관, 용역회사 등을 통해 임금을 지불하며 대부분 일당으로 지급
 - 높은 소득세율을 피해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
- 재무부는 이에 대한 강화된 규율을 제시
 - 6개월 이상 오프-페이롤 고용 계약을 지속할 수 없으며 특히 대부분의 고위직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고용
 -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 제재를 가하는 등 모니터링 강화

4. 기타

- 2012 재정법이 통과할 경우, 영국이 지난 2011년에 스위스와 체결한 조세협약(tax agreement)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예정
 - 영국과 스위스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스위스 은행 무기명 계좌(undeclared account)에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세협약을 2011년 10월 6일에 체결한 바 있음²⁸⁾
 - 공공부문의 오프-페이롤(off payroll) 고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함(2012. 5. 23.)²⁹⁾
 - 재무부는 검토 보고서(Review of the tax arrangements of public sector appointees)에서
- 

캐나다

 - 재무부가 2012년 3월 29일 발표한 2012년 예산안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장기적 번영을 목표로 기존의 감세정책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09년부터 시행되었던 기존 Canada's Economic Action Plan(CEAP)을 유지할 계획
 - 작년도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에 의한 지출규모는 750억캐나다달러였으며,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낭비적 요소 없이 예산이 지출될 계획
 - 2012년 예산안에서는 CEAP를 통해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공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개발하는 데

28) 자세한 내용은 「주요국의 조세동향 11-22호」(2011. 11)를 참고하기 바람

29) 영국 재무부 보도자료, 2012. 5. 23.

http://www.hm-treasury.gov.uk/press_35_12.htm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기업경영에 있어 혁신적, 창조적 일자리 창출
 - 자원개발을 책임감 있게 수행
 - 사업의 번창을 위한 자유롭고 열린 교역환경 마련
 - 연구 및 교육훈련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원주민의 완전한 경제적 참여 유도
 - 신속하고 유연한 경제적 이주정책 건립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과 퇴직 후의 안정성 보장
 - 세계적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함
- 정부는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기적으로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부채규모를 줄이려는 계획
-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정부부채수준을 370억캐나다달러까지 낮춘 바 있고 현재까지 낮은 순부채 규모를 유지
 - 정부의 재정적자 수준은 계속해서 감소할 예정이며 2015~2016연도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표 15〉 CEAP 실행 이후의 정부 재정수지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33.4	-24.9	-21.1	-10.2	-1.3	3.4	7.8

자료: Budget 2012, <<http://www.budget.gc.ca/2012/rd-dc/brief-bref-eng.html>>

1. 개인소득세 개정안

- 배당세액공제(Dividend Tax Credit, DTC) 적용을 위한 배당유형 지정신고(Designation) 규정을 개선
- 배당세액공제³⁰⁾는 고율 배당세액공제(Enhanced DTC)와 표준 배당세액공제(Regular DTC)로 나누어지며³¹⁾, 이는 배당의 소득원천에 따라 결정
 - 일반세율 적용 소득재원(General Rate Income Pool)으로부터의 배당³²⁾에는 고율 배당세액공제가 적용
 - 저세율 적용 소득재원(Low Rate Income Pool)으로부터의 배당에는 표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
- 예산안에서는 법인의 배당금 지급 시, 총 배당금 중 고율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금 비율을 임의로 지정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음
 - 예전에는 보다 정확한 구분을 요구하였으며 과도한 고율 배당세액공제 대상 신고분에 대하여 20%의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배당소득 구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줌
- 또한 예산안에서는 고율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 배당금 지정신고에 대해 지연신고도 가능하도록 허용
 - 예전에는 신고기한 내에 지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배당의 원천이 일반세율 적용 소득재원으로 부터의 배당이라 하더라도 표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예산안에서는 지연신고하더라도 실질에 맞게 인정해 줌

30) 법인의 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동 소득이 개인에게 배당으로 지급될 때 주주단계에서도 과세되는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31) Enhanced DTC와 Regular DTC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배당세액공제 금액의 크기를 결정함. 즉, 배당세액공제 금액은 배당소득에 가산(imputation)되지만, 동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 납세자 입장에서는 Enhanced DTC가 보다 유리함

32) 이 때의 배당을 특히 Eligible Dividend라 함

- 임계점³³⁾을 넘는 의료비용 지출액의 15%를 공제해주는 의료비 세액공제(Medical Expense Tax Credit) 대상에 혈액응고 방지를 위한 혈액응고 감시장치 기기(Blood Coagulation Monitors) 구입비를 포함
- 등록장애인에 대한 저축 계획(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s, RDSP)제도³⁴⁾에 대한 개정을 제안함
 - 계약능력이 불확실해질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해 그 장애인의 특정 가족 구성원이 RDSP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함
 - RDSP로부터 인출이 일어날 때 비례적으로 상환이 일어나도록 개정
 - RDS 인출금의 상환과 하한을 정하는 규정을 변경
 - 등록교육 저축계획(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기금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을 비과세(혹은 과세이연)가 적용되는 RDSP 기금으로의 전입을 가능하게 하였음
- 도관주식(Flow-through Share)에 대한 광물투자세액공제(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를 1년 더 연장하여 2013년 3월 31일 이전 계약분까지 가능하게 함
 - 도관주식 출자를 통한 투자자들의 캐나다 광물 개발 활동은 관련 비용을 그들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해 줌
 - 또한 도관주식에 투자한 개인에게는 캐나다 소재 특
- 정 광물의 탐사개발 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15%의 광물개발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집단 질병 및 사고 보험계획(Group Sickness or Accident Insurance Plans)에 대하여, 그 분담금은 고용주가 납부하여야 하며, 단 분담금이 근로자의 임금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
- 퇴직보상계약(Retirement Compensation Arrangements)³⁵⁾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을 변경함
 - 현행 퇴직보상계약은 퇴직연금계획(Registered Pension Plan)하에 허용된 연금 혜택 한도수준을 초과하여 고소득 근로자에게의 연금 지원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퇴직보상계약의 비정상적인 처리에 따른 이익 발생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
 - 또한 퇴직보상계약에 속한 자산의 가치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보상계약 관련 조세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 근로자 이익공유 계획(Employees Profit Sharing Plans, EPSP)³⁶⁾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과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규정을 마련
 - EPSP는 회사 구성원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수단으로서도 사용되지만, 한편으로는 사업경영자에게 있어 자신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이용되기도 함

33) 납세자 순소득의 3%와 2,109캐나다달러 중 작은 금액

34) RDSP는 장애인 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적용 대상 장애인을 수혜자로 하는 기금 제도임

35) 소득세법하의, 고용주가 지원하고 있는 퇴직저축제도의 한 유형임

36) 일종의 신탁계약으로서 동 신탁에 대한 고용주의 분담금은 세금목적상 비용 공제가 가능하며, 신탁관리인은 매년 고용주의 모든 분담금 및 신탁으로부터의 이익 등을 수혜자에게 분배하여야 함



- 예산안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분담금의 유인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이익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특별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규정을 제안
- 여기서 '과도한 이익'이란, 신탁관리인이 특정 근로자에게 당해 근로자가 그 해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분배한 금액을 의미

■ 캐나다 총독(Governor General of Canada)에 대한 급여 비과세 규정을 폐지

■ 생명보험계약의 저축계정(Savings Component of a Life Insurance Policy)에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될 수 있는데, 예산안에서는 비과세 테스트에 관한 세부 변경사항을 제안

■ 노령층 생활안정지원(Old Age Security, OAS)과 소득보조(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것을 제안

- 이러한 변경사항은 2023년 4월에 시작하여 2029년 1월에는 전면 시행될 것임
-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
- 더 높은 금액의 혜택을 얻기 위해 OAS 적용을 차후로 미루는 선택권 부여
- 공동등록연금계획(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과 관련된 퇴직소득제도 지원 계획
- 공무원 및 국회의원의 연금 계획에 대한 유지가능성, 공정성, 재무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 캐나다 거주자가 일정 조건을 갖추어 해외에 취업하는 경우, 10만캐나다달러를 한도로 하여 해외취업세액공제(Overseas Employment Tax Credit)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동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

- 2013년부터 향후 4년 동안 단계적 폐지를 제안

2. 법인소득세 개정안

■ 클린에너지(Clean Energy)의 발생 및 보존설비에 대하여는 가속(50%)의 자본비용공제(Capital Cost Allowance)가 적용되는데,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비투자를 그 대상에 포함시킴

- 폐기물연료의 열에너지 설비
- 주로 폐기물연료의 열에너지 설비에 의해 발생한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에너지공급 시스템 장비
- 전기나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생산된 설비의 잔여물을 사용하는 장비

■ 캐나다에 소재한 특정 광물자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광비용에 대해 법인에 있어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바, 2012년 예산안에서는 동 세액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제시

- 세액공제율은 2012년까지는 10%, 2013년에는 5%이며, 2014년 이후에는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대서양 지방 및 Gaspé 반도 인근 지방에서 주로 농림어업, 광업, 유전 및 가스산업, 제조 및 가공업 등에 사용하는 신규 건물, 기계설비 등의 적격자산 취득에 대해 10%의 세액공제(Atlantic Investment Tax Credit)가 적용되는 바,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음

- 유전 및 가스산업, 광업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폐지
- 투자 적격자산의 범위에 전기발생설비, 클린에너지

발전설비도 포함시킴

■ 연구 개발 활동 (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과 관련한 조세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부 수정

-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세액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
- 연구개발 비용공제 및 투자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 성격의 비용(Expenditures of a Capital Nature)을 제외
- 연구개발활동에 배부되는 간접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간편대용법(Simplified Proxy Method)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킴
 - 현행 65%를 2012년에는 60%, 2013년 이후에는 55%로 축소
-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비용기준 산정 시 정상적인 연구개발 계약으로부터의 이익요소를 제외

■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 88³⁷⁾ 규정과 Sec 100³⁸⁾ 규정을 우회하여 적용받기 위하여 파트너십 (Partnership) 구조가 사용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마련

- 파트너십 지분의 발생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Sec 8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이러한 규정은 소득형자산(Income Asset)이 파트너십에 의해 직접 소유되거나, 다른 파트너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 적용

- 소득세법 Sec 100상의 과세가능 파트너십 지분의 거래 상대방의 범위에 비과세실체(Tax-Exempt Person)뿐만 아니라 비거주자(Non-Resident Person)도 포함시킴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 조정에 따른 처분 성격과 사후관리를 명확히 함

- 비거주자와 비정상가격(Non Arm's Length Price)으로 거래한 캐나다 내국법인은, 그 비거주자가 캐나다 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초과지급한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 목적상 배당으로 처분
- 캐나다 내국법인에게 배당처분이 일어났을 경우, 해당 비거주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조정금액 상당액을 캐나다 내국법인에게 돌려주어야 함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의 일부 규정을 완전성과 공정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개정

- 부채-자본 비율을 2:1에서 1.5:1로 변경
- 캐나다 거주법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파트너십의 부채에 대하여도 과소자본세제 규정을 적용
- 과소자본세제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자비용을 원천징수 목적상 배당으로 취급
- 캐나다 거주법인이 그가 지배하는 국외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특정 상황에서 이중과세를 방지

■ 소득세법상의 침식기준 규정(Base Erosion Rules)³⁹⁾

37) 캐나다의 내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와의 수직합병이나 자회사의 청산을 통하여 자회사의 특정 고정자산(Capital Asset)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여 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임

38) 파트너십이 소유한 소득형자산(Income Asset)은 납세자에 의해 파트너십 지분이 비과세실체(Tax-Exempt Person)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만 완전 과세가 가능하다는 내용임

39)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캐나다 납세자의 과세소득이 축소될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임



의 내용을 일부 개정

- 캐나다 은행의 영업상 해외 계열사의 초과 유동성을 이용하는 경우 캐나다 은행의 세부담을 덜어줌
- 은행의 영업과정에서 독립된 고객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특정 유가증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침식 기준 규정이 부적절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함

3. 기타 주요 개정안

-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및 종합매출세(Harmonized Sales Tax, HST)의 내용을 일부 개정
 - 발전하는 의료서비스 산업 상황을 반영하여 의료보건의료, 약제 및 의료기기에 대한 GST/HST의 적용 규정을 정비
 - 기존에는 의사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였으나, 약사의 진단 서비스 등의 전문가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기로 함
 - 안과 의사에 의한 처방뿐만 아니라, 지방법률에 의해 자격을 갖춘 안경사의 처방에 따른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
 - 혈액응고 감시기기 및 협심증 치료제(Isosorbide-5-mononitrate)에 대해서도 영세율 항목에 추가함
 - 자선단체 및 적극적인 비영리 문학단체가 기증을 위해 구입하는 도서관련 GST/HST에 대해 환급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시
 - 현행은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GST/HST의 환급이 불가능하나 언어능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한 것임
 - 소규모 사업자 및 소규모 공공서비스기관이 납부할

GST/HST의 금액 계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간편회계(Streamlined Accounting)⁴⁰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임계점을 두 배로 늘려 보다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함

- 연간 과세소득 기준을 20만캐나다달러에서 40만캐나다달러로 상향 조정

- 적절한 외국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정 외국 자선단체의 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변경
 - 현행은 외국 자선단체가 기부금 적격단체임을 캐나다에 등록하여야 함
 -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외국 자선단체에 대하여 캐나다 국세청이 심사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만 적격 기부단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
 - 재난 구조나 긴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조 활동
 - 캐나다의 국가적 이해를 위한 활동
- 정치적 활동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선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규정을 마련
 - 정치적 활동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
 - 국세청에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이행준수 감시를 보다 강화
- 조세감면혜택(Tax Shelter)에 대하여 세무 기획자(Promoter)에 의한 등록과 보고의무를 강화
 - 규정되지 않은 절세수단을 동원하여 증여세 혜택을 얻게 한 세무기획자에 대해 가산세 적용 시 그 계산 방법을 변경
 - 현행은 500캐나다달러와 조세감면혜택과 관련하여

40) 이 제도하에서 납세자는 과세소득에 특정한 납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됨

여 세무 기획자가 수령한 대가의 25% 중 큰 금액이 나, 개정안에서는 이전 규정하의 금액과 증여된 재산가액의 25%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을 제시하여 징계를 보다 강화

-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조세감면혜택 등록에 대한 정보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세무기획자에 대하여 새로운 가산세 제도를 도입
 - 현행은 미신고에 대하여 100캐나다달러와 신고지연일수에 25캐나다달러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규정⁴¹⁾만을 두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추가로 국세청의 요구에 의한 특정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로부터 조세감면혜택과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누락 신고한 경우에 세무기획자가 수령한 대가의 25%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

Accord)에 따라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활성화에 2억 250만캐나다 달러

4. 추경안 편성

- FY2012-13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A) 23억캐나다달러 규모 편성(2012. 05. 17.)⁴²⁾
 - 추경안(A)는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을 본 세출예산안(Main Estimates) 의결지출의 2.3%인 21억캐나다달러 편성
 - FY2012-13 각 부처 · 관청별 퇴직금 지급 8억 5천 만캐나다달러
 - 의회 의사당(Parliament Hill) 건물 및 주변환경 개선에 2억 4천만캐나다달러
 -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협정(Copenhagen

41) 단, 2,50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함

42) FY2012-13 추경안(A)는 FY2012-13 본세출예산안(Main Estimates)이 Budget 2012보다 먼저 상정됨에 따라 Budget 2012에서 계획하였으나 본세출예산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출들로 구성(캐나다 정부 보도자료, <<http://news.gc.ca/web/article-eng.do?nid=674869>>)



| 정책 흐름 |

-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 2012년 IMD 세계경쟁력 평가 순위 22위
-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국회 제출
-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 한-EU FTA 발효 이후, 한-EU간 해외투자 동향 및 시사점
-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 dBrain과 각 부처 시스템을 Network로 연계 -

* 본 자료는 2012년 6월 7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에서 발표한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개요)** 정부는 6. 7.(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2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 국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의결함

* '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11. 9. 30. 국회 제출)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

- 동 계획은 각 부처·기관에 분산 구축되어 있는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을 하나의 Network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임

- **(현황)** 현재 국유재산 관련 정보는 10여 개 유관 부처·기관의 20여 개 개별시스템으로 분산 구축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업무 담당자가 부동산 등기 정보, 지적(地籍) 정보 등 국유재산 관련 각종 공부(公簿)의 확인을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 국유재산 실태 조사시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또한 일원화된 시스템의 부재로 국민이 국유재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원거리의 국유재산 관리 기관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애로가 있음

-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계획)** 국유재산의 기본 사

항을 단순하게 수록·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기능을 추가·확장하여 고도화한 후 유관기관의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임

- 특히 항공사진 자료를 연계하여 국유재산에 특화된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유재산 대부·매각·개발 등의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가칭)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국유재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국유재산 사용자·대부계약 연장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임
- 유관기관에 구축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DB 중복을 지양하고, dBrain 운영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운영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게 됨

- **(소요 기간)** 을 하반기부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3년에 걸쳐 완료할 예정임

* ISP(정보화 전략 계획) 결과에 따르면 150억원 내외 소요 추산

- **(기대 효과)**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유재산 부문에 있어서도 전자정부의 구현이 가능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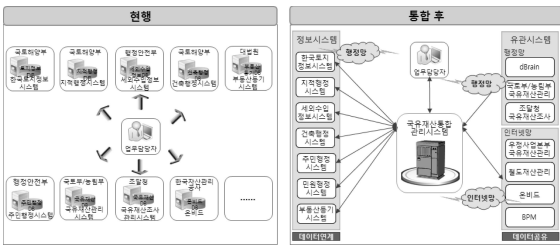
- 법정부적 국유재산 GIS 도입에 따라 현장 업무 인력이 최소화되어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 국유재산 포털을 통해 국민의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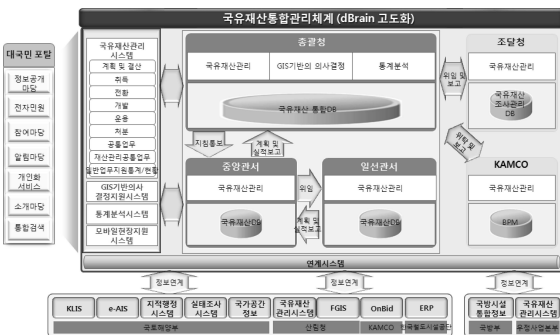
참고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개념도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중심으로 각종 양 관서 등 유관기관의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 및 DB를 연계하여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변화



통합관리 시스템 개념도



2012년 IMD 세계경쟁력 평가 순위 22위

* 본 자료는 2012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 경쟁력전략과에서 발표한 「2012년 IMD 세계경쟁력 평가 순위 22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MD의 2012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및 분석

요약

- 스위스 IMD의 '12년 국제경쟁력 평가*(총 59개국)에서 우리나라는 전년과 같은 22위를 유지해 '08년 이후 상승한 경쟁력 수준 유지
 - * ('07)29위 → ('08)31위 → ('09)27위 → ('10)23위 → ('11)22위 → ('12)22위
- IMD는 한국이 유럽 재정위기 등 경제위기에도 순위를 유지함을 높이 평가
 -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19위 → 23위), 일본(26위 → 27위), 대만(6위 → 7위) 등은 모두 전년도에 비해 순위가 하락
 - * 주요 국가별로는 홍콩이 1위를 차지하였고, 미국 2위, 스위스 3위, 중국 23위, 일본 27위 기록
-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 중 스페인(35위 → 39위), 그리스(56위 → 58위) 등의 순위가 하락한 반면, 아일랜드(24위 → 20위), 이탈리아(42위 → 40위) 등의 순위는 소폭 상승
- IMD는 '세계화', '경제·사회개혁 필요성' 항목을 중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는 세계화(10위), 경제·사회개혁 필요성(9위)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음

- 분야별 평가의 경우, 기업효율성이 개선(26위 → 25위)된 반면 경제성과(25위 → 27위)와 정부효율성(22위 → 25위)이 다소 하락

* 인프라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20위 → 20위)을 유지

- 329개의 세부항목 중
 - 우리나라는 장기실업률(1위 → 1위), 고등교육수학률(2위 → 2위) 등 26개 항목이 59개국 중 5위 이내의 상위권에 포함
 - 반면, 이민법의 외국인 고용계약(56위 → 58위), 노사관계 생산성(53위 → 53위) 등 25개 항목이 50위 이하의 하위권이어서 개선 시급

- IMD 평가 결과가 우리나라에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분석하여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보고

I. IMD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 ① IMD의 2012년 세계경쟁력 평가(총 59개국)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도와 동일한 22위를 기록

- G20 국가 중 순위로는 전년도보다 한단계 상승*한 6위

* 전년도 대비 4단계 하락한 중국(19위 → 23위)은 G20 국가

중 7위로 하락

	06	07	08	09	10	11	12
- 국가경쟁력 순위	32	29	31	27	23	22	22
*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순위	11	10	11	10	8	8	6
*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중 순위	14	12	13	11	9	9	8
* G20 국가 중 순위				8	7	7	6

* 97년(30위) → 99년(41위) → 01년(29위) → 03년(32위)

- 홍콩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하였고, 공동 1위였던 미국이 2위, 5위였던 스위스가 3위를 기록
- 노르웨이(13위 → 8위)의 순위가 상승하여 10위권에 진입했고, UAE(28위 → 16위)도 순위 상승으로 20위권에 진입
- 11개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홍콩(1위 → 1위)과 말레이시아(16위 → 14위)를 제외한 국가들의 순위가 하락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경쟁국 경쟁력 순위

한국	미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독일	중국	영국	일본
22(22)	2(1)	1(1)	4(3)	7(6)	9(10)	23(19)	18(20)	27(26)

* ()안은 전년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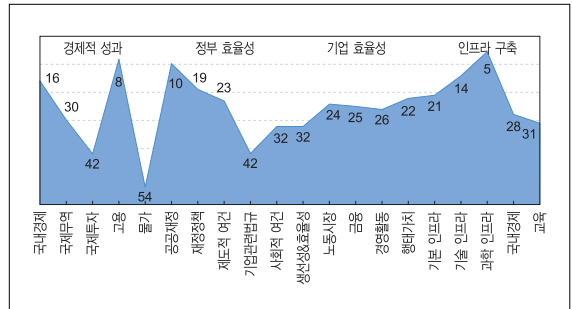
- ② 4대 평가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이 개선(26 → 25위)된 반면 경제성과(25위 → 27위)와 정부효율성(22위 → 25위)이 다소 하락

	06	07	08	09	10	11	12
1. 경제성과	36	49	47	45	21	25	27
2. 정부효율성	41	31	37	36	26	22	25
3. 기업효율성	38	38	36	29	27	26	25
4. 인프라구축	22	19	21	20	20	20	20

- ③ 중간부문(20개)별로는 국내경제(16위), 고용(8위), 공공재정(10위), 기술인프라(14위), 과학인프라 분야(5위)가 우수

- 반면에 국제투자(42위), 물가(54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2위), 생산성·효율성(32위) 분야는 취약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형도



- ③ IMD는 '세계화', '경제·사회개혁 필요성' 항목을 중점 분석

- 우리나라는 세계화에 대한 태도(10위), 경제·사회개혁 필요성에 대한 태도(9위) 모두 높은 수준으로 평가
- 세계화에 대한 태도는 아일랜드, 칠레, 아시아 국가 등이 긍정적이나 그리스, 러시아, 프랑스 등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
-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홍콩, 말레이시아, 카타르, 스위스 등에서 긍정적이나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

주요 국가 순위

	아일랜드	홍콩	카타르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	프랑스	한국
세계화	1	5	27	24	43	52	59	10
경제사회개혁	1	5	6	7	53	56	59	9

II.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점·약점 요인 분석

경제성과 (25 → 27위 : 2 ↓)

- **(변동요인)** 국제투자 분야(53위 → 42위)는 개선되었으나 국제무역 분야의 악화(16위 → 30위) 등이 주요 하락 요인

* 기타 부문: 국내경제(12위 → 16위), 고용(6위 → 8위), 물가(52 → 54위)

- **(강점/약점)** 청년실업률이 13위로 양호하게 평가되고 경제 다변화 정도, 상품수출액 등은 강점요인이나,
 - 해외 직접투자 유입액, R&D 시설 재배치 위험 등 국제투자 분야와 교역조건 지수 등 국제무역 부문이 약점요인으로 평가

중간분야	강 점(세부항목)	순위	중간분야	약 점(세부항목)	순위
고용	장기실업률	1	국제 투자	직접투자 유입액/GDP	55
	실업률	6		R&D시설 재배치위험(설문)	52
	청년 실업률	13		주식 직접투자 유입액/GDP	53
국내경제	경제 다변화 정도(설문)	3	국제무역	교역조건 지수	53
국제무역	상품 수출액	7	국내경제	생계비 지수	50

정부효율성 (22 → 25위 : 3 ↓)

- **(변동요인)** 공공재정**(16위 → 10위), 사회적 여건(38위 → 32위) 등이 개선되었으나, 재정정책**(11위 → 19위) 등이 주요 하락 요인

* 기타 부문: 제도적 여건(23위 → 23위), 기업 관련법규(44위 → 42위)

** 공공재정: 재정흑자/적자, 정부부채 등/ 재정정책: 조세수입, 사회보장 부담 등

- **(강점/약점)** 정부보조금, 사회응집력 등은 강점,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 관세 장벽 등은 약점으로 작용

중간분야	강 점(세부항목)	순위	중간분야	약 점(세부항목)	순위
기업 관련 법규	정부보조금/GDP	3	기업 관련 법규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저해 정도(설문)	58
사회적 여건	사회응집력(설문)	4		관세 장벽	54
공공재정	재정수지/GDP	5		해고 비용	50
제도적 여건	외환보유고	7	사회적 여건	정치적 불안정(설문)	52
	단기 실질이자율	8		노령화(설문)	52

기업효율성 (26 → 25위 : 1 ↑)

- **(변동요인)** 노동시장(34위 → 24위) 등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생산성·효율성(26위 → 32위), 행태 가치(18위 → 22위)는 하락 요인

* 기타 부문: 금융(28위 → 25위), 경영활동 부문(29위 → 26위)

- **(강점/약점)** 고객만족도 강조, 인재유치·직원 교육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 연평균 근로시간 등은 강점이나,
 - 이사회외 경영감시 기능, 노사관계 생산성, 중소기업의 국제표준 효과성 등은 약점으로 작용

중간분야	강 점(세부항목)	순위	중간분야	약 점(세부항목)	순위
노동시장	인재 유치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설문)	1	경영 활동	이사회외 경영감시 기능(설문)	56
	연간 평균 근로시간	2	생산성	중소기업 효과성(설문)	51
	종업원의 직업훈련(설문)	6	노동 시장	노사관계 생산성(설문)	53
경영활동	고객 만족도 강조 여부(설문)	1		고위 간부의 경쟁력(설문)	49
생산성	기업 생산성(설문)	8	노동 시장	두뇌유출로 인한 제약 정도(설문)	49

인프라구축 (20 → 20위 : -)

- **(변동요인)** 기본인프라(19위 → 21위), 교육인프라(29위 → 31위) 부문이 하락하였고 기타 부문은 작년과 유사

* 기타 부문: 기술인프라(14위 → 14위), 과학인프라(5위 → 5위), 보건 및 환경(28위 → 28위)

- **(강점/약점)** 기업의 R&D 지출, 고등교육 이수율,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 등이 강점이나,
 - 초·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경영학 교육 적합성 등이 약점으로 작용

중간분야	강 점(세부항목)	순위	중간분야	약 점(세부항목)	순위
과학	기업의 R&D 투자 /GDP	2	교육	중등교사 1인당 학생 수	53
	총 R&D 투자/GDP	3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	50
건강 및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설문)	2		경영학 교육 적합성(설문)	43
교육	고등교육 이수율	2	기술	인터넷 대역폭 속도	42
기술	연결성(통신, IT)(설문)	4		숙련엔지니어 보유 정도(설문)	48

III. IMD 세계 경쟁력 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 '08년 이후 3년 연속 상승해(08년 31위 → 09년 27위 → 10년 23위 → 11년 22위) '97년 IMD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인 국가경쟁력을 금년에도 유지
- 기업효율성(26위 → 25위)의 향상이 경쟁력 유지의 주요 요인
 - 특히 재정수지, 일반정부 부채 등 공공재정(16위 → 10위)과 종업원의 직업훈련 정도 등 노동시장(34위 → 24위) 등의 개선이 주요 상승 요인
- 329개의 세부항목 중
 - 우리나라는 장기실업률(1위 → 1위), 고등교육 수 학률(2위 → 2위) 등 26개 항목이 59개국 중 5위이

내의 상위권에 포함

- 반면, 이민법의 외국인 고용제약(56위 → 58위), 노사관계 생산성(53위 → 53위) 등 25개 항목이 50위 이하의 하위권이어서 개선 시급
 -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46위 → 55위), 기업 이사회 감시 정도(55위 → 56위), 초중등 교사 1인당 학생 수(초등: 51위 → 50위, 중등: 53위 → 53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IMD가 제시한 2012년 한국의 정책과제

- ① 세계 재정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 ② 인플레이션의 완화
- ③ 일자리의 질 향상과 청년 실업의 완화
- ④ FTA 확대와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의 강화
- ⑤ 사회자본을 포함한 투자의 확대

- IMD 평가 결과가 우리나라에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분석하여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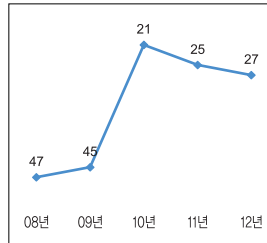
참고 1 2012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 홍콩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스웨덴이 그 뒤를 이음
 ◇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홍콩,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순위가 하락

순위	국 가	'11 순위	변동	순위	국 가	'11 순위	변동
1	홍콩	1	-	31	에스토니아	33	(↑2)
2	미국	1	(↓1)	32	카자흐스탄	36	(↑4)
3	스위스	5	(↑2)	33	체코	30	(↓3)
4	싱가포르	3	(↓1)	34	폴란드	34	-
5	스웨덴	4	(↓1)	35	인도	32	(↓3)
6	캐나다	7	(↑1)	36	리투아니아	45	(↑9)
7	대만	6	(↓1)	37	멕시코	38	(↑1)
8	노르웨이	13	(↑5)	38	터키	39	(↑1)
9	독일	10	(↑1)	39	스페인	35	(↓4)
10	카타르	8	(↓2)	40	이탈리아	42	(↑2)
11	네덜란드	14	(↑3)	41	포르투갈	40	(↓1)
12	룩셈부르크	11	(↓1)	42	인도네시아	37	(↓5)
13	덴마크	12	(↓1)	43	필리핀	41	(↓2)
14	말레이시아	16	(↑2)	44	페루	43	(↓1)
15	호주	9	(↓6)	45	헝가리	47	(↑2)
16	UAE	28	(↑12)	46	브라질	44	(↓2)
17	핀란드	15	(↓2)	47	슬로바키아	48	(↑1)
18	영국	20	(↑2)	48	러시아	49	(↑1)
19	이스라엘	17	(↓2)	49	요르단	53	(↑4)
20	아일랜드	24	(↑4)	50	남아프리카공화국	52	(↑2)
21	오스트리아	18	(↓3)	51	슬로베니아	51	-
22	한국	22	-	52	콜롬비아	46	(↓6)
23	중국	19	(↓4)	53	루마니아	50	(↓3)
24	뉴질랜드	21	(↓3)	54	불가리아	55	(↑1)
25	벨기에	23	(↓2)	55	아르헨티나	54	(↓1)
26	아이슬란드	31	(↑5)	56	우크라이나	57	(↑1)
27	일본	26	(↓1)	57	크로아티아	58	(↑1)
28	칠레	25	(↓3)	58	그리스	56	(↓2)
29	프랑스	29	-	59	베네수엘라	59	-
30	태국	2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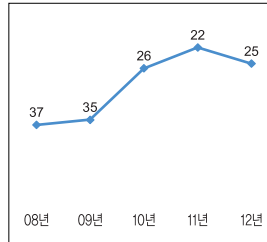
참고 2 2012년 IMD 중간 부문 순위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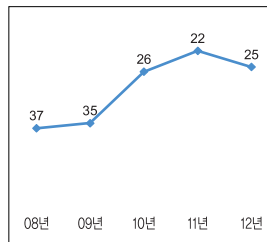
중간부문	'11	'12
국내 경제	12	16
국제 무역	16	30
국제 투자	53	42
고 용	6	8
물 가	52	54

정부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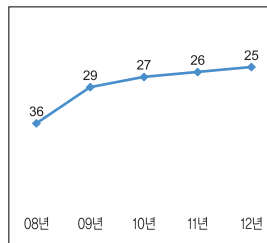
중간부문	'11	'12
국내 경제	12	16
국제 무역	16	30
국제 투자	53	42
고 용	6	8
물 가	52	54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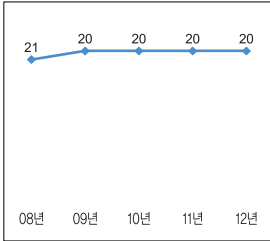
중간부문	'11	'12
공공재정	16	10
재정정책	11	19
제도적 여건	23	23
기업 관련법규	44	42
사회적 여건	38	32

기업 효율성



중간부문	'11	'12
생산성 & 효율성	26	32
노동 시장	34	24
금 용	28	25
경영활동	29	26
행태가치	18	22

인프라



중간부문	'11	'12
기본 인프라	19	21
기술 인프라	14	14
과학 인프라	5	5
보건 및 환경	28	28
교육	29	31

참고 3 상하위권 세부 항목 분석

■ 상위권(1위~5위)

상위권 세부항목	'11	'12
장기 실업률	1	1
뛰어난 인재가 회사 내에서 우대되는 정도	2	1
회사에서 고객만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도	3	1
종이와 상자지류 재활용률	11	1
중앙정부의 재정흑자/적자(10억달러)	2	2
근로시간	2	2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GDP 대비)	5	2
내국인 특허 획득 수	2	2
지속가능발전의 회사 내 우선순위 정도	1	2
고등교육 수확률	2	2
경제의 다양성	3	3
정부보조금	4	3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	3
공공부문 고용 비중	4	4
사회응집력에 정부가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정도	10	4
인구 천명당 전화회선 수	9	4
기업의 요구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충족도	9	4
민간 및 기업 간의 연결 정도(통신, IT 등)	6	4
특허 지원	4	4
인구10만명당 권리유효 특허건수	3	4
국내 총투자(% GDP 비중)	5	5
중앙정부의 재정흑자/적자(% GDP 비중)	4	5
산업용 고객을 위한 전력비용	6	5
인구 천명당 광대역통신 가입자 수	3	5
민간기업 총연구개발인력	6	5
교육평가	5	5

■ 하위권(50위 이하)

하위권 세부항목	'11	'12
이민관련 법이 외국인 고용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	56	58
기업이사회가 효과적으로 회사경영을 감독하는 정도	55	56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GDP 비중)	46	55
아파트 임대료	54	54
관세장벽	54	54
교역조건지수	53	53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누적액(% GDP 대비)	53	53
노사관계가 생산적인 정도	53	53
재생에너지 비중	53	53
중고등학생-교사비율	53	53
연구개발시설의 재배치가 미래의 경제를 위협하지 않는 정도	54	52
사회의 노령화가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	50	52
정치 불안의 위험이 매우 낮은 정도	42	52
경작면적	55	52
이산화탄소 배출	51	52
총생물학적 용적	52	52
중국내투자-실질성장률(% 실질가격, 자국화폐기준)	18	51
상품 및 용역의 수입(10억달러)	51	51
중소기업들이 국제적인 표준에 대한 효과 정도	49	51
국내 총에너지 생산(석유 톤당 에너지 생산량)	49	51
생계비지수	51	50
정리해고비용(주급의 수)	49	50
최종 에너지 소비	50	50
생태균형 보존/결핍	50	50
초등학생-교사비율	51	50

참고 4 '11년 대비 상승 및 하락 주요 항목

■ 개선

개선요인	'11	'12
직접투자 유입액(\$bn)	-0.15	4.66
GDP 대비 직접투자 유입액 비중(%)	-0.01	0.42
GDP 대비 정부 재정수지(%)	1.42	2.32
미래를 위한 연금이 잘 준비된 정도(설문)	3.70	4.76
학생 유입	0.82	1.02
조세회피가 잘 다루어지는 정도(설문)	4.02	4.91
기업윤리강령이 회사에서 실천되는 정도(설문)	5.98	7.17
상품 수출액(\$bn)	466.38	555.21
서비스 분야의 재배치가 미래경제를 위협하지 않는 정도(설문)	4.95	5.77
GDP 대비 정부보조금(%)	0.06	0.05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액(\$bn)	120.44	138.98
기업경영에 있어 건강, 안전 및 환경에 대한 관심도(설문)	6.51	7.35
상급경영진의 국제경험이 충분한 정도(설문)	4.53	5.10
환율정책(설문)	4.69	5.24
자본비용(설문)	5.09	5.69

■ 하락

하락요인	'11	'12
1인당 GDP 대비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 비율	7.34	26.74
1인당 실질GDP 성장률(%)	5.83	2.87
실질GDP 성장률(%)	6.3	3.6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3.0	4.0
정치 불안의 위험이 매우 낮은 정도(설문)	5.47	4.12
관광 수입(%)	1.18	0.96
GDP 대비 경상계정 수지(%)	2.90	2.37
GDP 중 1달러에 사용되는 상업적 에너지량	6,377	7,370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충분히 강조되는 정도(설문)	5.37	4.57
유효 개인소득세율	7.95	9.05
기업이사회가 효과적으로 회사 경영을 감독하는 정도(설문)	4.58	3.98
재생에너지 기술이 경쟁우위로 작용하는 정도(설문)	6.31	5.49
노동관련 규제가 사업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설문)	4.44	3.88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정도(설문)	6.54	5.73
GDP 대비 직접투자 유입 누적액 비중(%)	14.12	12.52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국회 제출

- 국가재무제표 국회 최초 제출 -

* 본 자료는 2012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재무회계팀에서 발표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국회 제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 31일(목) 국회에 제출하였음
 - * 국가결산, 채권, 채무, 국유재산, 물품, 예비비 등의 결산보고서
- 금일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는 기존 세입세출결산 외에 국가재무제표*가 처음 포함되었음
 - * 국가재무제표는 민간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51개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
- '11회계연도 국가결산 추진 경과 (법정기한)
 -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 '12. 2. 10 (2. 10)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 '12. 4. 10
 - 감사원 제출 : '12. 4. 10 (4. 10)
 - 감사원 검사결과 접수 : '12. 5. 20 (5. 20)
 - 국회 제출 : '12. 5. 31 (5. 31)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

1. 세입세출 결산

- ◇ (결산대상) 일반회계: 49개 중앙관서(조달청, 특허청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18개(기타특별회계 13, 기업특별회계 5)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총괄) 총세입 270.5조원, 총세출 258.9조원, 세계잉여금 6.5조원

(단위: 조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C-D)
총계	270.5	258.9	11.6	5.1	6.5
일반회계*	214.9	207.4	7.4	2.3	5.1
특별회계**	55.6	51.5	4.2	2.8	1.4

* 49개 중앙관서(조달청, 특허청은 특별회계)

** 13개 기타특별회계 및 5개 기업특별회계

- (세입) 270.5조원으로 예산(264.1조원) 대비 6.4조원 초과 징수, 전년 대비 9.3조원 증가
- (일반회계) 예산액(209.9조) 대비 4.9조원 초과 징수
 - 국세수입 4.2조원 및 세외수입 0.7조원 증가
- (특별회계) 예산액(54.2조) 대비 1.5조원 초과 징수
- (세출) 258.9조원으로 예산현액(269.8조원) 대비 96.0% 집행, 전년 대비 10.3조원 증가
- (세계잉여금) 6.5조원(일반회계 5.1조원, 특별회계 1.4조원)

* 결산상 잉여금(11.6조원)에서 '11년 이월액(5.1조원) 제외

(단위: 개, 억원, %)

예비비

- 2조 3,710억원 지출, 예산액(2조 5,324억원) 대비 93.6% 집행
-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관련경비(9,457억원), 재해대책비(6,426억원), 해외파병(74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677억원) 등

(단위: 억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5,324	23,986	23,710	119	1,495
일반회계	24,000	23,986	23,710	119	171
특별회계	1,324	-	-	-	1,324

예비금

- 국회 등 4개기관에서 1,974백만원 지출(예산 대비 97.7%)
- 특수활동비(1,273백만원), 직무수행경비(271백만원)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021	1,984	1,974	0	47
국 회	1,300	1,300	1,300	0	0
대 법 원	236	226	220	0	16
헌법재판소	25	0	0	0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0	458	455	0	5

성인지(性認知) 결산

- 성인지 대상사업의 지출액은 총 10.0조원(예산현액 10.2조원 대비 98.2%)

구 분	소관부처	대상사업 수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B/A)
합 계	34*	241	102,076	100,296	98.2
예산사업	32	197	84,386	83,896	99.4
기금사업	10	44	17,690	16,400	92.7

* 동일부처에서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이 같이 있는 경우 1개 부처로 처리

2. 통합재정수지

- 관리대상수지는 13.5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1.1\%$)
 -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8.6조원 흑자(GDP 대비 1.5%)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방기금, 고용보험기금
- '11년 예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13.3조원, 관리대상수지 11.5조원 개선
 - ※ 전년 대비로는 통합재정수지 1.9조원 개선, 관리대상수지 0.5조원 악화

(단위: 조원, %)

구 분	'10년 결산 (A)	'11년		전년 대비 (C-A)
		예산(B)	결산(C)	
1. 통합재정수지(1) (GDP 대비)	16.7 (1.4)	5.3 (0.4)	18.6 (1.5)	13.3
2. 사회보장성기금 수지(2)	29.7	30.3	32.1	1.7
3. 관리대상수지(1-2) (GDP 대비)	$\Delta 13.0$ ($\Delta 1.1$)	$\Delta 25.0$ ($\Delta 2.0$)	$\Delta 13.5$ ($\Delta 1.1$)	11.5

* '11년 명목GDP: 1,237.1조원(한은 잠정치)

3. 국가채무

-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02.8조원(GDP 대비 32.6%)으로 전년 대비 29.0조원 증가('11년 예산 대비 14.5조원 감소)
 - *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영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 지방정부 포함시 국가채무는 420,7조원으로 GDP 대비 34.0%
 * '10년 결산(392,2조원, 33.4%) 대비 28,5조원 증가, 0.6%p 증가

(단위: 조원, %)

구분	'10 결산(A)	'11		증감	
		예산(B)	결산(C)	전년 대비(C-A)	예산 대비(C-B)
중앙정부(①)	373.8	417.3	402.8	29.0	△14.5
(GDP 대비)	(31.9)	(33.6)	(32.6)	(0.7%p)	(△1.0%p)
• 국채	367.2	411.2	397.1	29.9	△14.1
• 차입금	3.5	3.0	2.5	△1.0	△0.5
• 국고채무부담행위	3.1	3.1	3.3	0.2	0.2
지방정부(②)	18.4	18.2	17.8 ¹⁾	△0.6	△0.4
국가채무(①+②)	392.2	435.5	420.7	28.5	△14.8
(GDP 대비)	(33.4)	(35.1)	(34.0)	(0.6%p)	(△1.1%p)

* '11~'15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 지방정부는 6월말 결산(행안부, 교과부)

4. 국가채권

- (국가채권현재액) '11년말 현재 국가채권 규모는 전년 대비 4.6조원(2.4%) 감소한 181.4조원

종류별 국가채권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0년말	'11년말	구성비	증감	
				증감액	증감률
융자회수금	1,271,254	1,191,221	(65.7)	△80,033	△6.3
예금및예탁금	402,386	391,257	(21.6)	△11,129	△2.8
조세채권	113,384	143,627	(7.9)	30,243	26.7
경상이전수입	52,259	52,764	(2.9)	505	1.0
사회보장기여금	4,488	12,858	(0.7)	8,371	186.5
기타채권*	15,730	22,263	(1.2)	6,533	41.5
합계	1,859,500	1,813,990	100.0	△45,510	△2.4

* 재산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기타수입 등

5. 국유재산·물품

- (국유재산현재액) 874.3조원, 전년 대비 556.9조원(175.4%) 증가
- '05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한 가격평가로 530.3조원, 공공용 재산의 결산 신규편입(127.5조원) 등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

국유재산 종류별 증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0년(A)	11년(B)	증감(B-A)	
			금액	증감률
토지	1,085,475	4,361,579	3,276,104	301.8
(면적)	(16,660km ²)	(24,024km ²)	(7,364km ²)	
건물	424,558	418,381	△6,177	△1.5
유가증권	1,274,254	1,438,480	164,226	12.9
공작물	289,972	2,392,003	2,102,031	724.9
기타*	100,569	132,934	32,365	32.2
합계	3,174,828	8,743,377	5,568,549	175.4

* 입목·죽, 선박·항공기, 기계기구, 무체재산

- (물품현재액) 10.3조원, 전년 대비 2.8조원(21.3%) 감소
- 리스물품이 신규로 물품 결산에 반영됨에 따라 전기·통신기기는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비 반영으로 대부분의 물품현재액 감소

물품 종류별 증감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10년(A)	11년(B)	증 감(B-A)	
			금 액	증감률
전 기 . 통 신 기 기	14,936	23,486	8,550	57.2
사 무 용 기 기	26,779	19,206	△7,753	△29.0
사 무 용 집 기	2,777	2,007	△770	△27.7
운반건설기계및차량	23,619	17,987	△5,632	△23.8
기계요소및공작기계	1,894	1,238	△656	△34.6
산 업 기 계	8,626	8,502	△124	△1.4
의료및화학분석기기	9,349	4,558	△4,791	△51.2
물리시험및측정기기	21,745	10,582	△11,163	△51.3
인쇄사진및시청각기기	4,492	3,633	△859	△19.1
기 타 잡 기 기	16,967	12,288	△4,679	△27.6
합 계	131,184	103,307	△27,877	△21.3

5. 재무결산

◇ (재무결산 대상) 일반회계: 49개 중앙관서(조달청, 특허청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18개(기타특별회계 13, 기업특별회계 5)
 기금: 64개

- (재무제표 작성결과) 자산은 총 1,523조원, 부채는 총 774조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총 749조원

(단위: 조원)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자 산	1,523.2	부 채	773.6
유 동 자 산	263.5	유 동 부 채	82.1
투 자 자 산	483.0	장 기 차 입 부 채	294.8
일 반 유 형 자 산	492.9	장 기 총 당 부 채	374.8
사 회 기 반 시 설	274.5	기 타 비 유 동 부 채	21.9
무 형 자 산	1.0	순 자 산	749.6
기 타 비 유 동 자 산	8.3	기 본 순 자 산	442.8
		적립금및잉여금	336.5
		순 자 산 조 정	(29.7)

- **[자산]** 자산실사, 자산재평가 등을 거쳐 정부의 모 든 자산 가치를 산정한 결과, 총 1,523조원으로 집계
 - 유동자산 263조원, 투자자산 483조원, 일반유형 자산 493조원, 사회기반시설 275조원, 기타 9조원 등으로 구성
 - 특히, 도로·공항·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은 금번 국가재무제표 작성성을 통해 그 가치를 처음으로 인식
- **[부채]** 그동안 전통적 방식에 의해 국가채무로 인식해 온 국채, 차입금 이외에 총당부채,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모든 부채를 종합한 결과, 총 774조원으로 집계
 - 유동부채 82조원, 장기차입부채 295조원, 기타비 유동부채 22조원, 장기총당부채 375조원 등으로 구성
 - 장기총당부채 중 연금총당부채는 342조원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現 재직자에게 평생 동안 지급될 연금지급액을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산출한 것임
 - * 총당부채 산출시 적용하는 가정으로 퇴직률, 사망률, 연금선택률,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할인을 등이 있음
 - i) 연금총당부채는 금년에 처음으로 산출한 것으로 과거에 없던 부채를 새롭게 인식한 것이 아님
 - * 동일한 방식으로 '07회계연도 연금총당부채를 시산한 결과 251조원으로 나타남
 - '07년 251조원(GDP 대비 25.7%) → '11년 342조원(GDP 대비 27.6%)
 - ii) '11년 기준 우리나라 공무원·군인연금 총당부채는 GDP 대비 28% 수준으로 주요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주요국의 공무원·군인연금 총당부채

(단위: GDP 대비, %)

한국('11년)	미국('10년)	영국('10년)	독일('06년)	프랑스('06년)
28	39	77	41	50

* 자료: 한국·미국·영국은 각국 재무결산서, 독일·프랑스는 「Final Report of the Eurostat/ECB Task Force on the statistical measurement of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pension schemes in general government to the CMFB(Committee on Monetary, Financial and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08. 1월)에 근거

iii) 재무제표상 연금총당부채를 산출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국제비교를 위한 부채통계에서는 연금총당부채를 제외하고 있음

-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총 749조원
-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채/자산 비율이 낮은 수준

주요국 재무제표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비교

(단위: 자국화폐기준 10억, 단 한국만 조원)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자산(A)	1,523	2,884	1,208	891	223
부채(B)	774	16,357	2,419	1,648	128
순자산(A-B)	749	△13,473	△1,212	△757	95
부채/자산(%)	50.8	567.2	200.4	185.0	57.4

회계연도 ¹⁾	'11년	'10년	'10년	'10년	'10년
포괄범위	중앙정부	연방정부	중앙·지방정부, 공기업	중앙정부	중앙정부

* 주: 1)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의 회계연도는 캘린더 연도와 불일치하여 한국과의 비교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표기를 해당기간의 연도말로 표시

* 자료: 영국 재무부, 「Whole of Government Accounts」(11. 11월), 한국은 정부작성 재무제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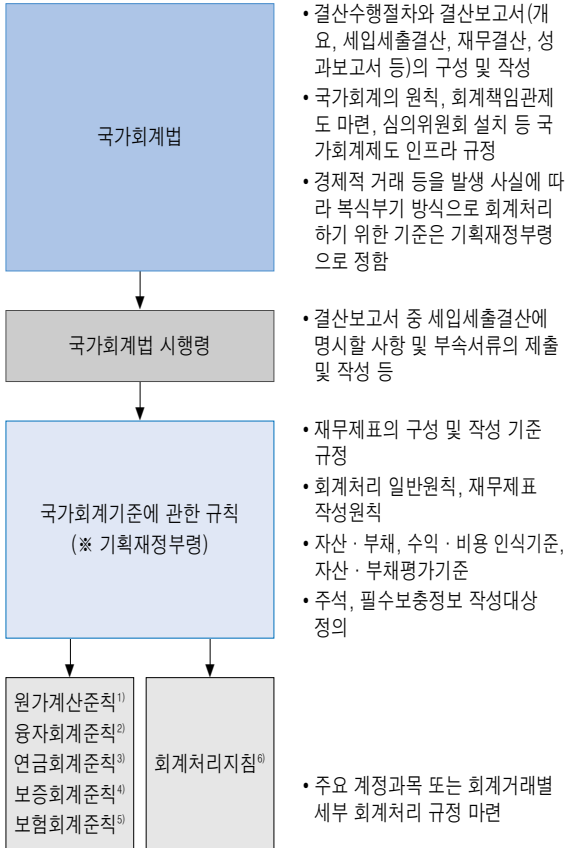
- **【기대효과】** 중앙정부도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국가 전체 자산·부채의 종합

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 국유재산으로 관리·보고되지 않던 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 자산 등을 인식하여 자산 유실을 방지하고, 자산 현황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
- 연금총당부채 등 향후 재정지출 가능성이 있는 잠재부채를 인식함으로써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재정 선진화 기반 마련

⇒ 국가회계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

참고 1 국가회계제도의 구조



* 주: 1) 원가계산준칙: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
 2) 융자회계준칙: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저리로 제공하는 융자사업의 적정한 평가 및 원가산출을 위한 세부적인 회계처리사항을 규정
 3) 연금회계준칙: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및 그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4) 보증회계준칙: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및 그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5) 보험회계준칙: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및 그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6) 회계처리지침: 2011년 12월말 현재 18개의 세부지침 마련

No.	지침명	내 용
1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 재정상태표 세부계정과목별 설명 및 사례 제시
2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 수익·비용 세부분류기준 제시 ■ 재정운영표 세부계정과목별 설명 및 사례 제시
3	순자산변동표 및 국세징수활동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 순자산변동표 구성항목 설명 ■ 국세징수활동표의 목적 및 작성지침
4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 국고금회계의 특성 및 회계처리
5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 행위 회계처리지침	■ 국채 등의 발행(차입) 및 상환, 이자율상각 등 처리지침
6	금융및운용리스 회계처리지침	■ 리스의 분류기준 및 세부 회계처리지침
7	기금 회계처리지침	■ 기금의 자본을 형성하는 출연금·부담금처리 ■ 기금의 적립금 및 준비금 설정기준 및 처리
8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 세입세출외거래 개념 정리 및 재무제표 표시
9	유·무형자산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	■ 감가상각 개념 및 회계처리 개요
10	채권채무현재가치평가 회계처리지침	■ 현재가치 개념 및 평가 방법
11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지침	■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유형별 회계처리
12	우발자산부채 회계처리지침	■ 우발자산·부채의 회계처리 및 주석 공시
13	통합재무제표 작성지침	■ 중앙관서 및 국가 통합재무제표 작성사항
14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지침	■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15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	■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에 대한 세부회계처리지침
16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감가상각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야 할 관리체계 규정 및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
17	융자회계처리지침	■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 및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18	국유재산 위탁회계처리지침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 등

참고 2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념

- **(발생주의)**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금주의와 대비되는 방식
- 경제적 거래 발생시점은 현금주의 회계에서도 동일*한 경우가 있으나 일부 거래는 발생주의 회계에서 먼저 인식**
 - * (예) 물품구매시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경우 발생주의·현금주의 동일
 - ** (예) 외상 거래시 발생주의 방식은 외상 거래시점에 바로 회계처리가 발생하나, 현금주의 방식은 현금으로 갚는 시점에 회계처리를 함

- **(복식부기)** 하나의 거래를 원인과 결과 양쪽(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단식부기와 대비되는 방식

* (예) 복식부기는 현금지출 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나, 현금주의는 현금지출과 별개로 지출 결과를 별도 확인 필요

발생주의 vs 현금주의, 복식부기 vs 단식부기

발생주의	현금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또는 사건 발생 시점에 기록 - 현금출납이 없어도 거래발생 시 기록 - 경제적 실질 가치로 자산·부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의 유·출입 시점에만 회계 처리 - 현금의 출납이 있어야 기록 - 취득원가로 기록 후 가액불변
복식부기	단식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지출을 자산·부채·수익·비용과 연계 - 자산·부채의 변동을 동시 기록 - 대차평균원리에 따라 자동검증 - 재무제표(명세서)간 연계정보의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지출 사실만을 기록 - 자산·부채는 별도로 기록 - 연계정보 불일치 가능성 존재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는 별개의 개념이나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회계가 반드시 필요

참고 3 국가채무와 재무제표상 부채 비교

구분	現 국가채무	재무제표상 부채
근거법령	국가재정법 (§ 91조)	국가회계법 (§ 14조)
인식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포괄범위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특별회계 (18개) • 정부 관리기금 (40개)
	지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공공기관 관리기금¹⁾ (24개)
분류기준 (중앙정부)	국채	포함
	차입금	포함
	국고채무 부담행위	포함
	공공기관 관리기금 ¹⁾ 공채	제외
	직역연금 총당부채 (군인·공무원연금)	제외
	기타발생주의 부채항목 ²⁾	포함

* 주: 1) 공공기관 관리기금: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금
 2) 선수금, 미지급비용, 보증·보험총당부채 등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 본 자료는 2012년 5월 29일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성과관리과에서 발표한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5월 29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의 사업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음

* '08회계연도 평가부터 사업운영부문은 기획재정부(성과관리과)에서 직접 평가하고, 자산운용부문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재정제도과)에서 실시

■ 금년도 평가대상

- (사업운영부문) '11년말 기준 총 64개 기금 중 30개 기금의 121개 사업*(약 19조원)

* 부처별로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1/3씩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

- (자산운용부문) 43개 기금*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금 20개와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 4개는 매년 평가하고, 그 외 19개 기금은 격년제로 평가

■ 금번 평가의 특징

- (사업운영부문) 하나의 관리과제가 여러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단일성과지표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지표별 가중치 선정을 통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였음

*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가중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배분

- (자산운용부문) 계량평가 점수 반영 비율을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 기금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 등 격년제 평가방식 보완을 위하여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을 매년 평가대상에 포함하였음

■ 평가결과

- (사업운영부문) 평가대상 사업의 77.7%인 94개 사업이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22.3%인 27개 사업이 미흡 이하로 평가되었음

- 전년과 비교시 보통 등급은 증가(68.8 → 74.4%), 미흡 이하 등급은 감소(28.0 → 22.3%)

- (자산운용부문) 평균 67.1점으로 전년(66.7점)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음

- 대형기금이 전문성이 높고 자산운용 관리가 우수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중소형기금도 자산운용체계 개선으로 점수가 상승함

* 규모별 평균점수(10년) : 대형(1조원 이상) 71.7(73.9), 중형(1조~1천억원) 66.3(63.6), 소형(1천억원 미만) 64.1(58.3)

- 6등급 종합평가 결과 국민연금기금 등 6개 기금*이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음

* 대형기금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

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중형기금 : 부실채권정리기금, 소형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 평가 결과 활용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시 반영할 예정임
 - (사업운영부문)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
 - (자산운용부문) 대형·중형·소형의 자산규모별로 각각 하위 1/3 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기금운영비를 0.5%p 삭감하고, 상위 1/3 기금은 기금운영비를 0.5%p 증액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자산운용평가 결과를 연금성기금은 10%, 금융성기금은 7%, 사업성기금은 6% 반영할 예정임
- 기획재정부는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참고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요약)

1. 추진 경위

- 기금의 사업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국가재정법 제82조)
- 2008년부터 평가대상을 사업운영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 추진경과
 - 〈사업운영부문〉
 - 평가지침 통보(재정부 → 각 부처, '12. 1월)
 -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제출(각 부처, '12. 1~3월)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12. 4월초~5월초)

〈자산운용부문〉

- 평가지침 통보(재정부 → 각 부처, '11. 12월)
- 기금운용평가단 구성(2. 27)
 - * 한완선(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단장 포함 15명
- 기금별 기금운용실적 보고서 접수(2. 29)
- 기금운용평가 실시(3. 1~5. 3)
 - ☞ 기금별 평가 및 의견수렴(3. 15~4. 6)
- 기금운용평가단의 최종 평가결과 제출(5. 4)

2.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의 특징

〈사업운영부문〉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 하나의 관리과제가 여러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단일 성과지표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지표별 가중치 선정을 통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가중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배분

〈자산운용부문〉

- 평가대상 확대
- 기금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 등 격년제 평가방식 보완을 위하여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을 매년 평가
- 계량평가지표 개선
- 계량평가 점수의 반영 비율을 기존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
- 외부검증 강화
- 여유자금 운용명세·성과 등을 기금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여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외부검증을 강화

3.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사업운영부문) 30개 기금의 121개 사업(약 19조 원)
 - 부처별로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1/3씩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
 - (자산운용부문) 43개 기금
 - 총 64개 기금 중 경영평가 대상 기금(20개)과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4개)은 매년 평가, 그 외 19개 기금은 격년제 평가로 대상에 선정
- 평가방법
 - (사업운영부문) 재정사업자율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별 성과를 중점 평가
 - 소관부처를 기준으로 경제, 사회, 행정 분야로 구분
 - 계획-관리-성과·환류의 사업단계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

5개 평가등급별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90점 이상	90~80	80~60	60~50	50점 미만

- (자산운용부문) 자산운용의 계획과 집행부문은 비계량평가로, 성과부문은 계량평가로 하여 그 결과를 합산
 - 비계량평가(50점)는 자산운용정책의 적정성, 자산운용관리의 효율성 등 평가지표별(6개 지표, 18개 세부지표)로 체크리스트를 통한 4등급 절대평가 실시

4개 평가등급별 점수

매우 양호	양호	미흡	매우 미흡
100	67	34	0점

- 계량평가(50점)는 단기 및 중장기자산의 수익률, 운용기관 및 상품의 집중도 등 평가지표별(4개 지표, 9개 세부지표)로 평가대상기금 전체의 실적을 9등급 상대평가 실시

9개 평가등급별 점수

9	8	7	6	5	4	3	2	1
100	87.5	75	62.5	50	37.5	25	12.5	0점

- 평가결과 활용
 - (사업운영평가)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사업비 10% 이상 삭감
 - (자산운용평가) 대형, 중형, 소형의 자산규모별로 각각 하위 1/3의 기금은 다음연도 기금운영비 0.5%p 삭감, 상위 1/3의 기금은 기금운영비 0.5%p 증액 원칙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연금성기금 10%, 금융성기금 7%, 사업성기금 6%)
 -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금 또는 전년 대비 대폭 개선된 기금은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4.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 ① 사업운영평가 결과
 - 사업별 평가점수 평균은 전년보다 상승(60.6 → 63.4)
 - 등급별로 보면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사업이 3.3%(4개),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사업이

22.3%(27개)

- 전년과 비교시, 보통 등급은 증가(68.8 → 74.4%), 미흡 이하 등급은 감소(28.0 → 22.3%), 우수 이상 등급은 증가(3.2 → 3.3%)
- 이는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지표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향상 등으로 이와 연계된 성과단계의 점수가 상승(50.6 → 62.0점)한 데 기인

(단위: 개, %)

	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사업 수 (비중)	121 (100.0)	0 (0.0)	4 (3.3)	90 (74.4)	15 (12.4)	12 (9.9)

- 단계별로는 집행단계 점수가 계획단계에 비해 낮은 수준

단계(점수)	계획(20점)	집행(30점)	성과(50점)
'11년도 평가점수 (100점 만점 환산)	17.5점 (87.3)	15.3점 (50.9점)	31.0점 (62.0점)

- 분야별로는 행정(68.5점), 사회(63.9점), 경제(60.2점) 분야 순으로 나타남

구 분	경제	행정	사회
전체 평균	60.2	68.5	63.9
기금 수(사업 수)	8(24)	1(5)	21(92)

* '10년도 평가결과 : 경제(63.1) > 행정(61.0) > 사회(59.3)

1 자산운용평가 결과

- 자산운용체계 개선, 연기금투자플 예약 확대 및 공공성 투자 확대 등으로 작년 대비 평가점수가 약간 상승(66.7 → 67.1점)
 - * 연기금투자플 예약규모(평가대상기금) : (10) 5.2 → (11) 6.8 조원
- 기금 규모별로는 자산운용의 규모가 클수록 우수하지만 중소형 기금 점수가 상승하여 격차는 '10년

보다 줄어듦

	비계량		계량		전체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반영비율	60%	50%	40%	50%	100%	100%
대형(1조원 이상)	85.3	85.7	56.7	57.6	73.9	71.7
중형(1천억~1조원)	71.5	84.7	51.6	47.8	63.6	66.3
소형(1천억원 미만)	68.1	82.4	43.6	45.9	58.3	64.1
전 체	76.1	84.2	51.5	49.9	66.7	67.1

- 기금 성격별로는 자산운용 경험이 축적된 연금성·금융성기금이 우수하며, 사업성기금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

	비계량		계량		전체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반영비율	60%	50%	40%	50%	100%	100%
연금성	82.9	82.1	60.4	58.4	73.9	70.2
금융성	93.0	85.5	57.0	57.9	78.6	71.7
사업성	68.0	84.3	47.5	45.1	59.8	64.7
전체	76.1	84.2	51.5	49.9	66.7	67.1

- 기금별 종합평가는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6등급 상대평가

전체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43개	6	6	10	7	6	8

*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 국제교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 등급별 전체 기금은 <참고 2>를 참조

- 평가결과 우수 및 개선권고 사항
 -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긍정적 변화>
 - 연기금투자플 등 외부기관의 활용을 통해 자산운용의 전문성 보완
 - * 국민건강증진·근로복지진흥·정보통신진흥기금 등
 -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활성화 노력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 기금운용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 국민연금 · 영화발전기금 등

〈주요 개선권고〉

- 자산운용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기금은 연기금 투자폴 등 외부위탁을 권고
 -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 국민주택기금 등
-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장기예치 자급에 대한 관리 개선 요구
 - * 응급의료 · 군인복지 ·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 자산운용지침(IPS)에 목표수익률, 허용 위험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
 - * 사학진흥 · 국제교류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5. 향후 추진계획

- 국회 제출(5월말)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6월), '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9월)에 기금운용평가 결과 활용

참고 1 '11회계연도 사업운영부문 평가 결과

구분	기금명	사업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경제 (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1	2	1	
	전력산업기반기금	4			3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			2		
	수발기금	2				1	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			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			3		
	정보통신진흥기금	1					1
	국민주택기금	5			3	1	1
	방송통신발전기금	6		1	4	1	
	관광진흥개발기금	4			3		1
사회 (21)	국민체육진흥기금	3		1	1	1	
	청소년육성기금	2			1	1	
	공공자금관리기금	1					1
	국민건강증진기금	25			18	4	3
	과학기술진흥기금	2		1	1		
	여성발전기금	1			1		
	고용보험기금	5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7			5		2
	근로복지진흥기금	2			1	1	
	한강수계관리기금	3			2		1
	금강수계기금	3			3		
	영산강수계기금	3			3		
	낙동강수계기금	3			3		
	군인복지기금	2			1	1	
	문화예술진흥기금	4			3	1	
	문화재보호기금	3			3		
	범죄피해기금	1			1		
영화발전기금	2			2			
장애인고용촉진 · 재활기금	10			8	2		
행정(1)	보훈기금	5			5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실제 사업수행부처인 여성부에 포함

참고 2 '11회계연도 사업운영부문 평가 결과

평가 등급	자산 규모별*		기금 유형별	
	구분	기금명	구분	기금명
탁월 (6개)	대형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연금성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형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성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소형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성	국민건강증진기금
우수 (6개)	대형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연금성	-
	중형	국민체육진흥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금융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소형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성	국민체육진흥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호 (10개)	대형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연금성	군인연금기금
	중형	구조조정기금, 군인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금융성	구조조정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소형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여성발전기금	사업성	근로복지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보통 (7개)	대형	공무원연금기금	연금성	공무원연금기금
	중형	남북협력기금	금융성	-
	소형	금강수계관리기금, 사학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성	금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사학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미흡 (6개)	대형	국민주택기금, 고용보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연금성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중형	영화발전기금	금융성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소형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국민주택기금, 영화발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아주 미흡 (8개)	대형	-	연금성	-
	중형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훈흥기금, 보훈기금	금융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소형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응급의료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성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문화예술훈흥기금, 보훈기금, 응급의료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 대형 : 여유자금 1조원 이상, 중형 : 여유자금 1조~1천억원, 소형 : 여유자금 1천억원 미만

참고 3 '11회계연도 사업운영부문 평가 결과

주무부처	기금명	기금운용평가		비고 (자산평가관련)
		사업	자산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		계정성 기금 ¹⁾
	대외경제협력기금		○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경영평가 대상 기금 ²⁾
	외국환평형기금			계정성 기금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경영평가 대상 기금
	사학진흥기금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외교통상부	국제교류기금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	○	
	군인연금기금		○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기금		○	경영평가 대상 기금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신설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	○	경영평가 대상 기금
	문화예술훈흥기금	○	○	경영평가 대상 기금
	언론진흥기금		○	경영평가 대상 기금
	영화발전기금	○	○	경영평가 대상 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	경영평가 대상 기금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수산발전기금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계정성 기금
지식경제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	
	축산발전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경영평가 대상 기금
	무역보험기금		○	경영평가 대상 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주무부처	기금명	기금운용평가		비고 (자산평가관련)
		사업	자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	○	
	국민연금기금		○	경영평가 대상 기금
	응급의료기금		○	
환경부	금강수계관리기금	○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	
	한강수계관리기금	○	○	
	석면피해구제기금			신설 기금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	○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 ²⁾
	근로복지진흥기금	○	○	경영평가 대상 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	○	○	
	청소년육성기금	○	○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	○	○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			계정성 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경영평가 대상 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부실채권정리기금		○	경영평가 대상 기금
	신용보증기금		○	경영평가 대상 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경영평가 대상 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	경영평가 대상 기금
	구조조정기금		○	경영평가 대상 기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	○	경영평가 대상 기금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	경영평가 대상 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	○		신설 기금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계	총 64개	30개	43개	

* 주: 1) 평가 제외
2) 매년 평가

한-EU FTA 발효 이후, 한-EU간 해외투자 동향 및 시사점

* 본 자료는 2012년 5월 30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에서 발표한 「한-EU FTA 발효 이후, 한-EU간 해외투자 동향 및 시사점」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최근 우리나라와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철폐에 따른 교역효과 외에 FTA와 해외투자(IFDI, OFDI)와의 관계에 관심이 증대
- 이에 한·EU FTA를 중심으로 FTA 발효 이후 한국과 EU간 해외투자 유출입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전년 동기와 비교*)하고,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한·EU FTA 발효 이후 3분기 동안을('11.3분기 및 4분기, '12.1분기) 전년 동기('10.3분기 및 4분기, '11.1분기)와 비교

한-EU FTA 발효 이후, 한-EU간 해외투자 (IFDI, OFDI) 동향 및 시사점

- ◆ 최근 우리나라와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FTA와 해외투자와의 관계에 관심이 증대
- 이에 한-EU FTA 발효('11. 7. 1) 이후 한-EU FTA가 EU와의 해외투자(IFDI & OFDI)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 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 봄

* 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 Outward FDI

I. 검토배경

- FTA는 관세철폐, 규제 개선, 제도 선진화 등을 통하여 역내 교역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에도 상당한 영향
 - 특히 FTA 체결이 증가하거나 FTA 상대국이 거대경제권일수록 FTA의 해외투자에 대한 영향은 더욱 증가
 - 우리나라는 '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아세안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및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고 FTA를 지속 확대하는 추세
 - 최근에는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중 FTA 협상 개시도 선언되어 FTA가 교역, 투자 등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
 - 하지만 그동안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관세철폐에 따른 교역효과 위주로 이루어지고 해외투자 측면의 분석은 미흡
 - 이에 한-EU FTA('11. 7. 1일)를 중심으로 FTA 발효 이후 한국, EU 양측간 해외투자 유출입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전년 동기와 비교*)하고,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 한·EU FTA 발효 이후 3분기 동안을('11.3분기 및 4분기, '12.1분기) 전년 동기('10.3분기 및 4분기, '11.1분기)와 비교

II. FTA와 해외투자(FDI)의 관계

- 관세철폐, 서비스시장 개방, 자본이동·투자 자유화, 제도선진화 등 협정상의 요소들이 포괄적으로 통상 해외투자(IFDI, OFDI)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관세철폐로 역내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 → 경쟁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역외 기업의 투자 증가
 - 시장개방 → 서비스 등 성장분야로 투자 증대
 - 제도선진화 → 투명성 제고,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투자 견인
- FTA의 해외투자에 대한 영향은 상대국과의 해외투자 목적, 상대국의 시장규모 등 FTA 협정 외의 요인도 중요
 - (해외투자 목적) 무역장벽 회피를 위한 해외투자인 경우 → FTA 이후 무역장벽 개선으로 해외투자는 감소, 교역은 증가
 - 생산요소(자원, 노동력 등) 활용을 위한 해외투자인 경우 → FTA 이후 관세철폐에 따른 중간재 가격 하락으로 해외투자 증가
 - (시장규모) FTA 상대국의 시장규모가 클 수록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

FTA가 해외투자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실증 연구

- 우리나라의 기 체결 FTA 중 칠레, 싱가포르, 노르웨이와의 FTA의 경우 발효 이후 해외투자 유출입 증가(KIET, '11. 12)
 - * FTA 발효 이후 한국으로부터 칠레, 싱가포르, 노르웨이로 투자는 물론 칠레, 싱가포르, 노르웨이로부터 한국으로 투자가 모두 증가
- FTA 체결 이후 20개 OECD 회원국들의 해외투자가 역외 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증가(Levy 등, 2003)
 - * Dunning(1993)은 FTA 발효 이후 입지 우위의 향상이 투

자유인을 증대시킨다고 주장

III. 한·EU FTA 이후 한국·EU간 해외투자(FDI) 동향

요약

- ①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 3분기 동안('11.3분기 및 4분기, '12.1분기) EU로부터 IFDI는 높은 증가세 (60.5% ↑)를 보였으나, 對EU OFDI는 감소
 - 하지만, 對EU 광업투자를 제외할 경우 EU로의 OFDI 또한 동기간 동안 높은 증가세(100% ↑)를 보임
 - * 對EU '11년 광업투자는 '10년 대비 77.1% 감소(43.8억달러 → 10.0억달러)
- ② 對EU IFDI, OFDI(광업투자 제외)가 동기간에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제조업분야의 유입, 유출의 증가가 주요인
 - EU로부터 제조업 IFDI 증가는 독일, 스웨덴, 영국 등 주요 EU 국가들이 비교우위가 있는 화학, 통신장비·방송기기, 자동차부품(운송용 기계) 분야의 對韓 투자를 확대하였기 때문
 - EU로의 제조업 OFDI 증가는 우리 기업이 EU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섬유·직물·의류, 전기·전자, 운송용기계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
 - * 제조업 OFDI 증가(12.7억달러)의 상당부분은 M&A 형태(전기·전자 6.9억달러, 섬유제조업 1.7억달러)
- ③ 서비스업 분야는 IFDI*, OFDI 둘다 실질적으로 감소
 - (* EU로부터의 서비스업 분야 IFDI의 경우 조세회피지역인 몰타로부터의 유입을 제외시 한-EU FTA 발효 이후 3.1% 감소)

· '08년, '09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는 對EU 서비스업 분야의 IFDI, OFDI가 작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1. EU로부터 해외투자 유입(IFDI)

* 최근 3분기 동안 IFDI('11.3분기 및 4분기, '12.1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10.3분기 및 4분기, '11.1분기) 증감률을 분석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로부터 IFDI는 감소 추세였으나,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 3분기 동안('11.3~ '12.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서비스업의 투자가 증가
- (對EU IFDI 유입) 전년 동기 대비 60.5% 증가, 우리나라 전체 IFDI 증가율(Δ0.8%)을 크게 상회
- (제조업) EU로부터의 제조업 IFDI는 전년 동기 대비 100.2% 증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IFDI 증가율(Δ10.0%)을 현저히 초과
 - 화학(344.0%*), 전기전자(186.8%**), 운송용 기계(138.3%***) 등의 제조업이 증가
 - *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화학제품 제조업 투자가 증가
 - **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의 통신기기 및 전자기계장치 제조업 투자가 증가
 - *** 독일, 영국 등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 투자가 증가
- (서비스업) EU로부터의 서비스업 IFDI는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 전체 서비스업 IFDI 증가율(4.2%)을 크게 초과
 - 하지만, 몰타(조세회피지역)로부터의 IFDI 제외 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

對EU IFDI 및 증가율

(단위: 백만달러, 전년 동기 대비 %)

	'01~'07 평균	'08	'09	'10	'11	'11		'12	'11 3/4~ '12 1/4
						3/4	4/4		
전체 유입액 (증가율)	10,425 (0.6)	11,712 (11.4)	11,484 (Δ1.9)	13,071 (13.8)	13,674 (4.6)	2,220 (Δ24.3)	6,089 (4.9)	2,346 (17.0)	10,656 (Δ0.8)
제조업	3,313 (16.0)	3,007 (11.7)	3,725 (23.9)	6,658 (78.8)	5,657 (Δ15.0)	1,033 (Δ37.8)	2,393 (Δ20.3)	1,480 (88.0)	4,906 (Δ10.0)
서비스업	6,453 (2.7)	8,388 (10.2)	7,595 (Δ9.5)	6,302 (Δ17.0)	7,270 (15.4)	1,154 (Δ8.8)	3,463 (25.2)	835 (Δ30.4)	5,452 (4.2)
EU 유입액 (증가율)	3,559 (7.8)	6,339 (45.9)	5,297 (Δ16.4)	3,196 (Δ39.7)	5,032 (57.5)	864 (27.6)	2,120 (90.7)	584 (34.7)	3,568 (60.5)
제조업	1,104 (17.5)	1,264 (13.2)	1,426 (12.9)	1,532 (57.5)	2,073 (35.3)	430 (179.8)	785 (49.6)	444 (195.7)	1,660 (100.2)
서비스업	2,331 (18.5)	4,802 (55.9)	3,746 (Δ22.0)	1,595 (Δ57.4)	2,500 (56.8)	434 (Δ16.8)	1,332 (128.4)	140 (Δ50.6)	1,905 (37.4)

* 출처: 지식경제부, 신고기준

2. EU로부터 해외투자 유출(OFDI)

* 최근 3분기 동안 OFDI('11.3분기 및 4분기, '12.1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10.3분기 및 4분기, '11.1분기) 증감률을 분석

- 한·EU FTA 발효 이후 3분기 동안('11.3분기 및 4분기, '12.1분기) 전년 동기 대비 對EU 제조업 OFDI는 증가, 서비스업은 감소
- (對EU OFDI) 전년 동기 대비 34.1% 감소, 우리나라 전체 OFDI 감소율(Δ10.9%)을 상회
 - (광업 제외시) 광업을 제외한 EU로의 OFDI는 전년 동기 대비 65.3% 증가, 우리나라 전체 OFDI 증가율(6.3%)을 크게 상회
 - * 對EU '11년 광업투자는 '10년 대비 77.1% 감소(438 → 10.0억불)
- (제조업) EU로의 제조업 OFDI는 '11년 3·4분기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413.5%* 증가, 우리나라 전체 OFDI 증가율(15.0%)을 크게 초과
 - * 對EU 대형 M&A 증가로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대형 M&A 제외시 63.6% 증가)
 - 섬유·직물·의류(1107.7%*), 전기·전자(902.0%**), 운송용 기계(394.1%***) 등 대부분

의 제조업 부문에서 증가

* 독일, 영국 등 섬유제품 제조업 및 의복 제조업의 투자가 증가

** 아일랜드의 컴퓨터·주변장치 제조업 대형투자로 증가

*** 프랑스 등 자동차 제조업의 투자가 증가

- (서비스업) EU로의 서비스업 OFDI는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 우리나라 전체 OFDI 증가율(△6.8%)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

- 도소매(27.1%), 비즈니스서비스업(252.3%) 등은 증가,
- 운수(△78.0%), 부동산·임대(△99.7%) 등에서는 감소

對EU OFDI 및 증가율

(단위: 백만달러, 전년 동기 대비 %)

	'01~'07 평균	'08	'09	'10	'11	'12			'11 3/4~ '12 1/4
						3/4	4/4	1/4	
전체 유출액 (증가율)	12,529 (29.4)	36,812 (22.7)	30,715 (△16.6)	34,363 (11.9)	44,496 (29.5)	9,183 (△35.1)	8,114 (△27.1)	10,982 (18.7)	28,280 (△10.9)
전체 유출액- 광업 제외	11,122 (29.0)	27,593 (2.5)	19,108 (△30.8)	24,177 (26.5)	24,128 (△0.2)	6,497 (△27.1)	6,778 (△1.9)	7,681 (97.6)	20,956 (6.3)
제조업	5,566 (34.3)	8,624 (△10.4)	5,656 (△34.4)	9,236 (63.3)	10,079 (9.1)	3,298 (△10.9)	2,863 (24.1)	2,557 (61.6)	8,738 (15.0)
서비스업	4,851 (43.1)	17,236 (15.7)	11,982 (△30.5)	13,922 (16.2)	12,276 (△11.8)	2,593 (△48.3)	3,254 (△22.9)	4,514 (140.5)	10,360 (△6.8)
EU 유출액 (증가율)	1,659 (157.7)	3,090 (1.9)	5,142 (66.4)	7,472 (45.3)	3,625 (△51.5)	184 (△95.4)	2,104 (166.5)	1,376 (72.8)	3,663 (△34.1)
EU 유출액- 광업 제외	1,530 (161.4)	2,849 (△0.1)	3,687 (29.4)	3,096 (△16.0)	2,622 (△15.3)	160 (△74.9)	1,962 (148.9)	703 (149.2)	2,826 (65.3)
제조업	920 (607.2)	1,182 (2.1)	447 (△62.2)	635 (42.1)	1,415 (122.6)	107 (83.4)	1,100 (804.9)	63 (△6.5)	1,269 (413.5)
서비스업	571 (119.8)	1,463 (2.8)	3,108 (112.4)	2,354 (△24.3)	729 (69.0)	40 (△93.0)	504 (△14.7)	631 (468.4)	1,176 (△7.9)

* 출처: 수출입은행, 신고기준

3. EU와의 해외투자 순유출*(NFDI=유출(OFDI)-유입(IFDI))

최근 3분기동안 순유출('11.3분기 및 4분기, '12.1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10.3분기 및 4분기, '11.1분기)의 증감을 분석

* NFDI(Net FDI): '유출'유입'인 경우 순유출은 흑자(+), '유출'유입'인 경우 순유출은 적자(-)를 의미

- (對EU 순유출) 광업투자 유출의 큰 폭 감소로 전

년 동기 대비 3,224백만달러 감소, 우리나라 전체 NFDI는 3,662백만달러 감소

- (광업 제외) 광업을 제외한 對EU 순유출(NFDI)은 유출(OFDI)이 유입(IFDI)보다 적어 전년 동기 대비 229백만달러 감소, 이에 비해 광업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NFDI는 1,337백만달러 증가

* 對EU 순유출(백만달러): ① 전체: 3,339 → 95(3,244 ↓)

② 광업제외: △513 → △742(229 ↓)

- (제조업) 對EU 제조업 NFDI는 EU로의 제조업 투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91백만달러 증가

- (서비스업) EU 서비스업 NFDI는 EU로부터의 서비스업 유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620백만달러 감소

* 對EU 순유출(백만달러): ① 제조업: △582 → △391(191 ↑)

② 서비스업: △110 → △730(620 ↓)

EU로의 투자 순유출액

(단위: 백만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

	'01~'07 평균	'08	'09	'10	'11	'12			'11 3/4~ '12 1/4
						3/4	4/4	1/4	
전체 순유출 (증감)	2,104 (4,049)	25,100 (5,611)	19,231 (△5,869)	21,292 (2,061)	30,822 (9,529)	6,963 (△4,263)	2,026 (△490)	8,636 (1,391)	17,624 (△3,662)
전체 순유출- 광업 제외	697 (3,556)	15,882 (△523)	7,623 (△8,258)	11,106 (3,483)	10,453 (△653)	4,276 (△1,699)	689 (△416)	5,335 (3,452)	10,300 (1,337)
제조업	2,254 (854)	5,617 (△1,311)	1,932 (△3,685)	2,577 (646)	4,422 (1,844)	2,265 (226)	470 (1,165)	1,098 (290)	3,832 (1,681)
서비스업	△1,602 (2,159)	8,848 (1,567)	4,387 (△4,461)	7,620 (3,232)	5,006 (△2,614)	1,439 (△2,315)	△210 (△1,663)	3,679 (3,001)	4,908 (△977)
EU 순유출 (증감)	△1,899 (407)	△3,249 (△1,936)	△155 (3,094)	4,276 (4,431)	△1,407 (△5,683)	△681 (△3,979)	△16 (306)	792 (429)	95 (△3,224)
EU 순유출- 광업 제외	△2,029 (384)	△3,490 (△1,996)	△1,609 (1,880)	△100 (1,509)	△2,411 (△2,310)	△704 (△665)	△158 (166)	199 (271)	△742 (△229)
제조업	△184 (340)	△82 (△123)	△979 (△898)	△897 (83)	△658 (239)	△324 (△228)	314 (718)	△381 (△298)	△391 (191)
서비스업	△1,759 (26)	△3,339 (△1,681)	△638 (2,701)	760 (1,397)	△1,771 (△2,531)	△394 (△447)	△828 (△835)	492 (663)	△730 (△620)

『참고』 한·EU FTA의 주요 내용

- ◇ (상품)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
 - 품목수 기준으로 EU 측은 대한민국 수입관세의 99.6%, 한국은 대EU 수입관세의 93.6%를 5년 내 철폐
 - * 품목수 기준으로 EU는 94.0%, 한국은 81.7%를 즉시 철폐
- ◇ (서비스 및 투자)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를 기준으로 EU는 139개, 한국은 115개 분야를 개방하였으며, 투자에 대해 새로운 규제 도입을 금지하는 등 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투자보장협정에 따르기로 함*
 - *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은 EU집행위원회가 아닌 각 회원국이 보유, 그러나 EU 27개국 중 22개국과는 이미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가 체결된 상태

IV. 평가 및 시사점

- ◆ 한-EU FTA가 제조업 중심으로 해외투자(IFDI, OFDI)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해외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서비스산업 투자 유치, OFDI 확충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
 - * 이번 검토는 한-EU FTA가 해외투자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중간 점검의 성격

가. 평가 및 전망

- (평가) 한-EU FTA 발효 후 일년이 채 되지 않아 한-EU FTA의 對 EU IFDI, OFDI에 대한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한-EU FTA는 지난해 7월 발효 이후 제조업분야 위주로 FDI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글로벌 재정위기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및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동향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양측의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 위주로 투자 확대

- (제조업) 양측의 비교우위를 기초로 제조업분야의 對 EU로의 유입, 유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제조업분야는 IFDI, OFDI 증가의 지속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 EU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한국에 화학, 전기·전자, 운송용 기계 등의 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우리측은 EU의 거대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특히, 최근 한-미 FTA 발효,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등은 EU로부터의 IFDI의 증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FTA 측면에서는 투자 허브로서 유리

- (서비스업) 한-EU FTA를 통해 EU(139개)와 한국(115개)은 서비스분야를 크게 개방하였으나, IFDI(몰타 지역 제외), OFDI가 증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

나. 시사점

-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제조업분야는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EU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소재, 바이오, 환경 등의 신성장산업 투자유치에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
-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한 투자유치) 한-EU FTA는 국내의 낙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기회
 - 서비스업 R&D 투자확충,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Spillover effect가 큰 분야 위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

- EU가 우위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서비스(컨설팅, 디자인, 광고 등), 교육 등이 투자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01~'09년 평균)은 OECD 32개국 중 25위, 독일의 50%, 영국의 51%, 프랑스의 45% 수준(OECD, 2011)

** EU 주요국별 투자 유치 유망 분야(KOTRA, 2010) : 영국 (금융, 법률, 교육 등), 독일(부품소재, 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스웨덴(제약 및 의료기기 등)

-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활성화)** 아직 EU와 FTA를 체결하지 못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의 EU 시장을 겨냥한 직접투자 유치 노력도 중요

- 한-EU, 한-미 FTA를 Sales point로 활용할 경우 한국을 EU,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투자 증가 예상

* 일본의 경우 한-EU,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

- **(해외직접투자(OFDI) 확충)** 거대 경제권인 EU로의 진출 확대를 위해 對EU 투자활동 지속 강화가 바람직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뿐만 아니라 EU의 기술, 숙련노동, 발달된 사업인프라 활용 등을 위한 해외진출 지속 필요

- 특히,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EU 역내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M&A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조 및 서비스분야 유망기업 인수를 위한 M&A 투자 확대 필요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의 개최

* 본 자료는 2012년 6월 18일 기획재정부 국고과에서 발표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의 개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6. 18일(월) 김동연 차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5월말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방향에 대해 논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 김동연 차관은 최근 유로존 위기 등으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60%를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5월말 현재 연간계획 276.8조원 중 135.4조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48.9%(집행 계획 47.2%)로 기 계획된 목표를 무난히 달성

'12년 5월말 집행 현황

(단위: 조원)

구분	12년 연간계획 (A)	5월 계획		5월말 집행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총계	276.8	130.6	47.2%	135.4	48.9%
• 중앙부처	223.5	109.3	48.9%	114.7	51.3%
• 공공기관	53.4	21.4	40.0%	20.7	38.8%

- 각 부처·공공기관에서는 상반기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반기 재정집행관리 방향>

- 한편, 김 차관은 하반기가 곧 시작된다고 하면서 하반기 경기 보완의 관건이 재정사업의 이월·불용 최소화에 있다고 강조
 - * 재정관리점검대상 사업의 연평균 이월·불용률은 5% 수준으로 약 13조~15조원 정도의 이월·불용액이 발생
- 이에 따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점검체계 → 하반기 이월·불용 최소화 점검체계로 조기에 전환
 - 지난해에는 10월 이후부터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이보다 2~3개월 앞당겨 관련대책을 추진할 계획
 - 각 부처·기관별로 연례적 이월·불용 사업을 특별 관리하고,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

| 재정통계 |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_성질별, 단체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_성질별, 단체별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_성질별, 단체별

연도	성질별	합계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0	합계	2,966,761	1,579,516	614,527	287,307	113,625	168,855	123,788	271,414	
	인건비	129,140	84,543	36,108	18,233	10,795	8,781	5,196	5,431	
	물건비	400,179	254,990	104,055	61,795	28,841	30,283	13,246	16,770	
	경상이전	26,886	6,975	2,947	1,412	705	556	1,039	316	
	자본지출	1,834,552	836,609	219,658	152,627	41,058	121,860	83,347	218,060	
	융자 및 출자	166,959	61,690		13,000	20,500		11,190	17,000	
	보전재원	165,424	96,198	29,505	30,886	10,857	6,899	8,167	9,883	
	내부거래	226,313	224,539	216,127	7,560			852		
기타	17,307	13,973	6,127	1,794	869	476	751	3,955		
1991	합계	4,084,460	2,048,093	1,013,026	189,008	170,692	168,204	285,028	222,135	
	인건비	172,947	115,394	54,826	22,330	13,095	11,286	6,985	6,872	
	물건비	451,707	237,214	48,895	78,391	37,243	35,606	19,333	17,746	
	경상이전	16,679	9,069	3,670	1,562	1,331	791	1,308	407	
	자본지출	2,917,505	1,430,542	822,019	43,782	77,748	112,887	234,571	139,535	
	융자 및 출자	106,458	64,431		19,080	29,300		16,051		
	보전재원	398,824	182,633	80,923	21,003	10,578	6,961	6,092	57,075	
	내부거래	2,111	1,094		599	495				
기타	18,229	7,716	2,692	2,260	903	673	688	500		
1992	합계	4,819,597	2,714,321	1,641,484	183,845	201,529	189,098	280,968	217,397	
	인건비	223,953	146,825	70,832	27,105	15,930	14,422	9,389	9,147	
	물건비	641,510	350,124	149,216	70,898	43,554	43,238	24,606	18,612	
	경상이전	250,680	239,647	233,660	2,301	1,092	1,166	833	595	
	자본지출	2,854,826	1,703,750	1,070,187	63,210	90,607	125,619	207,432	146,695	
	융자 및 출자	151,653	65,000			38,000		23,000	4,000	
	보전재원	669,170	199,351	114,933	16,852	11,283	3,795	14,906	37,582	
	내부거래	11,008	1,887		1,874		13			
기타	16,797	7,737	2,656	1,605	1,063	845	802	766		
1993	합계	5,689,915	3,285,337	1,860,625	272,668	345,722	410,424	159,148	236,750	
	인건비	273,903	172,290	82,521	30,592	21,554	17,056	10,066	10,501	
	물건비	725,862	380,108	176,934	72,640	35,051	49,908	23,653	21,922	
	경상이전	30,132	18,258	11,217	2,265	1,616	1,407	935	818	
	자본지출	3,564,100	2,248,748	1,206,081	144,944	274,708	336,123	91,316	195,576	
	융자 및 출자	204,355	13,706					13,706		
	보전재원	598,528	194,821	131,618	21,425	11,325	4,163	19,043	7,247	
	내부거래	265,628	246,906	246,906						
기타	27,407	10,500	5,348	802	1,468	1,767	429	686		
1994	합계	4,537,846	2,038,646	473,539	322,041	542,702	311,335	92,891	296,138	
	인건비	291,501	174,506	74,668	33,431	24,332	20,423	10,321	11,331	
	물건비	529,329	321,992	135,696	62,151	41,107	56,682	12,077	14,279	
	경상이전	282,069	79,451	5,857	17,010	16,961	13,845	12,786	12,992	
	자본지출	2,350,516	1,257,299	186,820	192,092	439,249	212,259	38,521	188,358	
	융자 및 출자	221,132	39,500					5,000	34,500	
	보전재원	827,075	155,206	61,189	17,251	20,617	8,126	14,179	33,844	
	내부거래	9,188	794						794	
예비비 및 기타	27,036	9,898	9,309	106	436		7	40		
1995	합계	5,676,909	2,198,323	537,903	279,765	547,362	443,980	112,953	276,360	
	인건비	275,322	155,951	60,770	30,472	24,139	20,431	9,634	10,505	
	물건비	612,032	360,533	172,602	55,756	44,543	55,652	15,199	16,781	
	이전경비	349,579	150,661	56,622	23,594	32,131	17,411	7,105	13,798	
	자본지출	3,291,703	1,279,887	151,887	143,869	399,153	325,746	53,884	205,348	
	융자 및 출자	143,119	13,000				13,000			
	보전재원	982,962	236,785	96,022	25,589	46,414	11,736	27,131	29,893	
	내부거래	9,762	-							
예비비 및 기타	12,430	1,506		485	982	4		35		

재정통계

(단위: 백만원)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387,245	697,137	71,388	68,971	36,501	72,795	178,448	49,214	204,461	8,331
44,598	11,997	5,094	3,178	2,178	4,532	3,621	4,646	7,895	1,456
145,189	55,455	10,490	7,436	6,292	11,365	13,094	10,611	26,954	3,492
19,911	976	300	167	161	333	180	304	17,406	85
997,943	529,670	48,605	55,238	17,647	52,132	130,178	25,116	136,821	2,536
105,269	88,429	300	1,500			15,040			
69,226	8,549	6,383	1,308	10,104	4,223	15,602	8,245	14,098	715
1,775	1,280					495			
3,334	781	216	145	118	210	238	291	1,286	47
2,036,368	946,205	104,858	71,028	130,736	214,311	224,759	58,805	258,198	27,469
57,553	16,172	6,331	4,114	2,584	5,673	4,580	5,847	10,558	1,694
214,493	77,418	16,082	12,024	8,602	16,544	25,560	12,722	41,146	4,396
7,610	1,812	384	225	279	1,793	263	640	2,053	161
1,486,963	774,858	49,617	50,700	108,071	147,556	156,954	22,959	163,682	12,567
42,027				950	31,354	2,350			7,373
216,191	74,162	27,489	3,258	9,688	11,107	34,705	15,796	39,183	803
1,017		100		170			400	42	306
10,513	1,783	4,855	707	392	285	348	439	1,535	169
2,105,276	849,400	110,019	148,124	94,134	241,380	221,461	95,271	296,465	49,022
77,128	22,294	7,654	5,249	3,405	8,224	6,067	7,892	13,589	2,754
291,386	104,229	17,247	14,424	19,015	32,753	29,444	17,499	50,771	6,004
11,033	2,200	836	351	244	560	2,927	868	2,833	214
1,151,076	511,708	54,939	80,031	46,489	139,271	117,581	35,511	136,567	28,979
86,653		1,250	1,000	9,500	37,579	1,386	25,938		10,000
469,819	207,887	19,821	46,187	15,143	22,680	60,543	6,665	89,961	932
9,121		6,707		212		2,202			
9,060	1,082	1,565	882	126	313	1,311	898	2,744	139
2,404,578	882,350	176,478	172,874	163,105	202,142	194,338	152,820	400,156	60,314
101,613	32,386	9,603	7,525	4,100	9,629	7,459	10,309	16,366	4,236
345,754	127,957	21,480	16,703	19,187	44,861	30,561	23,988	52,612	8,405
11,874	4,472	1,340	515	252	892	1,505	1,053	1,293	552
1,315,352	573,985	77,242	115,491	94,840	101,166	81,610	96,435	142,194	32,389
190,649		33,857	11,683			16,190	1,800	117,098	10,021
403,707	137,753	27,336	19,252	44,559	45,288	40,105	18,856	65,957	4,601
18,722	7	3,718				14,997			
16,907	5,790	1,902	1,705	167	306	1,911	379	4,636	110
2,499,200	856,360	139,302	106,564	144,669	248,004	183,923	187,484	551,756	81,138
116,995	37,417	12,124	8,434	4,609	10,155	7,916	12,567	17,785	5,988
207,337	68,345	12,907	10,462	8,687	24,743	16,879	23,325	33,230	8,759
202,618	51,548	13,538	10,963	16,017	32,990	18,965	11,469	41,716	5,412
1,093,217	422,154	66,859	52,840	79,277	96,872	81,179	83,651	186,069	24,316
181,632				900		3,174	27,434	137,424	12,700
671,869	271,316	25,446	20,258	34,957	80,310	53,270	28,004	134,434	23,874
8,394	127	7,869						398	
17,138	5,453	559	3,607	222	2,934	2,540	1,034	700	89
3,478,586	1,295,321	174,347	229,353	264,755	314,336	255,750	270,565	597,745	76,414
119,371	35,291	13,443	8,440	5,684	11,073	8,689	12,801	17,574	6,376
251,499	105,112	15,933	10,165	9,708	23,271	13,272	23,904	41,361	8,773
198,918	44,365	7,900	8,580	24,998	29,845	20,299	5,254	54,347	3,330
2,011,816	780,640	96,947	180,434	155,507	188,020	92,631	104,676	379,984	32,977
130,119	1,900		40	16,700		20,006	78,977		12,496
746,177	316,920	38,295	19,429	51,943	61,707	98,635	44,033	102,753	12,462
9,762	7,615	805						1,342	
10,924	3,478	1,024	2,265	215	420	2,218	920	384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_성질별, 단체별 <계속>

연도	성질별	합계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6	합계	6,009,194	2,281,882	672,899	292,964	319,905	672,586	156,119	167,409	
	인건비	298,262	164,859	64,966	33,642	21,512	23,095	10,348	11,296	
	물건비	677,568	368,763	154,124	64,382	49,956	61,856	15,777	22,668	
	이전경비	467,482	169,726	55,056	26,779	27,013	22,523	17,944	20,411	
	자본지출	3,242,033	1,214,854	250,180	132,935	174,610	523,174	62,488	71,467	
	융자 및 출자	276,466	44,280				4,000	28,000	12,280	
	보전재원	1,014,321	307,687	148,573	30,626	43,428	36,992	18,781	29,287	
	내부거래	2,540	2,500					2,500		
예비비 및 기타	30,522	9,213		4,600	3,386	946	281			
1997	합계	6,301,399	2,515,040	631,325	381,920	296,797	761,040	162,540	178,687	102,731
	인건비	321,890	185,438	68,075	35,679	23,966	25,799	11,218	12,129	8,572
	물건비	760,692	430,624	174,050	68,590	56,167	74,830	16,445	21,939	18,603
	이전경비	453,170	182,406	45,336	29,881	29,787	26,902	20,001	24,330	6,169
	자본지출	3,390,528	1,488,510	337,161	199,277	160,357	569,742	79,195	81,567	61,211
	융자 및 출자	264,964	36,621		5,000		14,000	17,621		
	보전재원	1,000,701	182,880	6,703	42,778		47,234	17,226	37,966	8,131
	내부거래	9,694	500			321	134			45
예비비 및 기타	99,760	8,061		715	3,357	2,399	834	756		
1998	합계	5,868,911	2,434,955	621,871	362,416	232,682	784,455	142,762	166,529	124,240
	인건비	313,461	179,100	66,951	33,405	23,012	25,386	10,221	11,686	8,439
	물건비	823,286	448,430	183,618	68,809	60,119	81,896	16,659	21,884	15,445
	이전경비	707,152	284,649	80,307	43,570	44,394	49,049	28,220	31,186	7,923
	자본지출	2,840,964	1,275,662	266,491	148,997	89,030	556,551	67,321	65,287	81,985
	융자 및 출자	263,374	-							
	보전재원	851,524	216,534	19,932	46,941	15,666	67,489	19,664	36,424	10,418
	내부거래	20,973	14,127		14,097					30
예비비 및 기타	48,177	16,453	4,572	6,597	461	4,084	677	62		
1999	합계	5,800,837	2,348,191	592,478	385,321	278,886	631,109	150,356	162,634	147,407
	인건비	297,803	169,799	60,151	32,433	23,573	23,778	9,547	11,459	8,858
	물건비	885,923	457,893	188,596	73,149	60,442	81,421	16,982	20,683	16,620
	이전경비	983,422	314,391	86,931	50,759	44,675	61,081	33,182	29,067	8,696
	자본지출	2,472,502	1,123,663	219,716	184,164	139,648	374,149	53,598	48,736	103,652
	융자 및 출자	55,739	18,220		3,220				15,000	
	보전재원	1,055,404	253,412	34,367	34,520	10,450	89,815	36,991	37,688	9,581
	내부거래	3,847	2,048		2,048					
예비비 및 기타	46,197	8,765	2,717	5,028	98	865	56	1		
2000	합계	5,443,009	2,150,978	624,488	442,176	321,287	271,693	154,807	181,501	155,026
	인건비	306,497	171,604	65,846	31,010	21,268	22,254	9,932	11,728	9,566
	물건비	998,049	476,977	193,365	71,180	55,721	90,770	19,503	23,571	22,867
	이전경비	714,799	324,891	92,771	78,435	63,777	20,856	26,493	32,494	10,065
	자본지출	2,120,910	853,147	227,323	179,622	150,896	103,505	46,581	68,314	76,906
	융자 및 출자	142,147	41,930		17,000	1,000				23,930
	보전재원	1,137,834	274,377	43,164	61,831	28,565	33,894	51,918	44,574	10,431
	내부거래	3,709	800						800	
예비비 및 기타	19,064	7,252	2,019	3,098	60	414	380	20	1,261	
2001	합계	6,118,400	2,569,662	682,111	472,838	440,092	419,277	183,028	171,424	200,892
	인건비	340,642	193,749	72,524	32,617	20,479	38,338	9,452	10,507	9,832
	물건비	1,078,755	513,097	207,125	86,396	55,953	97,715	20,199	21,428	24,281
	이전경비	814,726	362,208	97,235	89,146	78,574	12,836	26,347	43,907	14,163
	자본지출	2,320,151	1,135,589	249,263	222,909	256,466	207,851	47,152	41,722	110,226
	융자 및 출자	108,310	34,000		6,000					28,000
	보전재원	1,406,816	322,007	54,200	31,050	28,504	61,124	79,855	52,899	14,375
	내부거래	8,001	900						900	
예비비 및 기타	40,999	8,112	1,764	4,720	116	1,413	23	61	15	

재정통계

(단위: 백만원)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3,727,312	1,479,036	235,621	210,001	208,446	309,952	229,465	294,322	664,076	96,393
133,403	40,284	14,381	8,248	6,345	13,040	8,629	15,351	20,377	6,748
308,805	129,543	17,860	16,006	11,764	30,958	15,521	30,157	45,975	11,021
297,756	69,432	42,946	19,549	27,583	30,958	20,806	18,904	59,678	7,900
2,027,179	983,001	111,503	86,573	87,418	134,563	127,935	156,366	315,245	24,575
232,186	45,653	95	35,040	2,700	44,043	5,400	20,814	45,179	33,262
706,634	208,359	48,507	44,286	72,633	54,192	44,235	47,611	173,942	12,869
40		40							
21,309	2,764	289	299	3	2,198	6,939	5,119	3,680	18
3,786,359	1,645,991	209,760	168,754	307,988	327,869	247,066	271,169	504,012	103,750
136,452	46,533	14,547	9,532	6,785	13,196	9,054	16,472	13,063	7,270
330,068	151,109	18,654	14,644	12,756	31,060	20,078	36,337	32,413	13,017
270,764	83,487	23,361	3,979	25,008	32,583	21,355	30,074	42,275	8,642
1,902,018	919,905	100,643	98,610	138,248	147,219	108,216	99,624	238,550	51,003
228,343	124,310	3,600	22,380	22,380	3,000	7,000	8,953	52,000	7,100
817,821	246,500	43,847	40,629	102,791	99,615	81,354	65,248	121,491	16,346
9,194	8,508	42						276	368
91,699	65,639	5,066	1,360	20	1,196	9	14,461	3,944	4
3,433,956	1,675,687	224,226	137,437	203,747	220,485	198,397	227,641	468,218	78,118
134,361	46,902	13,605	11,315	7,544	12,483	8,053	15,469	12,345	6,645
374,856	175,984	18,655	13,874	14,957	37,234	26,076	39,909	36,767	11,400
422,503	195,041	28,976	15,850	24,413	30,667	30,527	34,072	53,215	9,742
1,565,302	867,035	95,211	61,790	66,177	66,665	74,818	64,631	233,579	35,396
263,374	177,940	4,000		24,034	25,020		8,200	21,879	2,301
634,990	198,010	61,724	32,966	65,987	43,437	53,212	64,646	102,573	12,435
6,846	5,050			78		1,000	23	695	
31,724	9,725	2,055	1,642	557	4,979	4,711	691	7,165	199
3,452,646	1,682,283	213,708	160,241	228,470	185,058	187,524	285,645	442,843	66,874
128,004	48,541	12,909	8,763	5,970	11,429	6,988	15,850	11,477	6,077
428,030	206,322	19,816	18,481	16,670	46,567	24,654	42,906	40,140	12,474
669,031	444,115	28,018	19,659	24,934	31,191	19,003	40,309	51,011	10,791
1,348,839	746,832	94,490	68,166	70,148	42,458	72,493	90,063	140,355	23,834
37,519	1,000			5,672	3,990	3,397	21,995	1,465	
801,992	222,083	58,451	44,805	104,560	48,197	53,522	74,013	182,665	13,696
1,799	199				600			1,000	
37,432	13,191	24	367	516	626	7,467	509	14,730	2
3,292,031	1,417,780	229,649	163,609	216,942	228,063	168,193	333,487	463,758	70,550
134,893	50,156	13,913	9,110	6,790	11,826	8,104	16,122	12,629	6,243
521,072	254,500	25,623	22,437	25,789	53,229	25,250	52,892	47,532	13,820
389,908	145,133	30,462	21,239	13,409	38,570	24,150	45,526	63,383	8,036
1,267,763	654,834	81,073	56,057	101,789	46,664	59,351	90,599	157,534	19,862
100,217	1,679	21,885	7,490		16,361		46,008	5,223	1,571
863,457	305,916	54,743	47,264	68,638	60,129	50,634	82,330	172,866	20,937
2,909	2,430	479							
11,812	3,132	1,471	12	527	1,284	704	10	4,591	81
3,548,738	1,577,882	204,876	169,527	290,935	273,883	122,843	345,185	487,034	76,573
146,893	55,053	15,149	9,913	7,336	12,366	9,596	17,170	13,572	6,738
565,658	275,704	24,876	25,727	25,127	57,682	25,786	58,864	56,058	15,834
452,518	177,180	27,990	23,647	45,753	37,824	6,775	51,222	69,255	12,872
1,184,562	544,959	72,092	59,999	133,111	74,414	49,340	110,303	116,171	24,173
74,310		1,900		6,400	18,573	11,500	10,780	25,157	
1,084,809	514,096	56,677	48,936	61,920	69,962	19,348	93,447	203,472	16,951
7,101		6,000	1,000					101	
32,887	10,890	192	305	11,288	3,062	498	3,399	3,248	5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_성질별, 단체별 <계속>

연도	성질별	합계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2002	합계	6,868,178	2,623,440	746,179	518,671	377,728	514,757	119,158	163,657	183,289
	인건비	361,382	191,158	74,163	35,965	22,765	25,260	10,634	11,422	10,948
	물건비	1,148,489	516,880	143,451	159,205	49,664	95,963	22,882	25,102	20,613
	이전경비	646,879	265,132	52,455	43,099	82,332	23,261	25,883	29,931	8,171
	자본지출	2,809,543	1,279,483	393,671	200,746	177,288	309,325	29,313	42,424	126,717
	융자 및 출자	183,004	15,340	-	15,340	-	-	-	-	-
	보전재원	1,625,192	342,004	82,439	62,812	45,515	49,947	30,345	54,105	16,840
	내부거래	61,110	500	-	-	-	-	-	500	-
예비비 및 기타	32,579	12,943	-	1,503	163	11,002	101	174	-	
2003	합계	6,102,905	2,362,875	659,389	466,761	286,150	514,299	122,419	119,942	193,915
	인건비	400,837	208,882	80,556	38,377	23,999	29,378	11,861	12,488	12,222
	물건비	1,250,428	495,983	187,963	68,312	53,359	115,948	23,686	24,562	22,155
	이전경비	799,895	288,832	47,281	72,002	85,000	24,388	20,729	26,663	12,769
	자본지출	2,371,132	980,496	243,660	232,597	102,041	220,257	26,930	33,767	121,243
	융자 및 출자	31,024	4,500	-	-	4,500	-	-	-	-
	보전재원	1,092,921	370,387	99,929	53,068	17,041	123,774	28,918	22,135	25,523
	내부거래	110,882	300	-	-	-	-	-	300	-
예비비 및 기타	45,786	13,495	-	2,405	209	553	10,296	28	3	
2004	합계	6,811,347	2,487,681	680,665	535,032	290,563	459,018	121,767	158,041	242,594
	인건비	446,321	224,852	87,187	40,845	25,982	31,388	12,798	13,397	13,254
	물건비	1,352,787	552,843	186,368	94,127	56,032	136,135	24,263	21,601	34,316
	이전경비	620,074	272,667	43,442	69,052	84,310	23,720	20,614	14,088	17,440
	자본지출	2,895,425	1,053,604	268,365	242,954	94,607	233,353	27,760	66,018	120,548
	융자 및 출자	254,898	13,800	-	10,800	3,000	-	-	-	-
	보전재원	1,193,149	340,902	95,302	58,839	25,137	34,260	28,361	41,969	57,035
	내부거래	21,415	18,109	-	17,309	-	-	-	800	-
예비비 및 기타	27,278	10,903	-	1,106	1,495	163	7,971	168	1	
2005	합계	8,105,242	2,738,736	674,969	640,187	312,704	634,557	149,211	150,045	177,063
	인건비	595,213	302,433	117,523	53,535	35,685	42,230	17,624	18,517	17,317
	물건비	1,372,864	509,122	168,330	87,653	57,981	129,159	19,679	14,386	31,934
	이전경비	734,840	304,997	38,657	60,180	83,507	52,860	22,646	27,526	19,621
	자본지출	3,713,282	1,172,637	279,189	283,918	84,781	333,834	50,489	63,354	77,073
	융자 및 출자	302,807	76,892	-	66,692	2,300	7,900	-	-	-
	보전재원	1,343,081	368,281	71,270	87,226	47,254	67,462	38,690	25,262	31,116
	내부거래	1,307	800	-	-	-	-	-	800	-
예비비 및 기타	41,848	3,575	-	983	1,195	1,112	82	201	2	

재정 통계

(단위: 백만원)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4,244,738	1,652,483	340,053	183,116	345,069	321,826	410,431	423,986	480,971	86,804
170,224	61,550	21,113	10,443	8,137	13,377	13,600	19,068	15,731	7,205
631,609	267,601	69,858	26,471	39,416	61,989	32,238	60,681	60,520	12,836
381,746	138,560	27,158	28,611	9,603	29,097	30,900	53,406	62,431	1,980
1,530,060	610,238	145,838	64,296	113,254	73,696	230,816	145,444	111,567	34,911
167,664	143,864	-	-	-	-	-	9,000	14,800	-
1,283,188	416,888	75,606	52,147	173,435	84,178	102,040	135,587	214,346	28,962
60,610	1,597	301	-	-	58,713	-	-	-	-
19,636	12,185	180	1,149	1,224	775	836	800	1,576	910
3,740,030	1,564,908	316,997	164,873	231,363	263,774	354,095	349,880	406,500	87,641
191,955	68,574	22,723	11,350	8,808	16,850	16,325	20,156	19,525	7,642
754,445	352,205	34,191	62,872	40,468	73,477	38,281	66,074	74,278	12,599
511,063	308,625	24,917	11,152	20,426	22,410	27,794	41,910	51,686	2,144
1,390,636	549,748	137,367	43,393	74,271	88,488	155,175	148,879	155,009	38,306
26,524	-	958	-	594	3,600	20,000	1,000	-	372
722,534	198,647	91,109	35,717	80,028	57,320	58,167	71,797	103,218	26,533
110,582	74,915	5,701	-	-	-	29,965	-	-	-
32,291	12,194	32	390	6,768	1,630	8,387	63	2,783	45
4,323,666	1,600,961	375,900	232,139	287,707	285,599	461,344	536,486	455,491	88,040
221,469	80,859	25,008	12,433	10,476	17,973	18,331	25,461	22,456	8,471
799,944	393,365	35,727	34,511	45,199	82,067	36,762	79,613	80,784	11,917
347,408	128,770	27,361	19,163	24,538	21,560	26,705	48,291	41,669	9,351
1,841,821	696,097	172,484	90,239	111,569	109,324	270,896	203,220	151,769	36,222
241,098	1,114	34,295	9,650	17,600	-	39,439	87,000	52,000	-
852,247	290,107	80,485	62,872	76,178	53,878	68,640	92,747	105,287	22,051
3,306	3,306	-	-	-	-	-	-	-	-
16,375	7,342	539	3,271	2,146	797	571	153	1,525	29
5,366,506	2,210,142	389,019	281,919	558,020	309,199	457,558	549,069	521,304	90,276
292,781	107,837	33,786	16,504	16,587	21,289	22,568	33,262	30,470	10,478
863,742	445,722	33,938	31,747	54,562	71,464	40,106	83,825	90,768	11,610
429,843	173,477	31,062	19,977	31,456	36,668	28,907	51,876	46,404	10,015
2,540,645	1,109,696	175,377	100,742	320,851	120,395	291,340	194,468	194,633	33,143
225,915	-	36,500	43,000	29,600	-	-	69,115	47,700	-
974,800	356,557	76,307	65,194	99,531	59,112	72,338	112,223	108,536	25,003
507	-	-	-	500	-	-	7	-	-
38,273	16,853	2,049	4,756	4,932	270	2,299	4,294	2,794	27

주: 1)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_성질별, 단체별

연도	성질별	합계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0	합계	2,872,237	1,167,083	822,612	67,080	149,735	56,274	45,936	25,445	
	인건비	41,557	21,202	18,309	1,996	443	390	37	28	
	물건비	396,382	96,738	49,202	14,059	8,655	12,774	6,183	5,866	
	경상이전	235,629	19,014	1,311	272	182	5,255	7,845	4,149	
	자본지출	1,973,167	944,386	696,031	47,733	138,312	34,318	14,183	13,808	
	융자 및 출자	83,597	17,845	9,556	1,887	1,424	1,602	2,463	914	
	보전재원	89,740	25,110	10,380			1,795	12,271	665	
	내부거래	45,637	40,652	37,128	1,110	390	118	1,906		
예비비 및 기타	6,529	2,136	697	23	329	22	1,049	16		
1991	합계	3,913,328	1,579,068	1,158,801	206,687	67,152	75,740	54,939	15,749	
	인건비	39,807	14,772	11,359	2,315	438	440	107	113	
	물건비	483,150	103,869	49,598	17,034	9,867	12,481	8,591	6,299	
	경상이전	69,235	7,193	2,814	283	721	788	373	2,214	
	자본지출	2,704,440	1,076,251	769,388	183,234	53,344	54,189	10,386	5,710	
	융자 및 출자	258,273	162,598	155,551	2,875	1,519	1,381	477	796	
	보전재원	220,418	97,918	60,397			2,050	34,853	618	
	내부거래	120,540	114,547	109,230	924		4,393			
예비비 및 기타	17,466	1,920	464	23	1,263	20	151			
1992	합계	5,913,598	2,500,877	1,373,911	735,014	93,240	154,313	82,855	61,544	
	인건비	47,034	17,483	13,778	2,444	464	519	103	175	
	물건비	572,493	135,279	61,953	31,594	10,091	14,457	8,750	8,434	
	경상이전	64,858	11,330	1,383	5,383	507	2,064	39	1,954	
	자본지출	4,254,820	1,676,820	662,324	689,115	80,386	132,469	62,702	49,824	
	융자 및 출자	292,527	206,173	196,803	4,424	1,792	1,782	650	722	
	보전재원	193,270	13,128	419			2,579	9,695	435	
	내부거래	223,062	201,360	199,077	2,033		250			
예비비 및 기타	265,534	239,304	238,174	21		193	916			
1993	합계	6,215,067	2,369,846	1,231,487	597,940	182,333	161,047	137,973	59,066	
	인건비	56,320	24,590	19,516	3,527	513	758	109	167	
	물건비	634,190	189,426	87,172	53,547	11,809	17,813	11,257	7,828	
	경상이전	131,753	17,399	1,760	8,987	1,331	3,194	177	1,950	
	자본지출	4,487,162	1,561,618	590,395	504,844	166,846	134,116	120,200	45,217	
	융자 및 출자	220,998	96,750	88,291	3,375	1,834	1,959	626	665	
	보전재원	212,163	30,249	16,149	9,380		1,410	3,053	257	
	내부거래	433,596	416,140	398,152	14,260		248	500	2,980	
예비비 및 기타	38,885	33,674	30,052	20		1,549	2,051	2		
1994	합계	6,096,444	3,880,009	2,841,854	468,051	371,098	123,452	55,642	19,912	
	인건비	72,580	41,978	30,964	2,757	75	7,999	82	101	
	물건비	490,894	168,696	91,788	27,395	17,369	14,199	8,153	9,792	
	경상이전	504,762	130,878	77,032	29,100	1,929	15,254	6,400	1,163	
	자본지출	3,878,294	2,716,625	1,863,241	390,795	349,898	81,879	23,665	7,147	
	융자 및 출자	244,886	130,429	122,374	3,776	1,618	1,363	294	1,004	
	보전재원	230,259	41,133	24,247			1,411	14,770	705	
	내부거래	658,735	639,100	623,633	14,178	209	130	950		
예비비 및 기타	16,034	11,170	8,575	50		1,217	1,328			

재정통계

(단위: 백만원)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705,154	264,249	106,447	78,174	185,515	133,270	172,722	220,512	518,521	25,744
20,355	3,282	2,096	780	2,042	1,256	2,853	4,494	2,835	717
299,644	37,384	26,006	22,527	23,907	34,800	37,451	45,392	67,851	4,326
216,615	51,179	656	255	1,344	704	4,685	3,547	154,119	127
1,028,782	151,702	67,480	44,548	145,058	72,759	106,287	144,022	279,107	17,819
65,752	9,736	5,468	4,677	5,547	10,047	10,377	10,362	7,775	1,763
64,629	10,625	4,442	4,703	7,471	12,383	9,639	9,918	4,455	992
4,985	253	10	501	125	508	1,124	1,464	1,000	
4,393	89	288	184	21	812	306	1,313	1,379	
2,334,260	401,814	133,941	112,404	245,634	212,466	348,492	313,152	531,510	34,847
25,035	4,186	2,477	982	3,006	1,891	2,934	5,487	3,266	806
379,280	55,047	29,813	23,472	32,770	39,566	50,480	66,926	76,371	4,835
62,042	11,742	767	23,327	3,834	2,492	11,812	2,488	4,439	1,141
1,628,189	274,040	88,857	55,191	188,353	141,644	256,504	204,698	395,243	23,659
95,674	26,447	5,591	4,503	5,988	14,461	12,029	15,330	9,439	1,886
122,500	27,377	6,027	4,525	11,314	9,419	14,042	15,423	33,316	1,057
5,994	632	110	214	298	515	481	51	2,228	1,464
15,546	2,344	299	190	71	2,477	209	2,749	7,208	
3,412,721	704,803	231,281	222,736	390,799	299,171	378,709	481,358	621,844	82,020
29,551	5,791	2,777	1,122	3,708	1,919	3,605	5,936	3,842	851
437,214	52,781	34,919	25,289	44,056	44,629	51,573	75,210	102,314	6,443
53,528	7,613	687	6,422	4,155	7,459	17,972	1,809	6,159	1252
2,578,000	533,639	178,158	158,908	319,914	209,382	279,200	371,307	457,583	69,909
86,354	14,612	5,780	4,996	6,712	16,538	11,384	14,699	9,446	2,187
180,142	77,959	8,176	6,043	11,272	18,528	14,261	5,354	37,223	1,326
21,702	12,244	110	186	837	234	464	4,752	2,823	52
26,230	164	674	19,770	145	482	250	2,291	2,454	
3,845,221	687,879	299,762	244,780	436,782	379,991	377,419	554,318	770,908	93,382
31,730	5,819	2,832	1,043	4,217	2,377	4,623	6,501	4,017	301
444,764	70,065	39,647	23,016	47,931	50,967	55,054	78,293	73,416	6,375
114,354	57,601	1,506	2,156	6,839	35,403	1,964	1,194	7,359	332
2,925,544	524,378	235,266	191,739	337,667	264,179	283,257	438,511	568,675	81,872
124,248	16,537	8,632	12,397	9,511	17,587	13,998	13,618	29,446	2,522
181,914	10,770	11,243	12,853	20,792	9,185	17,934	14,205	83,869	1,063
17,456	2,536	50	92	9,692	218	339	725	2,944	860
5,211	173	586	1,484	133	75	250	1,271	1,182	57
2,216,435	467,175	125,795	65,452	274,850	189,456	226,264	282,825	554,459	30,159
30,602	5,244	2,769	634	4,530	2,328	3,580	6,047	5,377	93
322,198	36,752	19,561	17,422	31,409	37,137	52,954	75,361	46,570	5,032
373,884	238,791	20,230	7,519	19,189	16,053	13,454	16,357	39,824	2,467
1,161,669	165,764	65,140	25,003	189,328	103,119	114,988	163,050	315,264	20,013
114,457	9,954	5,232	5,802	5,537	12,849	22,280	9,812	41,759	1,232
189,126	5,546	10,916	8,361	24,284	17,788	18,210	10,397	92,331	1,293
19,635	3,998	324	492	568		52	1,064	13,137	
4,864	1,126	1,623	219	5	182	746	737	197	29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_성질별, 단체별 <계속>

연도	성질별	합계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5	합계	6,171,429	4,161,480	2,824,695	788,308	153,629	89,830	222,666	82,352	
	인건비	83,170	51,521	34,864	3,396	647	11,439	411	764	
	물건비	553,166	221,152	106,497	38,702	31,015	19,181	12,485	13,272	
	이전경비	751,415	444,036	360,212	48,975	2,583	16,692	12,943	2,631	
	자본지출	3,972,010	2,910,838	1,915,259	643,650	103,060	37,195	154,000	57,674	
	융자 및 출자	200,315	72,516	64,854	3,784	1,607	1,201	197	873	
	보전재원	214,221	80,480	2,714	15,379	12,164	3,172	39,977	7,074	
	내부거래	383,820	378,000	340,295	34,314	2,281	110	1,000		
예비비 및 기타	13,312	2,937		108	272	840	1,653	64		
1996	합계	7,185,520	4,872,128	2,631,434	1,220,112	465,978	123,278	339,397	91,929	
	인건비	99,790	65,551	40,691	4,495	5,836	12,712	720	1,097	
	물건비	629,707	248,528	119,894	40,114	34,314	25,398	14,905	13,903	
	이전경비	984,556	721,251	565,090	86,391	26,777	20,962	18,729	3,302	
	자본지출	4,433,455	3,245,334	1,542,339	984,652	356,383	39,094	260,941	61,925	
	융자 및 출자	250,276	92,200	73,752	14,475	1,772	909	448	844	
	보전재원	517,750	333,949	220,300	19,222	38,112	4,231	41,537	10,547	
	내부거래	136,686	118,384	67,000	46,380	2,114	494	2,106	290	
예비비 및 기타	133,300	46,931	2,368	24,383	670	19,478	11	21		
1997	합계	7,250,524	4,807,248	2,338,152	1,259,723	565,712	135,497	314,328	114,312	79,524
	인건비	113,513	77,356	45,239	5,845	7,026	13,928	2,580	1,902	836
	물건비	806,733	372,652	165,001	75,624	46,568	37,182	19,275	21,551	7,451
	이전경비	962,629	754,979	595,916	72,965	28,619	20,251	17,265	3,018	16,945
	자본지출	4,450,786	3,097,388	1,392,449	958,438	350,557	55,851	235,502	84,160	20,431
	융자 및 출자	245,349	91,503	24,009	3,942	59,686	910	1,341	1,106	509
	보전재원	399,923	216,162	28,278	53,141	63,947	5,005	31,851	738	33,202
	내부거래	156,995	128,117	81,700	33,144	6,455	1,200	4,002	1,616	
예비비 및 기타	114,596	69,091	5,560	56,624	2,854	1,170	2,512	221	150	
1998	합계	7,658,912	5,013,575	2,261,886	1,313,809	723,255	167,772	330,598	163,916	52,339
	인건비	124,669	75,995	40,665	7,300	7,190	13,785	3,063	3,273	719
	물건비	927,045	383,114	172,807	67,466	42,257	37,053	29,523	24,211	9,797
	이전경비	905,841	633,875	427,583	105,106	47,970	26,778	13,597	3,203	9,638
	자본지출	4,470,465	3,059,454	1,413,480	765,645	407,021	73,039	266,528	128,829	4,912
	융자 및 출자	353,144	203,161	121,010	3,927	73,891	2,050	827	602	854
	보전재원	691,461	547,229	26,066	339,463	132,211	9,787	12,904	1,635	25,163
	내부거래	113,604	101,102	58,832	24,872	11,387	600	3,281	2,130	
예비비 및 기타	72,683	9,645	1,443	30	1,328	4,680	875	33	1,256	
1999	합계	8,420,097	5,802,891	2,678,944	1,604,700	740,386	134,236	356,590	203,427	84,608
	인건비	125,152	75,088	42,346	5,135	5,283	15,354	2,749	3,393	828
	물건비	308,963	153,126	86,447	8,102	17,055	31,182	3,613	4,994	1,733
	이전경비	1,971,534	1,147,439	595,512	214,930	196,329	46,912	42,818	28,283	22,655
	자본지출	4,756,316	3,486,425	1,746,896	887,708	427,119	25,584	229,994	159,822	9,302
	융자 및 출자	262,510	141,476	66,086	3,352	66,305	1,526	834	1,740	1,633
	보전재원	787,983	636,820	32,812	466,706	382	12,899	75,279	1,805	46,937
	내부거래	161,134	148,558	105,600	18,750	20,182		1,176	2,850	
예비비 및 기타	46,505	13,959	3,245	17	7,731	779	127	540	1,520	

재정 통계

(단위: 백만원)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09,949	382,869	130,260	60,761	213,379	201,994	286,637	270,316	433,969	29,764
31,649	5,811	2,848	732	4,580	2,396	3,733	6,556	4,886	107
332,014	46,240	20,178	19,239	38,364	41,984	43,708	69,853	47,664	4,784
307,379	150,952	12,548	5,224	21,819	13,945	14,905	16,526	62,918	8,542
1,061,172	152,281	68,842	16,676	122,628	113,559	181,441	137,441	254,818	13,486
127,799	14,645	5,861	6,944	6,518	19,848	25,354	13,310	33,565	1,754
133,741	7,690	17,871	10,231	16,945	10,129	16,664	24,781	28,385	1,045
5,820	2,584	1,267	300		73	364	723	509	
10,375	2,666	845	1,415	2,525	60	468	1,126	1,224	46
2,313,392	371,429	129,082	81,392	295,966	339,240	390,981	252,478	405,794	47,030
34,239	6,910	3,144	922	5,177	1,804	4,081	6,439	5,648	114
381,179	53,509	28,608	23,106	37,425	47,108	52,388	81,300	52,177	5,558
263,305	77,308	15,180	6,314	42,711	11,491	24,490	12,351	59,316	14,144
1,188,121	195,258	49,400	27,205	155,006	167,911	257,620	120,785	199,069	15,867
158,076	10,669	16,381	11,667	8,305	28,715	26,222	11,438	36,813	7,866
183,801	15,104	11,700	11,272	43,399	10,442	24,909	16,625	48,987	1,363
18,302	8,658	3,793		812	35	55	2,238	710	2,001
86,369	4,013	876	906	3,131	71,734	1,216	1,302	3,074	117
2,443,276	536,185	126,764	96,477	253,665	302,667	368,653	319,069	372,301	67,495
36,157	6,649	3,247	981	5,245	2,024	4,558	7,413	5,902	138
434,081	70,802	33,244	28,198	38,701	38,102	60,928	91,091	62,301	10,714
207,650	61,261	12,817	8,467	19,370	12,694	18,636	11,054	41,340	22,011
1,353,398	304,409	51,417	33,244	137,210	198,291	239,549	166,227	201,425	21,626
153,846	13,755	6,133	15,551	12,997	27,241	27,260	12,536	30,589	7,784
183,761	54,627	16,310	7,381	35,872	17,147	14,024	22,427	14,312	1,661
28,878	22,964	401	25	760	35	40	424	668	3,561
45,505	1,718	3,195	2,630	3,510	7,133	3,658	7,897	15,764	
2,645,337	547,868	149,109	115,917	215,080	409,315	435,198	318,962	357,171	96,717
48,674	6,014	4,512	2,350	5,842	1,919	5,427	16,641	5,846	123
543,931	94,945	41,323	35,422	47,898	57,483	92,018	104,312	60,173	10,357
271,966	90,330	17,333	9,410	17,851	13,228	18,669	24,166	63,664	17,315
1,411,011	299,968	57,309	45,559	117,293	270,710	253,795	142,566	166,986	56,825
149,983	17,166	5,700	17,162	10,524	18,977	26,514	14,105	34,156	5,679
144,232	30,170	20,162	5,750	12,330	9,816	32,466	14,324	16,676	2,538
12,502	352	1,752		931	50		754	4,852	3,811
63,038	8,923	1,018	264	2,411	37,132	6,309	2,094	4,818	69
2,617,206	520,205	144,919	99,691	230,905	360,809	465,692	344,644	367,205	83,136
50,064	5,696	4,696	2,388	6,004	1,391	6,370	17,901	5,456	162
155,837	33,290	12,857	5,615	15,327	15,988	16,733	41,298	13,093	1,636
824,095	156,525	50,298	45,541	81,750	73,609	121,493	115,111	156,087	23,681
1,269,891	285,316	46,879	19,713	101,159	223,254	255,540	136,796	153,482	47,752
121,034	13,515	5,561	17,558	11,396	22,795	20,562	12,587	11,462	5,598
151,163	16,421	21,641	8,460	12,791	17,972	28,193	19,172	23,374	3,139
12,576	5,188	2,444			50	214	797	2,742	1,141
32,546	4,254	543	416	2,478	5,750	16,587	982	1,509	27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_성질별, 단체별 <계속>

연도	성질별	합계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2000	합계	8,707,950	5,833,798	2,986,424	899,615	927,346	327,545	358,439	263,619	70,810
	인건비	136,768	80,276	45,530	3,459	5,397	17,985	3,356	3,574	975
	물건비	325,494	151,130	85,197	6,800	15,460	33,616	3,690	4,648	1,719
	이전경비	2,511,426	1,518,592	718,617	242,165	276,246	174,001	45,003	37,121	25,439
	자본지출	4,923,442	3,588,345	1,880,056	622,742	497,189	83,489	285,846	207,798	11,225
	융자 및 출자	243,723	121,558	46,598	2,669	54,637	823	15,940	343	548
	보전재원	336,155	176,021	77,455	1,072	42,972	14,744	3,173	6,644	29,961
	내부거래	185,305	178,018	130,981	20,442	22,123	121	1,130	3,220	1
예비비 및 기타	45,637	19,858	1,990	266	13,322	2,766	301	271	942	
2001	합계	9,844,374	6,027,910	2,504,527	1,387,583	873,089	476,020	373,950	331,769	80,972
	인건비	143,881	83,347	45,720	3,973	5,714	19,358	3,564	4,065	953
	물건비	442,673	169,342	89,775	9,425	20,928	36,627	4,184	5,849	2,554
	이전경비	3,467,487	2,011,647	1,048,733	304,727	225,967	232,828	97,190	59,807	42,395
	자본지출	4,770,629	3,075,540	1,055,518	977,103	444,496	154,457	180,088	246,716	17,162
	융자 및 출자	290,855	169,871	53,706	2,664	60,560	181	51,870	295	595
	보전재원	452,494	288,601	75,770	70,606	79,475	27,241	8,581	10,501	16,427
	내부거래	209,832	195,480	130,000	8,000	27,297	4,157	21,986	4,040	-
예비비 및 기타	66,523	34,082	5,305	11,085	8,652	1,171	6,487	496	886	
2002	합계	11,223,717	7,086,322	3,359,246	1,414,944	703,445	522,138	530,687	418,700	137,162
	인건비	158,679	96,541	54,485	3,895	5,989	21,376	4,073	5,609	1,114
	물건비	443,695	166,642	92,280	22,240	15,240	23,647	4,296	6,844	2,094
	이전경비	2,763,295	1,938,497	1,140,747	311,435	174,505	121,106	139,349	16,883	34,471
	자본지출	5,409,170	2,795,789	1,098,414	541,632	319,043	185,524	269,183	352,692	29,301
	융자 및 출자	471,396	351,887	68,299	2,149	97,025	157,360	26,057	176	821
	보전재원	961,041	863,211	139,762	512,357	42,445	11,102	56,579	32,546	68,420
	내부거래	921,822	810,826	756,283	17,764	3,800	889	28,369	3,721	-
예비비 및 기타	94,619	62,930	8,976	3,471	45,399	1,134	2,781	229	940	
2003	합계	11,056,127	6,678,984	3,406,502	870,048	820,809	495,752	547,507	468,086	70,280
	인건비	171,588	105,454	57,546	4,768	6,663	25,343	3,468	6,403	1,264
	물건비	422,565	163,874	104,345	9,988	12,822	21,017	4,739	8,412	2,551
	이전경비	2,981,037	2,065,339	1,286,824	329,419	161,728	151,680	83,787	16,268	35,633
	자본지출	5,530,819	2,822,577	1,220,752	345,685	291,717	207,010	341,193	389,560	26,661
	융자 및 출자	712,367	520,080	150,611	2,089	263,888	72,675	29,951	134	732
	보전재원	483,627	395,585	73,575	161,248	49,160	2,354	74,837	32,303	2,106
	내부거래	647,807	546,119	508,100	14,287	3,800	15,009	-	4,923	-
예비비 및 기타	106,318	59,957	4,748	2,563	31,030	667	9,533	10,082	1,333	
2004	합계	12,553,406	7,074,468	3,659,489	858,268	921,400	512,320	535,526	474,123	113,342
	인건비	211,224	128,328	70,834	8,119	7,090	29,281	4,261	7,731	1,012
	물건비	409,753	160,488	95,665	11,292	14,006	24,012	5,810	7,747	1,956
	이전경비	3,189,026	2,143,512	1,313,708	319,450	190,970	161,309	100,210	17,313	40,552
	자본지출	6,853,808	3,186,587	1,529,263	295,342	387,722	263,713	299,986	369,865	40,696
	융자 및 출자	483,781	366,145	169,758	1,500	122,021	109	72,063	132	563
	보전재원	618,693	530,511	60,209	191,162	152,359	387	52,883	46,587	26,925
	내부거래	622,308	480,579	415,482	7,094	3,800	29,747	200	24,257	-
예비비 및 기타	164,813	78,319	4,571	24,310	43,433	3,763	113	490	1,639	

재정통계

(단위: 백만원)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874,152	751,619	174,434	130,079	267,807	286,851	457,579	358,401	372,425	74,957
56,492	6,706	6,157	2,790	6,266	1,939	7,061	18,533	6,848	192
174,364	54,563	16,750	7,394	11,608	9,139	19,880	38,944	14,347	1,739
992,834	220,883	63,983	57,350	95,405	103,966	147,476	135,312	135,993	32,466
1,335,097	404,909	64,044	40,672	110,581	137,179	239,332	133,313	174,950	30,117
122,165	14,090	4,739	16,968	9,772	19,780	25,399	12,110	11,779	7,528
160,134	41,366	17,100	4,384	29,021	13,583	13,158	14,742	24,833	1,947
7,287	573	917		340	150		2,437	1,940	930
25,779	8,529	744	521	4,814	1,115	5,273	3,010	1,735	38
3,816,464	1,157,963	243,492	212,952	336,655	324,222	529,970	419,987	522,216	69,007
60,534	7,580	6,428	4,238	6,599	1,505	7,058	19,707	7,270	149
273,331	70,929	19,973	9,523	15,101	10,028	23,390	42,277	79,769	2,341
1,455,840	358,567	93,218	85,712	120,357	156,480	195,237	183,534	222,132	40,603
1,695,089	692,879	95,436	85,095	147,200	111,223	244,597	139,414	162,114	17,131
120,984	7,018	5,137	19,402	9,885	22,744	28,175	10,137	14,629	3,857
163,893	16,970	17,940	7,952	32,829	20,603	14,843	18,732	30,303	3,721
14,352	1,235	4,427		966	100	2,194	906	3,394	1,130
32,441	2,785	933	1,030	3,718	1,539	14,476	5,280	2,605	75
4,137,395	1,365,533	247,276	217,943	379,020	312,723	516,356	409,523	607,836	81,185
62,138	7,224	6,565	4,953	7,594	1,307	6,359	20,453	7,497	186
277,053	27,562	13,194	10,315	17,053	12,762	14,912	29,628	149,593	2,035
824,799	98,416	17,989	13,984	12,149	173,898	41,940	203,453	245,840	17,129
2,613,381	1,132,629	192,006	164,985	314,939	79,112	395,121	137,254	150,905	46,429
119,508	6,682	3,642	16,516	7,705	21,673	37,877	8,946	9,686	6,781
97,830	15,806	10,391	6,235	9,667	19,220	10,238	6,608	16,276	3,389
110,996	72,414	1,101	314	5,983	30	34	1,181	25,023	4,916
31,689	4,800	2,387	640	3,930	4,721	9,876	2,001	3,015	320
4,377,143	1,273,949	261,892	250,236	467,390	352,282	622,155	437,349	594,427	117,463
66,134	7,342	7,548	6,236	9,000	960	6,710	21,738	6,389	212
258,691	31,725	13,880	14,711	16,922	12,286	15,785	30,676	118,802	3,905
915,698	127,998	17,643	105,351	8,087	170,128	10,851	209,047	247,648	18,943
2,708,241	932,814	208,830	91,984	387,430	136,628	534,114	150,601	194,955	70,886
192,287	71,040	2,989	21,611	10,664	23,294	37,375	9,846	10,736	4,731
88,043	22,747	6,463	6,602	10,768	6,197	12,536	9,922	10,559	2,249
101,688	70,255	3,023	3,122	3,326	84	263	694	4,424	16,500
46,362	10,028	1,517	619	21,194	2,706	4,521	4,826	914	37
5,478,937	2,117,690	308,880	289,978	451,577	422,712	602,581	468,502	644,423	172,594
82,896	9,995	8,772	8,840	10,519	1,934	7,776	24,668	7,991	2,401
249,265	44,681	14,429	16,724	15,802	13,629	13,784	28,903	96,045	5,268
1,045,514	132,164	21,835	103,302	15,010	192,747	57,440	225,692	264,749	32,575
3,667,221	1,745,887	254,719	129,501	379,907	166,942	471,396	166,689	251,103	101,077
117,636	5,404	3,193	23,898	9,289	20,268	31,416	8,525	7,467	8,176
88,182	16,943	3,170	6,900	5,020	25,785	9,161	9,251	10,709	1,242
141,730	100,300	1,985	-	10,044	581	5,000	418	1,647	21,754
86,494	62,316	777	813	5,985	825	6,608	4,356	4,713	101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_성질별, 단체별 <계속>

연도	성질별	합계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2005	합계	12,842,662	7,535,033	4,182,509	992,031	860,920	522,785	424,828	458,361	93,599
	인건비	272,037	171,770	94,349	10,365	8,728	40,448	5,887	10,783	1,210
	물건비	364,680	143,092	92,365	9,555	10,583	16,554	3,690	7,605	2,739
	이전경비	3,702,861	2,595,417	1,642,795	366,124	246,989	156,314	116,939	24,045	42,211
	자본지출	6,645,182	3,065,512	1,555,911	328,579	290,545	275,159	214,071	359,331	41,917
	융자 및 출자	466,237	353,668	176,988	1,056	140,586	2,321	32,184	39	494
	보전재원	484,072	404,891	17,989	154,092	127,597	423	51,232	49,548	4,010
	내부거래	671,141	640,972	595,720	33,954	1,900	2,767	-	6,631	-
예비비 및 기타	236,451	159,711	6,392	88,306	33,992	28,799	825	379	1,018	
2006	합계	14,996,861	8,370,607	4,342,989	1,628,391	763,225	720,737	479,437	346,837	88,992
	인건비	283,537	181,587	100,267	12,922	6,759	42,313	6,259	11,586	1,480
	물건비	356,831	156,224	101,198	9,269	10,384	20,587	4,221	7,697	2,868
	이전경비	4,641,066	3,059,063	1,573,302	767,760	313,715	182,118	141,950	23,468	56,749
	자본지출	7,353,260	3,271,481	1,902,274	372,218	92,892	410,288	211,967	255,196	26,646
	융자 및 출자	766,857	663,072	197,100	229,091	156,417	52,796	27,123	145	400
	보전재원	731,588	379,992	56,521	57,747	151,965	236	73,490	40,000	32
	내부거래	685,468	508,741	408,387	81,637	1,900	11,449	80	5,288	-
예비비 및 기타	178,253	150,448	3,940	97,746	29,193	948	14,347	3,457	817	
2007	합계	16,435,942	9,271,568	4,850,301	1,909,702	812,781	703,235	485,107	388,511	121,931
	인건비	283,636	181,971	100,232	13,481	7,137	43,603	5,833	9,892	1,795
	물건비	358,781	153,835	91,389	12,133	12,600	22,141	4,649	6,440	4,484
	이전경비	5,843,597	3,814,266	1,688,491	1,194,504	410,659	249,210	178,596	19,256	73,551
	자본지출	7,534,501	3,283,709	1,945,968	315,642	107,507	386,391	198,023	299,404	30,774
	융자 및 출자	864,038	737,532	227,411	253,177	223,020	122	33,064	204	535
	보전재원	388,690	260,034	-	114,352	28,973	208	62,496	44,000	10,004
	내부거래	1,055,844	804,354	789,959	4,200	-	1,308	500	8,114	272
예비비 및 기타	106,855	35,868	6,852	2,214	22,886	253	1,946	1,201	517	
2008	합계	17,280,416	9,687,694	4,876,958	1,879,323	907,991	967,236	368,555	359,836	327,794
	인건비	278,230	171,422	92,851	13,109	8,025	45,039	2,724	7,705	1,969
	물건비	375,305	152,709	94,629	11,406	10,450	21,366	4,194	6,624	4,040
	이전경비	6,023,218	3,890,864	1,602,048	1,233,002	458,376	290,183	199,033	26,608	81,615
	자본지출	8,734,370	4,191,434	2,396,860	553,173	127,548	597,736	48,426	239,286	228,405
	융자 및 출자	586,527	441,887	269,140	1,234	143,206	18	27,709	144	436
	보전재원	786,141	729,093	381,855	60,588	143,695	244	72,710	59,000	11,000
	내부거래	295,693	70,943	34,954	4,457	-	12,418	-	19,114	-
예비비 및 기타	200,932	39,342	4,620	2,355	16,692	232	13,759	1,355	329	
2009	합계	19,562,884	11,036,443	5,652,175	2,051,373	1,192,908	1,203,628	357,091	312,775	266,494
	인건비	289,640	179,695	96,131	15,445	9,010	47,608	2,949	6,316	2,236
	물건비	420,760	183,095	102,587	12,960	15,069	34,609	4,438	7,634	5,797
	이전경비	6,185,380	4,080,664	1,910,880	1,199,419	422,464	282,958	178,216	12,288	74,438
	자본지출	11,037,451	5,643,868	3,227,857	749,849	292,604	815,737	121,534	252,995	183,291
	융자 및 출자	914,076	693,895	268,040	1,984	390,660	1,200	31,808	204	-
	보전재원	145,323	122,657	-	65,317	50,481	189	6,670	-	-
	내부거래	349,737	78,627	42,527	4,517	2,547	20,632	1,000	7,404	-
예비비 및 기타	220,517	53,943	4,153	1,881	10,073	693	10,477	25,934	732	

재정통계

(단위: 백만원)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5,307,629	1,518,541	368,148	379,279	513,256	428,358	711,383	547,951	684,030	156,683
100,267	10,003	10,931	12,673	11,338	2,476	12,155	28,438	9,584	2,669
221,589	32,411	13,197	17,476	11,906	15,672	14,952	26,786	84,902	4,286
1,107,444	147,190	21,443	118,666	15,313	215,201	14,973	268,543	291,796	14,319
3,579,670	1,282,732	302,154	197,242	455,850	167,138	596,596	196,976	273,699	107,283
112,569	4,766	2,790	20,346	11,404	20,778	31,226	7,517	10,820	2,922
79,181	4,007	9,411	4,047	3,925	4,481	30,781	11,394	9,725	1,410
30,169	-	4,092	140	311	-	-	864	1,158	23,603
76,741	37,433	4,129	8,687	3,208	2,613	10,700	7,432	2,345	192
6,626,254	2,442,148	441,370	402,805	532,788	486,626	774,961	634,107	667,929	243,518
101,950	11,665	10,276	10,938	11,464	2,991	11,209	29,673	10,129	3,606
200,608	34,711	14,681	17,477	10,585	15,088	18,569	28,172	54,090	7,235
1,582,003	200,412	31,309	144,613	208,505	282,467	17,868	315,447	348,812	32,571
4,081,779	1,746,905	375,661	207,024	270,973	157,197	682,969	240,249	234,040	166,760
103,785	4,793	2,746	18,320	7,764	17,119	33,005	7,395	10,672	1,971
351,596	302,656	1,792	2,744	16,458	7,732	5,147	7,386	6,484	1,197
176,728	135,233	3,585	-	3,753	1,992	-	648	1,422	30,096
27,806	5,774	1,320	1,690	3,285	2,041	6,195	5,137	2,281	82
7,164,373	2,429,231	506,857	389,842	662,602	568,505	804,518	745,730	817,513	239,575
101,665	12,365	11,798	7,573	12,832	3,168	11,166	28,232	10,684	3,848
204,946	33,534	17,890	13,690	14,027	12,320	22,073	28,540	56,144	6,728
2,029,331	225,192	21,607	189,741	265,332	386,895	21,744	419,040	473,257	26,523
4,250,792	1,842,493	445,134	152,083	344,968	140,572	673,480	241,779	242,800	167,482
126,506	5,054	2,185	20,051	6,412	19,328	49,511	7,661	15,233	1,070
128,656	94,424	756	4,534	4,270	4,612	7,205	3,311	9,031	514
251,489	201,375	5,467	-	4,730	-	593	403	5,716	33,206
70,988	14,795	2,021	2,170	10,031	1,611	18,747	16,763	4,648	204
7,592,722	2,512,931	529,186	418,180	699,506	619,881	874,628	808,450	869,556	260,405
106,809	11,593	12,565	7,649	13,567	3,869	12,110	28,378	11,237	5,842
222,596	40,247	21,327	14,347	14,850	14,083	23,433	28,159	58,872	7,278
2,132,353	274,754	21,564	194,625	249,919	360,498	33,533	466,587	476,183	54,690
4,542,936	1,861,166	458,292	164,021	383,371	206,124	728,083	268,263	296,636	176,981
144,640	5,054	2,538	21,403	10,702	19,581	59,088	10,442	15,386	445
57,048	11,754	10,279	2,233	6,438	9,219	5,449	4,374	6,538	763
224,750	190,963	809	6,485	6,646	-	2,749	455	2,743	13,899
161,589	117,400	1,812	7,417	14,013	6,507	10,182	1,793	1,960	507
8,526,441	2,840,170	660,049	441,500	805,698	567,087	914,203	1,041,692	955,677	300,365
109,945	11,797	13,649	7,843	12,954	4,332	12,681	28,870	11,764	6,055
237,666	44,407	21,753	17,084	16,001	17,936	28,337	29,669	55,965	6,513
2,104,716	265,776	25,317	189,400	248,501	350,167	46,603	461,471	457,912	59,570
5,393,583	2,171,716	579,435	189,469	464,148	167,976	732,301	506,138	379,507	202,892
220,180	46,816	3,280	17,127	13,729	20,162	74,076	11,462	31,779	1,750
22,666	1,434	908	3,924	2,524	3,371	2,436	1,427	5,768	874
271,110	185,208	7,379	2,939	31,207	500	12,828	491	10,009	20,548
166,574	113,017	8,327	13,715	16,634	2,643	4,940	2,163	2,973	2,163

주: 1)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이번 위기, 중장기적 대응 필요하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근 정부 내에서 작금의 유럽발 위기를 1929년 대공황에 견줄 정도의 비관적 시나리오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현재의 문제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아 내심 믿음직스럽기는 하다. 그렇다고 그 대응 방식마저 2008년과 같아서 곤란할 것이다. 문제 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는 외과수술적 처방이 불가능한 수준의 부채 위기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촉발됐을 때만 해도 유로 경제권 내 경제 비중이 2% 남짓한 소규모 경제의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리스만 허리띠를 졸라매 준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외과수술적 처방을 조건으로 거액의 자금 공여가 이뤄졌다. 이미 그 규모는 유로권 전체 GDP 대비 3%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는 유로권 4위인 스페인마저 어려워진 상황이다. 대규모 손실을 입은 스페인 은행에 대한 자금 투입으로 인해 5년 전 GDP 대비 40%대였던 국가부채가 이미 90%에 달하고 있다. 프랑스 은행들도 타격이 심해 신용등급이 1단계 강등된 상태다.

이쯤 되면 외과수술적 처방으로는 사태 수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스페인의 대규모 구제금융에

는 그리스와는 달리 허리띠 조르기식의 강한 조건이 붙지 않는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구제금융 조건이 완화되면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른 유로권 국가들에서도 구제금융 수요가 촉발될 수 있다. 작년 말 유럽 재무장관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간신히 합의했던 유럽 재정안정기금(EFSF) 한도액(2조유로)을 초과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과연 유로 국가들이 이런 자금수요를 댈 수 있을까? 회원국 발권력이 동원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회원국 공동으로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자는 유로본드가 바로 그런 제안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이 유로권보다 더 많은 국가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유럽처럼 위기 상황을 겪지 않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발권력을 동원한 양적 팽창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유로권은 미국·일본과 다르다. 단일 시장과 단일 화폐를 사용하지만 재정까지 통합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유로권은 통합까지 염두에 둔 재정조약을 추진 중이다. 발권력에 의존하는 방법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통해 실질부채를 서서히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과정을 강요받았던 우리로서는 속이 편치 않다. 더욱이 달러화·유로화 위주로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앞서서 재산 손실을 봐야 할 상황이다.

재정협약이 발효되면 12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한다. 재정협약만으로 재정통합에 필요한 재정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염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재정협약이 발효해도 발권력 동원이 가능할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위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수준의 안정적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임을 의미한다. 설령 발권력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통한 문제 해결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2008년과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은 곤란하다. 실탄을 아껴야 한다. 단기적 경기 부양이나 포퓰리즘 같은 선심성 재정 지출은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군살을 빼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경제 내 비효율 요인을 찾아 정비하며 상당 기간 계속될 경제적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체질을 갖춰 나가야 한다. 시계를 증장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 2012-6-13일자〉

직장인-자영업자 형평성 어찌나

정부가 근로소득공제를 축소와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상향 조정)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다고 해도 속제는 여전히 남는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 간 세 부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딜레마다.

만약 과표를 상향 조정하면 그에 따른 감세혜택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현행 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종합소득으로 간주해 동일한 과표 구간 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각각 연간 4,700만원(과표 기준)씩 버는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있다면 이들은 종합소득 4,700만원씩을 번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과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에 매겨지는 24%의 세율을 똑같이 적용 받게 된다. 만약 해당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돼 '4,600만원 초과' 였던 구간 하한선이 '5,000만원 초과'로 바뀔 경우 이들은 기존의 바로 아래 과표구간으로 분류돼 당초보다 낮은 15%의 세

율을 적용 받게 된다. 소득형태에 관계 없이 동일한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축소로 세부담이 늘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과표 상향조정 조치를 받더라도 감세효과를 크게 누리기가 어렵게 된다.

반면 사업소득자는 애초에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해당 공제를 정부가 축소해도 새삼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칫 사업자는 감세혜택만 누리고 증세 부담은 근로자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과거에는 사업자의 소득세 탈루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율을 더 줄여도 형평성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근로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 등은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예 숨기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근로자의 불만을 달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0년대 들어 불과 몇 천원, 몇 만원 단위의 소액결제에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추세가 소비자들 사이에 보편화되면서 과거에는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사업자 소득 포착률이 이제는 근로자의 80% 선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자영업자 탈세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해 ‘가계동향 조사와 국제 통계연보 비교를 통한 사업소득세 탈루규모의 추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신고율은 중간소득층 구간에서는 80%대 초·중반, 그 이상에서는 70%대 수준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소득세 과표조정과 일부 공제항목 축소의 목표를 함께 달성해 세수 중립성을 맞춰야 하는 재정부로서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풀어야 향후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 2012-6-11일자〉

공제 3~4년만 안 늘려도 과세자 비율 70%... 세수낭비 막아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 부어봐야 독이 차겠습니까. 먼저 물 새는 구멍을 메워야죠.”

올해 소득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한 세정당국자가 전한 설명이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소득세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세율을 올리거나 과표구간을 하향 조정하기보다는 불요불급한 공제를 축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뜻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올해 세제개편안 마련시 각종 공제제도를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상태다. 세정당국이 최근 전문가들을 불러 근로소득특별공제를 손보는 것을 논의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수년 전에 실시한 내부 분석에 따르면 소득세 공제를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더 늘리지 않고 3~4년간 묶어두기만 해도 과세자 비율이 70%가량이나 올라갔다. 따라서 소득세특별공제만 제대로 손질해도 최대 수천억원의 세수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게 학계의 관측이다.

소득공제를 대폭 수술하면 빈부격차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2009년 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공제와 특별공제를 폐지할 경우 지니계수는 0.3189에서 0.3144로 내려간다.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소득재분배 상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특별공제 혜택이 대부분 근로소득자에게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축소하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보다는 근로자의 세부담이 더 오를 수 있다. 성 위원회의 2009년도 분석을 보면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를 모두 폐지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세부담률은 1.79%포인트 상승

(4.94% → 6.73%)하는 데 비해 근로자 가구의 세부담률은 5.25%포인트나 상승(3.1% → 8.35%)한다.

물론 정치적 지형 등을 볼 때 근로소득세공제와 특별공제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세정당국은 특별공제 중 일부만을 수술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료공제를 자동차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세정당국 내부 회의에서 나온 것은 이제는 그 공제의 정책적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만약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정부가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이제는 두 보험 모두 가입 의무화가 법률화돼 있다는 것이다.

교육비공제 대상에서 대학교육비를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해당 회의에서 이뤄진 것도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상치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고졸자의 취업을 독려하고 상대적으로 고학력 거품을 걷어내는 쪽에 주안점을 뒀었는데 대학 학비공제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의료비공제 역시 과도한 의료수요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의료비공제는 상대적으로 허물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세정당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 2012-6-8일자)

영리의료법인 논쟁 되돌아보기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주변 의사들에게 ‘자기자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곤 한다. 대체로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 힘으로 동원 가능한

자금'이다. 본인의 자금이거나 주변 또는 금융기관에서 빌려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말이다. 자본주의 발전과정 맥락에서 보면, 상업자본주의 시절의 사고방식이다. 상업자본주의 시절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민간부문에서 자금이 많이 드는 큰 사업을 하는 게 어려웠던 여건이었다. 사업에는 무한책임이 따르고, 빚을 갚지 못하면 파가망신해야 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인간성 좋은 안토니오가 무역업을 하는 친구 빚보증을 섰다고 죽음 문턱까지 가지 않았던가?

사업자금 조달의 물꼬가 터진 것은 산업자본시대에 주식회사 제도가 도입되어 양도 가능한 주식거래가 활성화되고 주주에 대한 유한책임이 확립된 시점부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오죽하면 중국의 장쩌민 전 주석이 뉴욕 증시를 중국경제가 미국에서 배워야 할 핵심과제로 지목했을까.

우리의 의사들도 이러한 산업자본주의의 장점을 결코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주식투자 전문가로 명성을 쌓은 의사도 있고, 필자 주변만 보아도 펀드투자 등 재테크를 실천하는 의사들도 꽤 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의사들은 여전히 상업자본주의 시절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 사회주의인 중국에서도 심지어 국영기업들까지 주식 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바로 비영리법인 족쇄 때문이다.

사실 의료행위도 대가를 전제로 치료라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영리행위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영리법인 체제에서 의료행위 자체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현재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된다면 환자들은 영리 의료법인에서도 보험수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모든 의료기관이 다 영리법인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영리법인이 허용된 외국에서도 대학병원을 포함한 우수 의료기관이 여전히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대규모 기탁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의료에서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단지 사업에서 철수할 때 자본 회수가 가능하고 투자한 자금에 대해 이윤배당이 가능해진다는 것뿐이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에서는 자본 회수가 불가능하고 투자한 자금에 상응한 이윤도 취할 수 없다는 말인가?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다. 비영리법인도 이사장직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굳이 이윤 배분 형식이 아니더라도 투자한 자금에 대해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굳이 영리법인 체제와 차이점을 찾자면 거래가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작은(?) 차이로 인한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다. 비영리법인체제 하에서는 거래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다 보니, 형성되는 가격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거래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시장의 최대 적은 불확실성이라고 하지 않던가?

영리법인으로 자금조달 선택의 폭이 넓어질 때 나타날 가장 큰 변화의 하나가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M&A)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 보유 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병원들의 8할 이상이 200명상 미만이라는 우리 의료산업의 현실 때문이다. 의료기관 간 M&A는 우리 의료산업 발전은 물론 환자들의 후생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병원 간 M&A가 이뤄지면, 병원마다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비할 필요성은 적어질 것이다. 어느 한 병원을 급성기 병상병원으로 지정하고 응급차를 통해 환자를 모아 치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가의 의료장비를 놀리지 않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해야 할 유인도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언제 이러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 발전에 수백 년이 소요되었지만, 우리의 영리의료법인 논의는 이제 겨우 십수 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 지나친 자조(自嘲)가 아닐까.

(서울신문 2012-5-23일자)

재정포럼

2012년 6월호 통권 제192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박산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위원)
권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행정원)

■ 월간 재정포럼

2012년 6월 15일 발행 / 제16권 제6호(통권 제192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 02)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2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